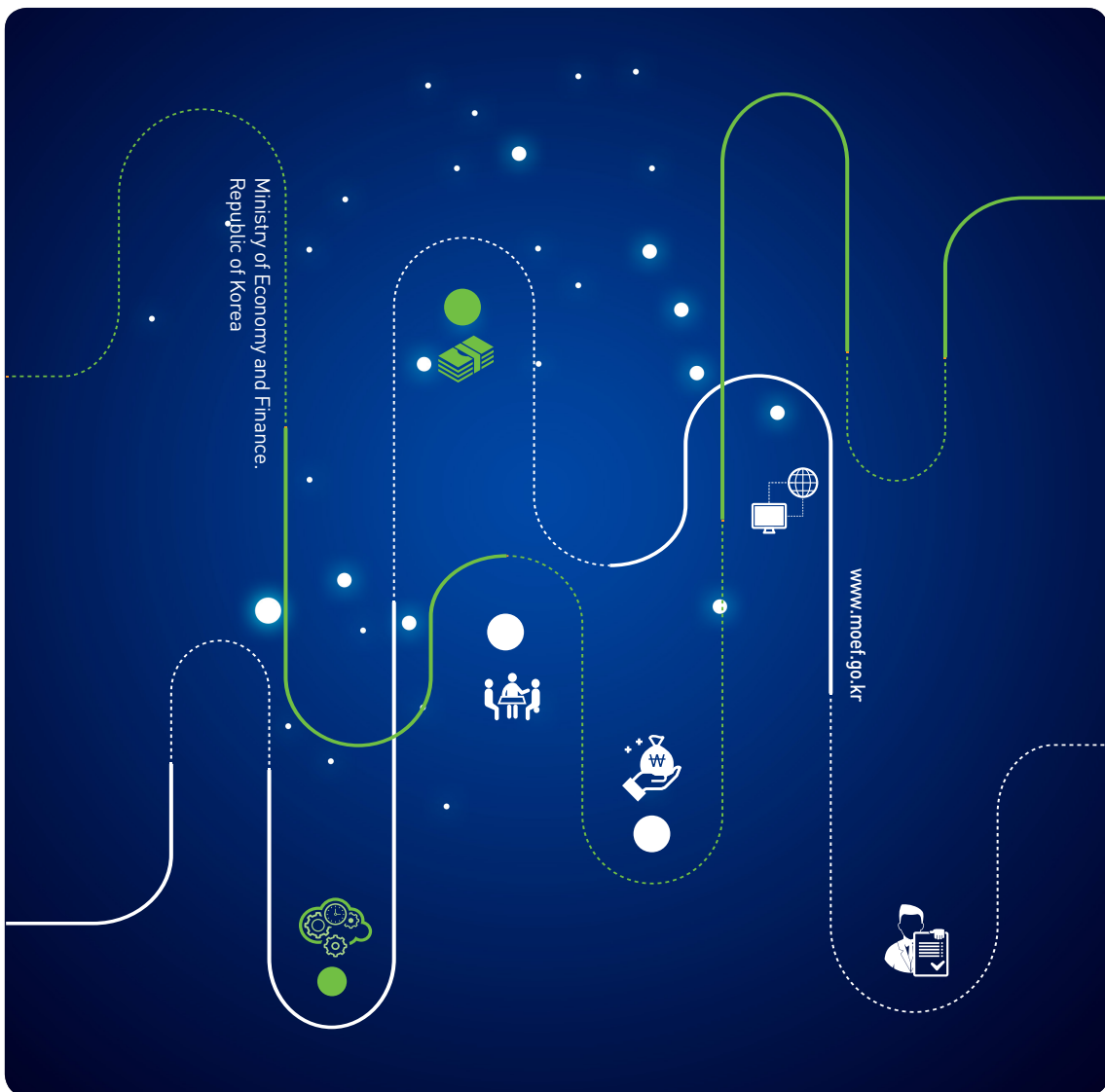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 목 차 ||

[수입 · 지출 담당자]

제1장 지출	3
제2장 수입	64
제3장 내부거래	90

[국유재산 · 물품 담당자]

제1장 물품의 취득	117
제2장 국유재산의 취득	133
제3장 국유재산, 물품의 처분 등	195
제4장 리스	212

수입 · 지출 담당자

- ◆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국고금관리법」에서는 지출의 정의, 원칙, 절차 및 제한 등 업무담당자가 지출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지출에 대응되는 비용을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 ◆ 지출은 크게 국고금을 사용하는 일반지출과 국고예금을 사용하는 관서운영경비 지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지출은 다시 해당 지출 목적에 따라 단순 비용지출과 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 ◆ dBrain 상 일반지출 업무절차는 지출요청, 원인행위, 지출결의 및 계좌이체로 이루어져 있고, 집행단위담당자, 재무관 및 지출관 등이 각각의 단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 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은 지출업무가 아닌 조달업무를 통하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단순 비용지출에 한정된 일반지출과 관서운영경비 지출 업무 수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	4
2. 다수의 지출을 하나로 처리	...	25
3. 잡손실 과다 계상	...	35
4. 부대비 설정	...	49
5. 조달(계약)을 통한 지출	...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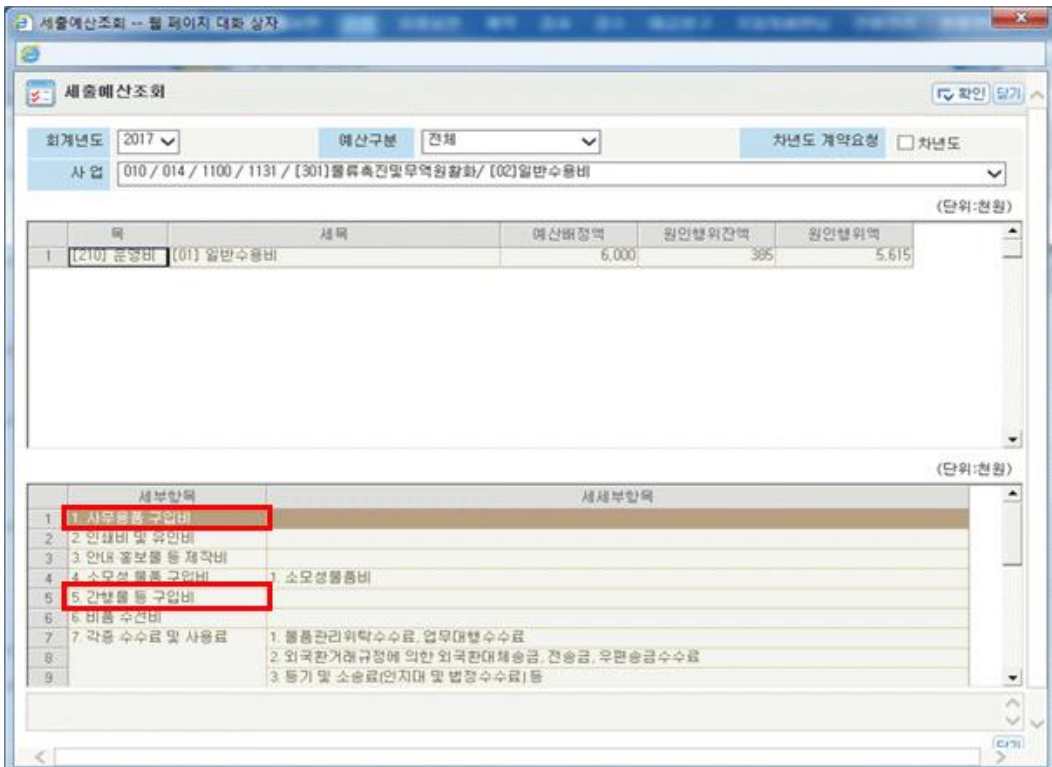
1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집행단위담당자로 새로 임명된 나재정 주무관은 일반수용비 예산(210-01)으로 신문대금 10,000원의 지출을 위한 지출요청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지출요청서 작성 중 세출예산조회 화면에서 해당 예산과목을 선택하자 세부항목 및 세세부항목 선택 창이 나타났지만, 세부항목 및 세세부항목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나재정 주무관은 세부항목의 '간행물 등 구입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일 위에 있는 '사무용품 구입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세출예산조회 화면 중 세부항목 및 세세부항목의 선택은 지출하는 비용의 계정과목을 결정하는 업무로써, 지출요청서를 작성하는 담당자가 해당 지출과 관계없는 예산과목 및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재정운영표에 집계되는 비용정보가 왜곡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1 | 세출예산조회



(2) 오류에 따른 영향

현 dBrain 시스템은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을 연계하여 재무결산에 필요한 계정과목 정보를 생성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과목에 비하여 재무계정과목의 분류가 더욱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과목 하위에 세부항목과 세세부항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재무계정과목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를 매핑(Mapping)이라 한다.

표 1-1 | 일반수용비(210-01) 매핑(Mapping) 예시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회계과목	관리과목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및 유인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품비	홍보물품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소모성물품비		소모성물품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간행물비

나재정 주무관은 신문대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간행물 등 구입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사무용품 구입비'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재무계정과목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 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사무용품 구입비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사무용품비	10,000	현 금	10,000

- 세부항목을 올바르게 선택한 경우(간행물 등 구입비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간행물비	10,000	현 금	10,000

이와 같이 재무계정과목에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부처의 비용정보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산출되는 원가정보까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반수용비(210-01)와 시험연구비(210-13)의 경우에는 예산과목의 특성 상 하나의 예산세목으로 다양한 종류의 지출이 발생하므로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도서, 잡지, 마이크로필름, 관보, 법령추록, 통신구독료, 신문구독료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는 간행물 등 구입비로 편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나계정 주무관은 신문대금 지출 시 세부항목을 ‘사무용품구입비’가 아닌 ‘간행물 등 구입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3) 오류 정정 방법

① 업무 완료 전

세부항목 및 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담당자가 승인 취소를 한 후 집행단위담당자가 지출요청서를 재작성 해야 한다.

그림 1-2 | 지출업무흐름 및 업무주체



지출업무에 관여하는 담당자는 위의 <그림 1-2>과 같이 집행단위담당자, 재무관, 지출관이다. 이들이 각각 지출요청,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한 계정과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 승인 취소 등을 통하여 지출요청서를 재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집행단위 담당자]

지출요청서 작성 시 세출예산조회 화면에서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하면 '지출요청수령인등록' 화면이 나타나는데 해당 화면에서 세부·세세부항목의 선택에 따른 재무계정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단위담당자는 발생한 재무계정과목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3 | 지출요청 수령인 등록

[재무관 및 지출관]

재무관과 지출관은 각각 지출원인행위서와 지출결의서 상의 계정과목조회 메뉴를 통하여 집행단위담당자의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에 따라 생성된 계정과목을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관과 지출관은 계정과목 조회를 통하여 발생한 계정과목을 살펴 보고, 지출의 내용과 비교하여 재무계정과목이 올바르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승인취소 등을 통하여 집행단위담당자가 지출요청서를 재작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1-4 | 지출원인행위서(재무관)

지출원인행위서 -- 웹 페이지 대화 상자

지출원인행위서

회계연도: 2011 년 재무관

지출관

지출요원내용

프로그램

집행단위: 01 수송비, 특근매식비, 사업추진비 요청번호: 0000157

요청부서

요청건명: 지출요청 요청일자: 2011-03-16

요청기관자 요청승인일자: 2011-03-16

요청승인자

지출원인행위내용

건명: 지출요청 분할지출여부: N

작성일자: 2011-03-16 원인행위번호

원인행위일자: 2011-03-16

공급가액: 100,000 부가세: 0 원인행위금액: 100,000

공제금액: 0 적용환율: 0.00 외화금액: 0.00

지출구분: A 일반급 정산기한일자

적요

첨부파일

가운데산현황

목	세목	예산구분	예산배정금액	원인행위금액	금회원인행위금액	원인행위가능금액	
1	(210)운영비	(01)일반수용비	일반예산	900,000,000	889,597,070	100,000	889,497,070

수령인정보

증빙구분일괄선택

계정과목조회 수정 계좌확인 계좌확인결과 증빙조회

목	세목	계정과목	예산구분	수령인명	실명번호	금융		
1	(210)운영비	(01)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일반예산	거장금삼서	홍양파출소	1234567890	농협

그림 1-5 | 지출결의서(지출관)

지출결의서 -- 웹 페이지 대화 상자

지출결의서

회계연도: 2011 년

지출관 지출관고유번호: E02922 - 한국은행

지출요원내용

프로그램

요청부서

요청번호: 0000157 지출예정일자: 2011-03-16

검수일자 납품일자 청구일자

기관자 승인자 승인일자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일자: 2011-03-16 원인행위번호: 0000110

원인행위금액: 100,000 지출결의금액: 0 원인행위잔액: 0

기관자: 홍길동 승인자: 홍길동 승인일자: 2011-03-16

지출결의내용

건명: 지출요청 결의번호

작성일자: 2011-03-16 결의일자: 2011-03-16

공급가액: 100,000 부가세: 0 결의금액: 100,000

공제금액: 0 지급금액: 100,000 지출구분: A 일반급

적용환율: 0 외화금액: 0 정산기한일자

적요

첨부파일

수령인정보

계정과목조회 지출한도현황 수정 계좌확인 계좌확인결과 증빙조회

목	세목	계정과목	예산구분	수령인명	실명번호	금융기관
1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일반예산	1234567890	농협

② 업무 완료 후

지출의 업무가 완료되어 계좌이체까지 모두 이루어진 후에는 지출요청서를 작성한 담당자가 지출메뉴의 [요청관리 > 계정과목정정요청 > 계정과목변경]을 통하여 계정과목을 정정할 수 있다.

그림 1-6 | 계정과목변경(일반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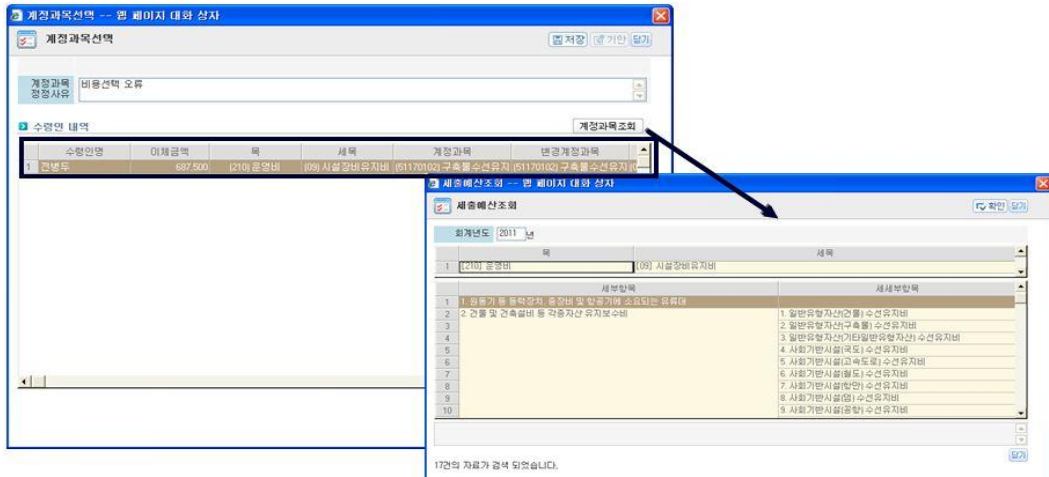
번호	요청일자	요청번호	요청금액	공제금액	건명	지출요청종류
1	2011-03-16	0000360	35,000	0		일반지출
2	2011-03-15	0000353	495,000	0		일반지출
3	2011-03-15	0000352	770,000	0		일반지출
4	2011-03-15	0000351	150,000	0		일반지출
5	2011-03-15	0000350	216,000	0		일반지출
6	2011-03-15	0000349	852,500	0		일반지출
7	2011-03-15	0000348	687,500	0		일반지출
8	2011-03-15	0000346	483,780	0		일반지출
9	2011-03-15	0000345	1,029,480	0		일반지출
10	2011-03-14	0000344	90,000	0		일반지출
11	2011-03-14	0000343	100,000	0		일반지출
12	2011-03-14	0000342	600,000	0		일반지출
13	2011-03-14	0000340	1,350,000	0		일반지출
14	2011-03-11	0000337	10,600	0		일반지출
15	2011-03-10	0000326	12,600	0		일반지출
16	2011-03-09	0000307	300,000	0		일반지출
17	2011-03-09	0000305	126,000	0		일반지출
18	2011-03-09	0000304	315,000	120,000		일반지출

계정과목변경에서 일반지출을 하였던 건은 '계정과목변경(일반지출)'에서, 관서운영경비로 지급을 하였던 건은 '계정과목변경(관서운영경비)'에서 각각 조회된다.

조회되는 목록에서 수정하여야 할 지출 건을 찾아 '계정과목변경'을 클릭하면 다음 <그림 1-7>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해당 화면에서 '계정과목조회'를 클릭하여 동일 예산목 내에서 세부항목 및 세세부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동일 예산목 내에서의 세부항목과 세세부항목의 변경만 가능하며, 타 예산목으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 1-7 ■ 계정과목변경(일반지출)



나재정 주무관의 경우 아직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승인 취소 등의 방법으로 지출요청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며, 업무가 완료되어 계좌이체가 진행된 경우라면 '계정과목변경(일반지출)' 을 통해 세부·세세부항목을 '사무용품구입비' 가 아닌 '간행물 등 구입비' 로 수정하여 올바른 회계처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I : 시설장비유지비(210-09)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

• OO부처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 예산 10,000,000원을 건물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면서 세세부항목 중 일반유형자산(건물) 수선유지비를 선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산자산수선유지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시설장비유지비(210-09)에 연계되는 재무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1-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매핑(Mapping)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건물 및 건축설비(건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와 통신시설, 기상관측장비 기타육상운반구유지비	일반유형자산(건물) 수선유지비	건물수선유지비
	일반유형자산(건축물) 수선유지비	건축물수선유지비
	일반유형자산(기계장치)수선유지비	기계장치수선유지비
	일반유형자산(집기비품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집기비품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일반유형자산(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일반유형자산(전비품)수선유지비	전비품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국도) 수선유지비	국도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고속국도) 수선유지비	고속국도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철도) 수선유지비	철도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항만) 수선유지비	항만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댐) 수선유지비	댐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공항) 수선유지비	공항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하천) 수선유지비	하천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상수도) 수선유지비	상수도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국가어항) 수선유지비	국가어항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기타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기타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		관리용역비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지급보험료
소모성물품		소모성물품비
기타수수료및부대비용		기타수수료
목재, 석탄, 폐지 등 유류 이외의 연료구입비		연료비

OO부처는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항목 '건물 및 건축설비 등 각종자산 유지보수비' 중 세세부항목인 '일반유형자산(건물) 수선유지비'를 선택하여야 하나 '유산자산 수선유지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재무계정과목이 왜곡된다.

- 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유산자산 수선유지비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유산자산수선유지비	10,000,000	현 금	10,000,000

- 세세부항목을 올바르게 선택한 경우(일반유형자산(건물) 수선유지비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건물수선유지비	10,000,000	현 금	10,000,000

해당 부처는 유산자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자산과 관련된 비용인 유산자산수선유지비가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OO부처는 건물의 수선을 위한 수선유지비의 지출이므로 세세부항목 선택 시 '유산자산수선유지비'가 아닌 '일반유형자산(건물)수선유지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미 계좌이체가 완료된 건이라면 계정과목변경을 통하여 세세부항목 선택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Case II : 시험연구비(210-13) 세부항목 선택 오류

- 시험연구에 사용되는 재료비를 시험연구비(210-13)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세부항목 중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물품구입비'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시험연구비(210-13)에 연계되는 재무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1-3 ■ 시험연구비(210-13) 매핑(Mapping)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연구개발비	시험연구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사료 구입비 등	재고자산	재화및용역 제공원가	재화판매원가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인건비	급여	일용임금
각종 월정액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기타보수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홍보물품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비		소모성물품비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의료용품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간행물비	
...

시험연구에 사용되는 재료비는 단순한 소모성 물품이 아니라 시험연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세부항목을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아닌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하나 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무계정과목이 왜곡되었다.

○ 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소모성물품비	1,000,000	현 금	1,000,000

○ 세부항목을 올바르게 선택한 경우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시험연구재료비	1,000,000	현 금	1,000,000

소모성물품비는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대가로,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소액으로 발생하게 된다. 반면, 시험재료 연구비는 시험연구에 따라 발생 규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모성 물품비를 남용하여 사용하게 되면 해당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모성물품비가 작년대비 급증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시험연구에 사용되는 재료비는 세부항목 선택 시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가 아닌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을 선택 하여야 한다. 이미 계좌이체가 완료된 건이라면 계정과목변경을 통하여 세부 항목 선택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Case III : 임차료(210-07)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

• XX위원회는 차량 임차와 관련한 385,000원의 금액을 임차료(210-07) 예산 집행 시 세부항목 중 '임대차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중 '운용리스료'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임차료(210-07)에 연계되는 재무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1-4 ■ 임차료(210-07) 매핑(Mapping)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임차료		토지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한 장소, 건물 등의 임차료		건물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및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에 따른 임차료 포함	기타자산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운용리스료	운용리스료
	금융리스료	금융리스료

OO위원회는 리스가 아닌 차량의 임차와 관련한 임차료를 지출할 때 세부항목 중 '임대차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리스료 지급 시에 선택하는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중 '운용리스료'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재무계정과목이 왜곡된다.

○ 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운용리스료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운용리스료	385,000	현 금	385,000

○ 세세부항목을 올바르게 선택한 경우(임대차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자산임차료	385,000	현 금	385,000

XX위원회는 리스계약을 맺지 않은 자산의 임차료를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가 아닌 건물의 성격에 맞는 세부항목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계약서 등록을 통한 대금청구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¹⁾

1) [국유재산·물품 담당자] part의 '제 4장 리스' 참조

④ Case IV : 공공요금및제세(210-02)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

• OO부는 방화관리자회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100,000원을 세세부항목 중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법인세)'를 선택하여 재무제표에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였다.

공공요금및제세(210-02)에 연계되는 재무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1-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매핑(Mapping)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및 철도화물 운송요금	공공요금
	전기료	전기료
	가스료	연료비
	상·하수도료	수도료
	오물 수거료	오물수거료
제세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제세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포상금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만기1년이내)	기타지급보증금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만기1년초과)	장기기타지급보증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지급보험료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법인세)	법인세비용	

OO부는 방화관리자회비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출하면서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세부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법인세)'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재무계정과목에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 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법인세비용	100,000	현 금	100,000

- 세세부항목을 올바르게 선택한 경우(국내부담금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제 세	100,000	현 금	100,000

환경개선부담금 등 법령에 의한 각종 부담금은 재무계정과목 상 ‘제세’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법인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제세로 처리되어야 할 비용이 ‘법인세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법인세비용은 법인 등에서 법인세를 계상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기금 이외에는 나타날 여지가 없는 계정과목으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OO부는 방화관리자회비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법인세비용’ 이 아닌 ‘제세’ 로 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세세부항목 선택 시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미 계좌이체가 완료된 건이라면 계정과목변경을 통하여 세세부항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TIP>



법령에 따른 각종 부담금의 경우 국가외계실체에 포함되는 기금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기금전출금이 아닌 제세로 처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경우에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로 집행하여야 한다.(ex. 장애인고용부담금)

* 출처 :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17. 4)

(5)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퇴직급여 회계처리 오류(2014회계연도)

OO청 일반회계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잘못 회계처리 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장기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이 7,181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퇴직급여(프로그램총원가)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326p 중>

○ 퇴직연금운용자산 회계처리 오류(2016회계연도)

OO청 일반회계에서 외부 금융기관에서 운용중인 퇴직연금에 예치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인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예치금을 퇴직급여로 잘못 처리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장기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이 7,271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퇴직급여(관리운영비)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010p 중>

○ 보조비 계정분류 오류(2017회계연도)

OO부 XX기금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등을 보조비(기타의 민간보조비)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보전비(기타의보상비)로 처리하여 보전비가 11억 7,185만원이 과대 계상되었고, 보조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607p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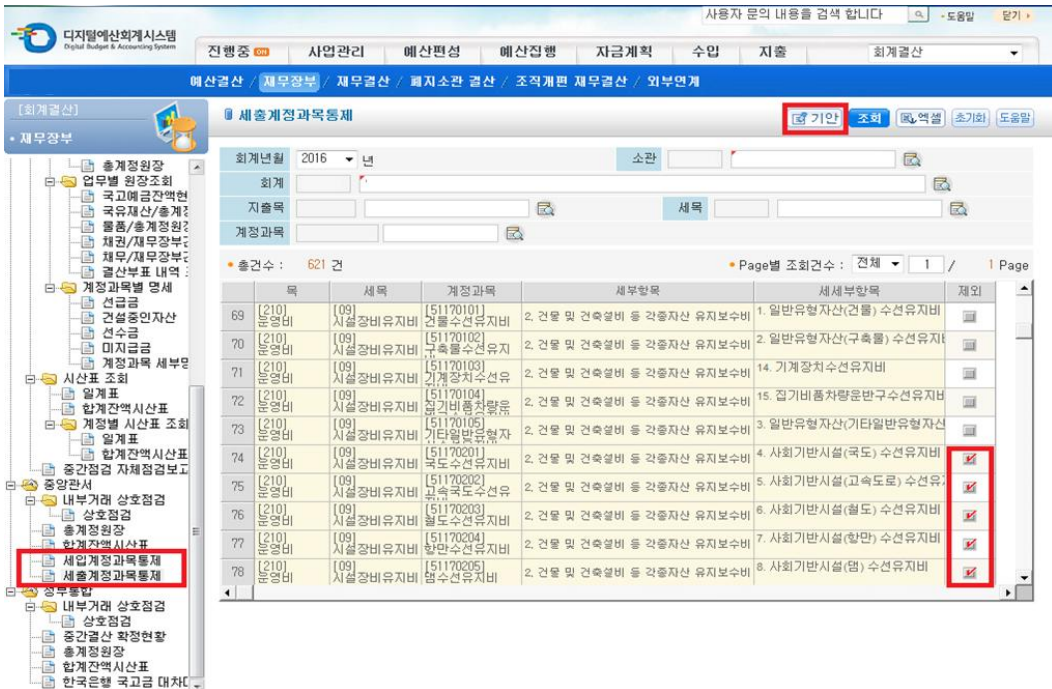
(1) 배경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은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가 중요성을 간과하고 잘못된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부처에서 나올 수 없는 계정과목에 대하여 매핑표에서 처음부터 제외시키는 '세입(세출)계정과목통제' 기능을 만들었다.

(2) 세부·세세부항목 통제기능

[재무장부>중앙관서>세입(세출)계정과목통제]메뉴에서 중앙관서 담당자가 세입(세출) 매핑표를 검토하여 특정부처에서 나올 수 없는 계정과목 (예:유산자산취득비, 사회기반시설 등)이 있는 경우 '제외'에 체크하여 기안을 올리고 승인하면 업무담당자가 보는 매핑표에는 제외된 세출계정과목이 보이지 않게 되어 세부·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림 1-8 | 세입(세출)계정과목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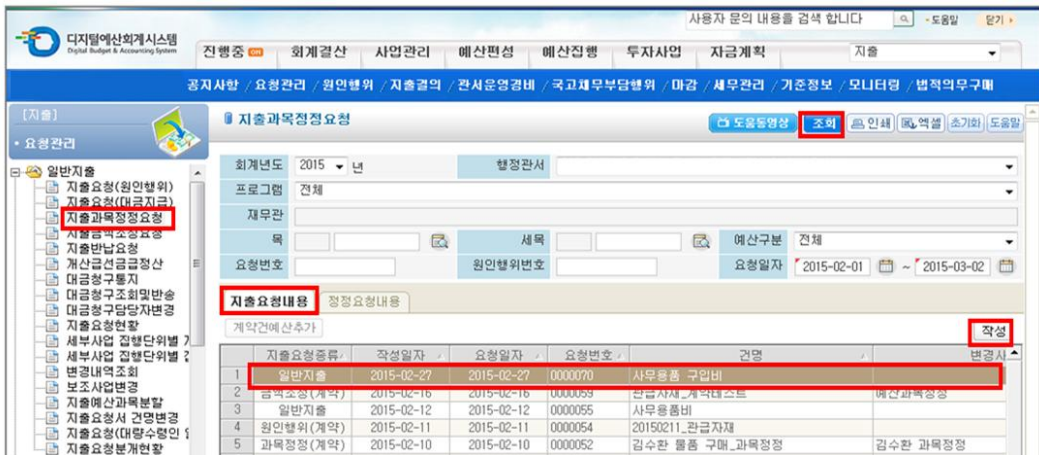
(1) 배경

계정과목변경 메뉴가 세부·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하여 나타난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수정하는 기능이라면, 당초 지출한 예산 목 자체를 수정하는 기능도 존재한다.

(2) 지출과목 정정기능

dBrain시스템 상 [지출>요청관리>일반지출(관서운영경비)>지출과목정정요청(지급과목정정요청)] 메뉴에서 과목정정할 수 있는 지출요청 승인 건을 조회한 후 '작성'을 누르면 '지출과목정정요청서'가 나타난다.

그림 1-9 | 지출과목정정



당초내용에는 과목정정대상 건의 정보가 조회되고 수령인별과목정정의 '예산과목선택' 버튼을 눌러 예산과목을 수정한 후 저장, 기안 후 승인받으면 예산과목이 수정된다.

그림 1-10 | 지출과목정정요청서

지출과목정정요청서 저장 기간 승인 요청서출력 도움말 닫기

회계연도 2015 년 재무관
 정정요청번호 부서

1. 당초내용

결의일자 2015-02-27 결의번호 0000024 지출구분 일반급
 결의금액 1,000,000 건명 사무용품 구입비
 프로그램 공공질서및안전 / 경찰 / 범죄수사활동 / 범죄수사역량강화 / 범죄수사역량강화

구분	목	세목	계정과목	예산구분	수령인명	실명번호
1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비	일반예산		

2. 정정요청내용

작성일자 2015-03-02 정정사유 사무용품비 과목정정
 정정요청일자 2015-03-02 적요
 지출예정일자 2015-02-27
 프로그램 공공질서및안전 / 경찰 / 범죄수사활동 / 범죄수사 / 현장수사활동 / [01]수용비,운영비,특정업무,보상금,배상금,구료비 [경찰청

3. 가용예산현황 ※ 아래의 가용예산현황은 정정된 예산과목만 보이게 됩니다.

구분	목	세목	예산구분	원안행위잔액	금회요청금액	요청가능금액
1	(210)운영비	(01)일반수용비	일반예산	5,368,500	1,000,000	4,368,500

4. 수령인별과목정정

※계약에 의한 원안행위에 대해서는 과목정정시 계정과목은 정정 하실수 없습니다. 예산과목선택 취소

구분	목	세목	계정과목	예산구분	수령인명	실명번호
1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일반예산	(주)이지제이	

참고

세부 및 세세부항목 선택 주요 오류 예산목

(1) 일반수용비(210-01)

일반수용비의 경우 지출 건수가 많고 선택의 폭이 넓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잘못된 회계처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회계과목	관리과목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및 유인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홍보물품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소모성물품비	소모품비	소모성물품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간행물비
비품 수선비		수선유지비	일반유형자산 수선유지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지급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송금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등기료 법정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검정및시험수수료
	물품의 보관료		보관비
	물품 등의 운송 및 운송을 위한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운송비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상하차비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기타용역비
	각종위원회 민간위원회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검토비		특정업무비
	교육훈련시 초빙강사료		내부교육비
기타 수수료 및 사용료	기타수수료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회계과목	관리과목
공고료 및 광고료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	광고선전비	공고료및광고료
	견본비		견본비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지급보험료	
업무와관련하여국내교육기관 위탁에따른공무원의학자금,학원수강료,건축비등		교육훈련비	국내교육비
기타비용		기타비용	잡손실
업무용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여비교통비	국내여비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소모품비	의료용품비

(2) 시험연구비(210-13)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 적용대상은 국가시험 연구기관 및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서, 9개 경비를 통합하여 편성된 비목이다.

따라서 해당 비목 지출과 관련한 세부항목 및 세세부항목은 그 범위가 다양하여 해당 항목 선택에 대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시험연구비 편성 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중앙관서	편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법무부	대검찰청(과학수사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기록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산업통상부	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마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환경부	본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국방부	본부, 육·해·공군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전남, 인천)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기상청	본부, 국립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센터
농촌진흥청	본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품종센터
방위사업청	본부

2 다수의 지출을 하나로 처리

집행단위담당자인 나재정 주무관은 계약직인 A씨의 법정고용부담금 200{국민연금(100), 고용보험(50), 건강보험(40), 산재보험(10)}을 지출하려고 한다. 나재정 주무관은 법정부담금 각각에 대하여 각각의 세세부항목 선택을 통하여 지출을 하여야 하나 법정고용부담금 전액을 세세부항목 중 '건강보험부담비'를 선택하여 지출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무기계약직 등의 경우에는 법정고용부담금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부담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각각의 부담비는 고용부담금(320-09) 예산으로 지출되며 계정과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

표 1-6 | 고용부담금(320-09) 재무계정과목 Mapping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회계과목	관리과목	세부관리과목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110-02목), 상용직(110-03목), 일용직(110-04목)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국민연금부담비	복리후생비	법정고용부담금	국민연금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고용보험부담비
	산재보험부담비			산재보험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			건강보험부담비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로 인한 퇴직금 지급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인한 퇴직금 지급	인건비	퇴직급여	
	퇴직보험예치금납입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보험예치금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운용자산	

위 <표 1-6>과 같이 법정부담금 각각에 관하여 세세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세세부항목 선택을 통하여 지출을 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고 모든 지출을 하나의 세세부항목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법정복리비 지출과 관련된 금액을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로 인한 퇴직금 지급' 세세부항목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오류도 종종 발생하는데 해당 세세부항목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야 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예산과목에 비하여 재무계정과목의 분류가 더욱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과목 하위의 세부항목과 세세부항목 선택은 올바른 재무계정과목 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나재정 주무관은 법정부담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부담비의 세세부항목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건강보험부담비'를 선택하여 모든 지출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잘못된 분개가 생성되어 재무계정과목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 다수의 지출을 하나로 처리하는 경우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건강보험부담비	200	현 금	200

- 각 지출 성격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경우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국민연금부담비	100	현 금	200
고용보험부담비	50		
건강보험부담비	40		
산재보험부담비	10		

이와 같이 재무계정과목에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부처의 비용정보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산출되는 원가정보까지 왜곡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부항목 및 세세부항목의 선택은 예산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를 위한 단계로 정확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단계이다. 따라서 집행단위담당자가 지출요청서를 작성할 때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하여 서로 다른 성격의 지출을 하나의 세부항목 또는 세세부항목으로 선택하여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TIP>

지출요청서 작성 시 아래 화면과 같이 수령인을 추가('수령인정보' 항목의 '추가' 버튼 클릭)하여 하나의 요청서에 세부항목을 여러건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한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동일 수령인으로 여러개의 세부항목을 선택하여 기안할 수 있다.

The image displays two screenshots from a web application used for creating expenditure requests. The top screenshot shows the '지출요청서작성' (Expenditure Request Creation) interface. In the '수령인정보' (Recipient Information) section, a red box highlights the '추가' (Add) button. The bottom screenshot shows a confirmation dialog box titled '범 제의자의 메시지' (Message from the Range Maker) with the question '수령인정보를 계속해서 추가하시겠습니까?' (Do you want to continue adding recipient information?). The dialog has '확인' (Confirm) and '취소' (Cancel) buttons.

(3)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I : 수선유지비 일괄 지출

• OO부는 건물(100만원)과 구축물(50만원)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지출과 관련하여 각각 '일반유형자산(건물) 수선유지비'와 '일반유형자산(구축물) 수선유지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공업체라는 이유로 각각의 수선비 지출을 하나의 지출요청서에 하나의 세부항목 및 세세부항목 (일반유형자산(건물) 수선유지비)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시설장비유지비(210-09)에 연계되는 재무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1-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매핑(Mapping)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건물 및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와 통신시설, 기상관측장비 기타육상 운반구 유지비	일반유형자산(건물) 수선유지비	건물수선유지비
	일반유형자산(구축물) 수선유지비	구축물수선유지비
	일반유형자산(기계장치) 수선유지비	기계장치수선유지비
	일반유형자산(집기비품차량운반구) 수선유지비	집기비품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일반유형자산(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국도) 수선유지비	국도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고속국도) 수선유지비	고속국도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철도) 수선유지비	철도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항만) 수선유지비	항만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댐) 수선유지비	댐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공항) 수선유지비	공항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하천) 수선유지비	하천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상수도) 수선유지비	상수도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기타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기타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유산자산 수선유지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국가어항) 수선유지비	국가어항수선유지비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	관리용역비	
소모성물품	소모성물품비	
기타수수료및부대비용	기타수수료	

OO부는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지출과 관련하여 동일한 시공 업체라는 이유로 하나의 세부항목 및 세세부항목(일반유형자산(건물)수선유지비)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각각 '건물수선유지비'와 '구축물수선유지비'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일괄 '건물수선유지비'로 계상되었다.

○ 다수의 지출을 하나로 처리하는 경우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건물수선유지비	1,500,000	현 금	1,500,000

○ 각 지출 성격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경우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건물수선유지비	1,000,000	현 금	1,500,000
구축물수선유지비	500,000		

회계처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수의 지출을 하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수선유지비의 금액이 왜곡되게 된다. 이와 같이 비용금액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이를 통해 산출되는 원가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되며, 성과평가 시의 자료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부처가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각 자산의 수선유지비 금액의 산출을 통하여 수선비 지출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의 금액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유의하여야 한다.

OO부는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요청서에 하나의 건으로 기안하여 작성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출요청서 내에서 구분하여 세부항목 및 세세부항목을 각각 선택하여야 한다.

② Case II : 공공요금 일괄 지출

• XX위원회는 공공요금및제세(210-02) 예산을 공공요금(우편요금 4만원, 전기료 3만원, 가스료 2만원, 상·하수도료 1만원, 오물수거료 2만원) 지출을 위하여 집행하면서 세부항목이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세세부항목 선택을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

공공요금및제세(210-02)에 연계되는 재무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1-8 ■ 공공요금및제세(210-02) 매핑(Mapping)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및 철도화물 운송요금	공공요금
	전기료	전기료
	가스료	연료비
	상·하수도료	수도료
	오물 수거료	오물수거료
제세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제세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상환금	포상금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만기1년이내)	기타지급보증금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만기1년초과)	장기기타지급보증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지급보험료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법인세)	법인세비용

XX위원회는 공공요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등으로 세세부항목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세세부항목으로 일괄 처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오류가 발생하였다.

- 다수의 지출을 하나로 처리하는 경우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공공요금	120,000	현 금	120,000

- 각 지출 성격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경우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공공요금	40,000	현 금	120,000
전기료	30,000		
연료비	20,000		
수도료	10,000		
오물수거료	20,000		

회계처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수의 지출을 하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공공요금의 금액이 왜곡되게 된다. 이와 같이 비용금액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이를 통해 산출되는 원가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되며, 성과평가 자료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동일하게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해도 부처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에 대하여 각각의 항목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유의하여야 한다.

XX위원회는 공공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우편요금,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및 오물수거료를 각각 적정한 세세부항목을 선택하여 지출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Case III : 일반수용비 일괄 지출

• OO청은 일반수용비(210-01) 지출과 관련하여 각각 '사무용품비(10만원)', '인쇄비(12만원)', '소모성물품비(8만원)'로 구분이 가능한 항목들에 대하여 하나의 세세부항목인 '소모성물품비'를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

일반수용비(210-01) 중 위 사례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1-9 ■ 일반수용비(210-01)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회계과목	관리과목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및 유인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홍보물품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소모성물품비	소모품비	소모성물품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간행물비

OO청은 일반수용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세부·세세부항목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세세부항목으로 일괄 처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오류가 발생하였다.

○ 다수의 지출을 하나로 처리하는 경우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소모성물품비	300,000	현 금	300,000

○ 각 지출 성격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경우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사무용품비	100,000	현 금	300,000
인쇄비	120,000		
소모성물품비	80,000		

회계처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수의 지출을 하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모성물품비 등 비용계정과목의 금액이 왜곡되게 된다. 이와 같이 비용 금액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이를 통해 산출되는 원가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되며, 성과평가 시의 자료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예를 들면 규모가 비슷한 A부처와 B부처가 동일한 질과 양의 결산자료를 인쇄하였다고 가정하고, 인쇄비 비교를 통하여 성과평가를 하려고 할 때 기본 비용정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업무담당자는 성격이 다른 비용의 지출을 하나의 세부·세세부항목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 적정한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OO청은 일반수용비 예산을 사용하여 인쇄, 사무용품 구입, 소모성물품 구입 등의 업무를 진행할 때 하나의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성격에 맞는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참고

지출(지급)예산과목 분할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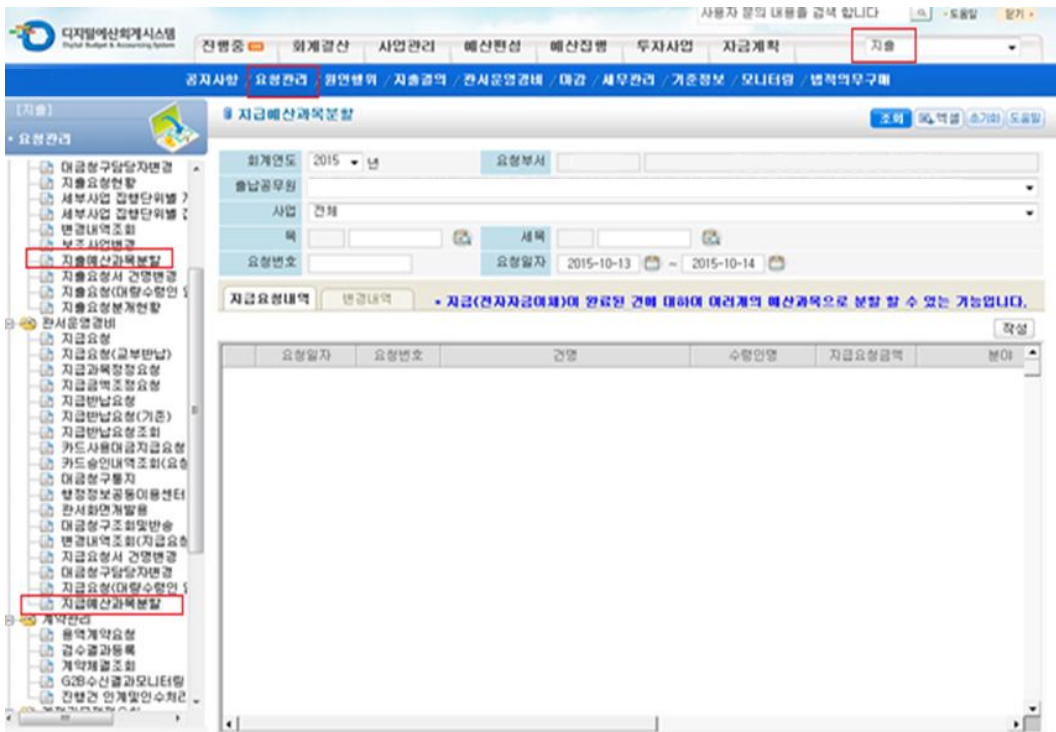
(1) 배경

여러 예산과목에서 지출되어야 할 건이 담당자의 실수로 하나의 예산과목에서 지출된 경우 예산과목분할기능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2) 지출(지급)예산과목분할 기능

일반지출인 경우 [지출>요청관리>일반지출>지출예산과목분할] 메뉴에서, 관서운영경비인 경우 [지출>요청관리>관서운영경비>지급예산과목분할] 메뉴에서 지급처리(전자자금이체)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집행단위 내에서 예산과목 분할이 가능하다.

그림 1-11 | 지출(지급)예산과목분할 기능



3 잡손실 과다 계상

집행단위담당자인 나재정 주무관은 세출예산조회 화면에서 세부항목 선택 시 구분이 어려울 경우 예산안 편성지침이나 국가회계편람(계정과목해설서)을 참고하지 않고 모두 '기타' 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세부항목 또는 세세부항목에는 관련되는 재무계정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기타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는 재정정보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정상적 또는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비용계정과목을 각각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기타항목을 남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잡손실이 과다계상되어 재정정보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오류가 발생한다.

표 1-10 | 잡손실 생성 세부항목 및 세세부항목

예산세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재무계정과목
210-01(일반수용비)	11. 기타비용	-	잡손실
210-13(시험연구비)	33. 기타비용	-	잡손실
210-16 (기타운영비)	운송비 및 보관료	운송비	운송비
		보관비	보관비
		상하차비	상하차비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
		물품 등의 포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포장비
		환율에 의한 추가지출	외환차손
		기타비용	잡손실
320-01 (민간경상보조)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공공기관보조	기타공공기관보조비
		기타민간보조	기타민간보조비

예산세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재무계정과목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공공기관보조	차액보상금/공공기관보조비
		기타민간보조	차액보상금/민간보조비
	기타비용	-	잡손실
510-03 (차입금이자)	제반수수료지출	송금수수료	송금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기타수수료	기타수수료
	환율에 의한 추가지출	-	외환차손
	이자지급	국채이자	국채이자비용
		공채이자	공채이자비용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국내차입금이자비용
		차관이자 및 기타 해외채무이자	해외차입금이자비용
비금융공기업 차입금이자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기타비용		잡손실	
510-07 (전대차관이자상환)	제반수수료지출	송금수수료	송금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기타수수료	기타수수료
	이자지급	-	정부내전대차관이자비용
기타비용	-	잡손실	
710-03 (반환금및손실금)	보증관련지출	-	장기구상채권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납부한 수익금의 과오납금반환		전기과오납금반환금
	기타비용	-	잡손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각 부처별로 잡손실 금액이 과다하여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정확한 원가정보가 산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부처가 계상한 잡손실 계정과목 금액의 단순합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다.

표 1-11 | 2017회계연도 중앙관서별 잡손실 계상 현황(상위 8개 부처)

연번	부처명	금 액(백만원)
1	00부	3,606,214
2	00부	566,182
3	00부	78,947
4	00부	57,161
5	00부	23,853
6	00부	10,545
7	00회	9,798
8	00처	9,045
합계		4,389,674

<표 1-11>의 금액은 각 부처의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상 금액이며 이는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분개 혹은 계정과목 정정 등으로 잡손실 계정과목 중 중요한 항목을 제거 한 후의 금액이므로 수정전시산표 상 잡손실로 분류되는 항목의 금액은 더욱 많다.

(3) 사용자 유의사항

세부항목 및 세세부항목을 선택하는 집행단위담당자는 지출되는 금액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여 해당 항목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세부항목 및 세세부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성격의 금액이 지출되는 경우 집행단위담당자는 세부 및 세세부항목을 선택할 때 일관성있게 항목을 선택하여야 항목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용이하게 수정할 수 있다.

나재정 주무관의 경우 아직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승인 취소 등의 방법으로 지출요청서를 제작성 하여야 하며, 업무가 완료되어 계좌이체가 진행된 경우라면 ‘계정과목변경(일반지출)’ 을 통해 세부·세세부항목을 각각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 하여 ‘기타비용’ 과 같이 잡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선택을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I : 일반수용비(210-01)의 기타비용 세부항목 선택

- OO청은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원을 지출하면서 세부항목을 '사무용품 구입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비용'으로 선택하여 잡손실로 처리되었다.

일반수용비(210-01)에 연계되는 재무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1-12 ■ 일반수용비(210-01) 매핑(Mapping)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회계과목	관리과목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및 유인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홍보물품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소모성물품비	소모품비	소모성물품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간행물비
비품 수선비		수선유지비	일반유형자산 수선유지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송금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등기료 법정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검정및시험수수료
	물품의 보관료		보관비
	물품 등의 운송 및 운송을 위한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수수료	운송비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상하차비, 전적·하역비		상하차비
	국선번호사 및 수입·고문번호사에 대한 번호료·수입료		기타용역비
	각종위원회 민간위원회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검토비		특정업무비
	교육훈련시 초빙강사료		내부교육비
기타 수수료 및 사용료		기타수수료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회계과목	관리과목
공고료 및 광고료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	광고선전비	공고료및광고료
	건본비		건본비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지급보험료	
업무와관련하여국내교육기관 위탁에따른공무원의학자금,학원수강료,건축비등		교육훈련비	국내교육비
기타비용		기타비용	잡손실

OO청은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지출이기 때문에 세부항목 중 '사무용품 구입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했어야 하나 '기타비용'을 선택하여 지출요청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다.

- 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기타비용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잡손실	1,000,000	현 금	1,000,000

- 세부항목을 올바르게 선택한 경우(사무용품 구입비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사무용품비	1,000,000	현 금	1,000,000

위의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지출금액 100만원에 대해서 사무용품비로 처리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기타비용'을 선택함에 따라 잡손실이 계상되었다. 이는 집행단위담당자가 지출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시 성격에 맞는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기타비용'을 선택한 오류로 다수의 부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집행단위담당자는 지출요청서 작성 시 잡손실이 인식되는 '기타비용'의 선택을 최대한 지양하고 관련성 있는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OO청은 관련되는 세부항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타비용으로 세부항목을 선택하여 잡손실이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지출요청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세부항목 중 '사무용품 구입비'를 선택하여 지출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② Case II : 기타운영비(210-16)의 기타비용 세세부항목 선택

• OO부는 기타운영비(210-16) 50만원으로 물품운송을 위하여 운송비를 지출하였다. 집행단위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지출하면서 '운송비' 세세부항목을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비용' 세세부항목을 선택하여 지출요청서를 작성하였다.

기타운영비(210-16)에 연계되는 재무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1-13 ■ 기타운영비(210-16) 매핑(Mapping)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기업특별회계 등의 원재료, 제품 등 물자(외자포함) 및 우편물 등의 운송비(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요금과 인부 포함), 외주가공비, 상하차비, 물자처리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운송비	운송비
	보관비	보관비
	상하차비	상하차비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
	물품 등의 포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포장비
	환율에 의한 추가지출	외환차손
	기타비용	잡손실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기관장·부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비 및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일반업무비
시험관리비(면접수당 및 출제수당 등)	기타비용	특정업무비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시상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지급보험료
기타소모성 물품 구입비		소모성물품비
기타수수료		기타수수료

OO청은 기타운영비 예산으로 운송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세세부항목 중 '운송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했어야 하나 '기타비용'을 선택하여 지출요청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다.

- 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기타비용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잡손실	500,000	현 금	500,000

- 세부항목을 올바르게 선택한 경우(운송비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운송비	500,000	현 금	500,000

위의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지출금액 50만원에 대해서 운송비로 처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비용’ 선택에 따라 잡손실이 계상되었다. 이는 집행단위담당자가 지출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시 성격에 맞는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기타를 선택한 오류로 다수의 부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집행단위담당자는 지출요청서 작성 시 잡손실이 인식되는 기타의 선택을 최대한 지양하고 관련성 있는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OO부는 관련되는 세부항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타로 세부항목을 선택하여 잡손실이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운송비를 지출하는 요청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세부항목 중 ‘운송비’ 를 선택하여 지출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③ Case III : 민간경상보조(320-01)의 기타비용 세부항목 선택

• OO부는 민간경상보조(320-01) 예산으로 민간에 1,000만원의 보조비를 집행하였다. 사업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지출하면서 세부항목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선택하고 세세부항목으로 '기타민간보조'를 선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부항목을 '기타비용'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민간경상보조(320-01)에 연계되는 재무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1-14 ■ 민간경상보조(320-01) 매핑(Mapping)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공공기관보조	기타공공기관보조비
	기타민간보조	기타민간보조비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공공기관보조	차액보상금/공공기관보조비
	기타민간보조	차액보상금/민간보조비
기타비용		잡손실

OO부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민간보조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 중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에 세세부항목 '기타민간보조'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했어야 하나 '기타비용'을 선택하여 지출요청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에 오류가 발생한다.

○ 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기타비용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잡손실	10,000,000	현 금	10,000,000

○ 세부항목을 올바르게 선택한 경우(기타민간보조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민간보조비	10,000,000	현 금	10,000,000

OO부는 관련되는 세부항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타비용’으로 세부항목을 선택하여 잡손실이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민간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요청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세부항목 중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선택하여 지출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5) 잡손실 과대 계상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지급수수료 계정분류 오류(2017회계연도)

OO처 일반회계에서 소비자감시원활동비 등 외부지급수수료를 기타수수료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비배분비용의 잡손실 및 관리운영비의 기타용역비로 처리하여, 기타수수료가 프로그램별로 각각 1억 2,302만원, 1억 6,495만원, 1,897만원, 478만원, 4,760만원, 1,895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잡손실(비배분비용) 및 기타용역비(관리운영비)가 각각 2억 4,344만원, 1억 3,483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904p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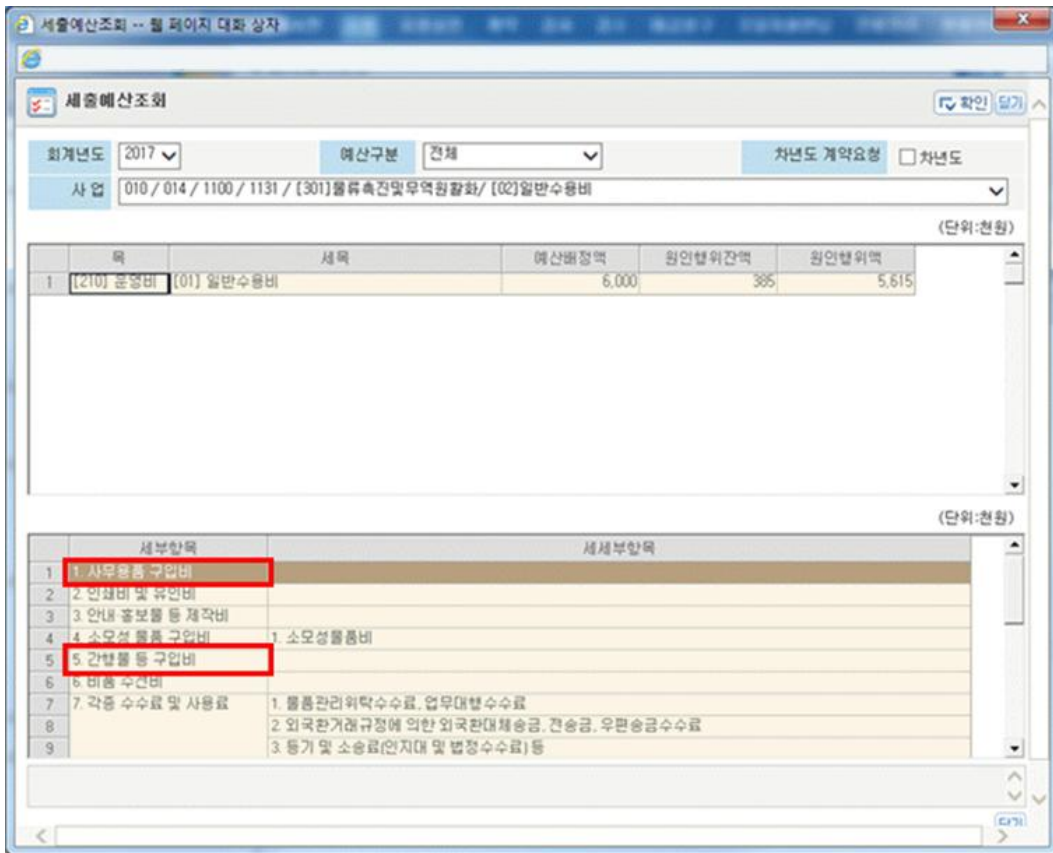
재정운영표는 국가가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원가정보를 제공하여 주는데, 만약 비용 계정과목 간에 분류가 잘못된다면 이러한 원가정보가 왜곡되므로 성과평가 역시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A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업비용 성격인 보조비가 10억원 지출되었는데 비용 계정과목을 [보조비]가 아닌 [잡손실]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10억원을 알 수 없는 원인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재정운영표에서 나타나는 원가정보를 이용하여 A프로그램을 평가하게 되면 예산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른 예로, 유산자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B부처에서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비 1,000만원을 [건물수선유지비] 계정이 아니라 [유산자산수선유지비]로 처리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이 재정운영표가 작성되고 이후 동 재정운영표를 이용하여 B부처의 성과를 평가하게 되면,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지도 않는 유산자산에 대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비용 계정과목의 종류를 선택하는 과정은 사업담당자가 예산 집행을 위해 지출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루어지는 <세출예산조회>에서 이루어진다. <세출예산조회>에서는 집행 대상이 되는 예산의 프로그램과 목, 세목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된 세부항목 및 세세부항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세부항목과 세세부항목의 선택이 비용 계정과목을 선택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림 1-12 ■ dBrain 메뉴 중 <세출예산조회> 메뉴화면



<비용 계정과목 간 분류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사업담당자가 비용 계정과목의 의미를 혼동하여 세부·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
- ② 예산 편성내역 상 제약으로 올바른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① 사업담당자가 비용 계정과목의 의미를 혼동하여 세부·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

사업담당자가 각 계정과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유사한 세부·세세부항목으로 잘못 선택하거나,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잡손실] 계정과목 등으로 일괄 선택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담당자가 쉽게 혼동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정과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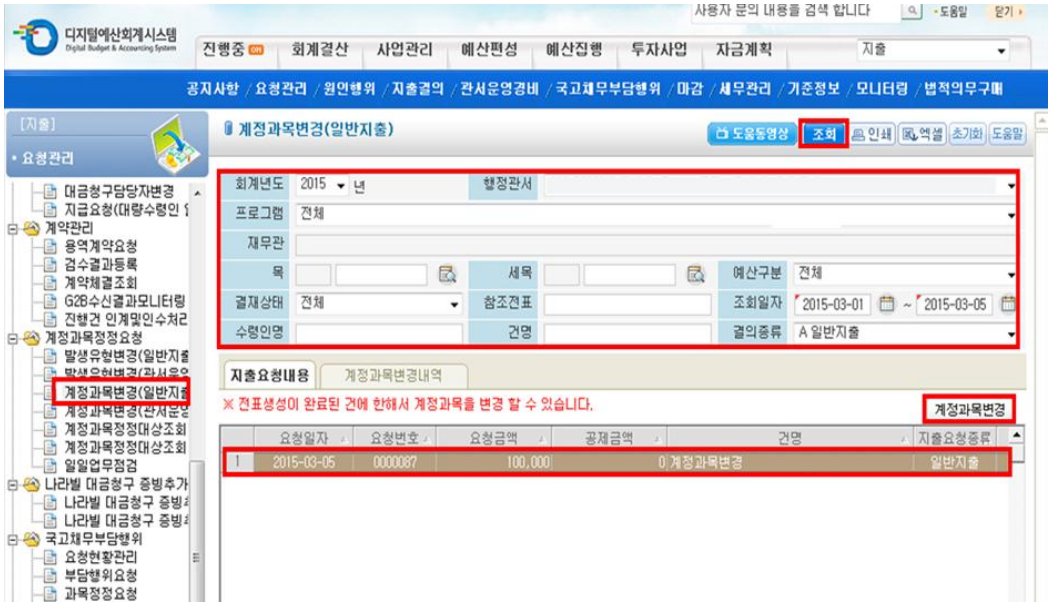
표 1-15 ■ 사업담당자가 쉽게 혼동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정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내용
인쇄비 vs 간행물비	인쇄비는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를 말한다. 이에 비해 간행물비는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을 구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내부교육비 vs 국내교육비 vs 국외교육비	내부교육비는 자체 교육을 위한 강사료, 연수원임차료를 말하는데 비해, 국내교육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교육기관 위탁에 따른 직원의 학자금 지원금, 학원수강료 지원액, 견학비 등을 말한다. 국외교육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교육기관 위탁에 따른 학자금지원액, 해외연수비용 등을 말한다.
사무용품비 vs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수선유지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집기와 관련된 소모품을 교체한 경우 이는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이므로 사무용품비로 처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무용 집기의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집기·비품·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한다.
건물수선유지비 vs 건축물수선유지비	건물수선유지비는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비, 건축물수선유지비는 건축물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말하는데, 여기서 건물이란 청사, 관사, 아파트 등 토지에 정착되는 부동산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속 시설 등을 말하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교량, 궤도, 정원시설 등이 있다.
국민연금부담비 vs 국민연금비용	국민연금부담비란 각 회계실체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리후생비를 말하는데 비해, 국민연금비용은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사업비용으로서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담당자가 비용 계정과목의 의미를 혼동하여 세부·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담당자의 비용 계정과목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각 계정과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국가회계기준과 국가회계처리지침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산편성지침, 계정과목해설서 등의 자료들을 통해 정확히 인지하고, 지출요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지출의 성격에 맞는 세세부항목을 선택함으로써 올바른 비용 계정과목이 선택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계정과목이 잘못 선택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었다면 재무결산의 마감 전에 사업담당자가 dBrain 메뉴 중 <계정과목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메뉴는 지출이 완료된 건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금액조정 한 건이나 계약과 관련된 건, 조달수수료 등 부대비 처리 건, 교부요청 건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1-13 | dBrain 메뉴 중 <계정과목변경> 메뉴 화면



② 예산 편성내역 상 제약으로 올바른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예산 집행 시 해당 예산의 목, 세목과 연계되는 세부·세세부항목 중에서 지출의 성격을 적절히 표현해주는 것이 없는 경우에도 비용 계정과목간 분류 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반수용비(210-01) 예산으로 '행사진행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과 연계되는 세부항목에는 '행사진행경비' 성격의 항목이 없으므로 담당자가 '11. 기타비용' 항목을 선택하게 되고, 이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표 1-16 ■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Mapping)표 중 일부

목	세목	세부항목	비용 계정과목
210	01	1.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용품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인쇄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홍보물품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소모성물품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간행물비
		6. 비품 수선비	집기비품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업무대행수수료
			송금수수료
			검정및시험수수료
			보관비
			운송비
			상하차비
			기타수수료
		8. 광고료 및 광고료	공고료및광고료
			건본비
		9.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지급보험료
10.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교육기관 위탁에 따른 공무원의 학자금, 학원수강료, 견학비 등	국내교육비		
11. 기타비용	잡손실		
12. 업무용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국내여비		
13.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의료용품비		

지출 예산의 목, 세목과 연계되는 세세부항목 중에서 해당 지출의 성격을 적절히 표현해주는 것이 없어 잘못된 계정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산변경(목변경, 세목변경)을 수행한 후에 지출요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예산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결산담당자를 통한 결산조정분개로 비용 계정과목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차기 연도의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부대비 설정

집행단위담당자 나재정 주무관은 컴퓨터(취득가액 100만원)를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였다. 조달수수료(5만원) 관련 지출요청서 작성 시 발생유형을 '2. 물품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또는 '4. 물품 부대비 지출(등재 후)' 을 선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 일반지출(국유재산, 물품 미관련)' 을 선택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을 위하여 공급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조달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출은 부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대비의 설정은 발생유형의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1-14 ■ 발생유형 선택

The screenshot shows a web application window titled '지출요청서 -- 웹 페이지 대화 상자'. The form contains the following fields and values:

- 집행단위: 01, 자산취득비
- 요청부서: (empty)
- 지출요청일자: 2011-04-18
- 지출예정일자: (empty)
- 발생유형: 4 물품부대비지출(등재후) (highlighted in blue)
- 발생유형 목록:
 - 1 국유재산부대비지출(계약후/등재전)
 - 2 물품부대비지출(계약후/등재전)
 - 3 국유재산부대비지출(등재후)
 - 4 물품부대비지출(등재후) (highlighted in blue)
 - 5 계약선부대비지출
- 작성일자: 2011-04-18
- 지출구분: A 일반급
- 정산기한일자: (empty)
- 납품일자: (empty)
- 검수일자: (empty)
- 청구일자: (empty)
- 공급가액: 0
- 부가세: 0
- 지출요청금액: 0
- 공제금액: 0
- 적용환율: 0.0000
- 외화금액: 0.00
- 발생업무: (empty)
- 발생업무관리번호: (empty)
- 리스크분: (empty)
- 자산번호: (empty)

발생유형은 관련 자산의 분류와 시점에 따라 총 6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7 ■ 발생유형 구분

발생유형	구분
0. 일반지출(국유재산, 물품 미 관련)	순수한 일반지출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부대비(계약번호 선택, 별도 배부처리)
2. 물품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	부대비(대장번호 선택 시 자동반영) (요청번호, 검수번호 선택 시 별도 배부처리)
4. 물품 부대비 지출(등재 후)	
5. 계약 전 부대비 지출	부대비(별도 배부처리)

발생유형은 부대비인 지출(1~5번)과 부대비가 아닌 지출(0번)로 구분되며, 부대비인 지출은 다시 물품과 국유재산으로 구분된다. 또한 지출의 발생 시점에 따라 ① 계약 전, ② 계약 후 등재 전, ③ 등재 후로 나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해당 부대비를 관련된 자산과 연결시키는 방법이 달라진다.

국유재산 또는 물품이 대장에 등재된 이후라면 대장번호를 통하여 해당 자산과 연계를 시킬 수 있고, 계약 이후 시점이라면 계약번호를 통하여 연계가 가능하다.

나재정 주무관은 컴퓨터 취득과 관련한 조달수수료를 부대비 설정을 통하여 부대비로 지출하여야 하지만, '0. 일반지출(국유재산, 물품 미관련)'을 선택하여 지출요청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해당 비용이 부대비로 설정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발생유형 선택에 따라 해당 지출에 부대비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시점에 일반지출과는 다른 회계처리가 생성된다. 일반지출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시점에 '비용' 계정과목이 생성되나, 부대비 설정을 한 지출의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이 생성되고 해당 건설중인자산은 본자산(본 사례에서는 컴퓨터)의 자산 등재시점에 부대비 배부를 통하여 본자산 가액에 포함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발생유형 0	기타수수료	50,000	현 금	50,000
발생유형 1	건설중인자산	50,000	현 금	50,000
발생유형 2	건설중인자산	50,000	현 금	50,000
발생유형 3	자산(대장번호선택시)	50,000	현 금	50,000
발생유형 4	자산(대장번호선택시)	50,000	현 금	50,000
발생유형 5	건설중인자산	50,000	현 금	50,000

단, 발생유형 3번과 4번의 경우(자산등재 후)에는 대장번호를 선택하여 본자산과 연계시키면 '건설중인자산'이 아닌 해당 자산의 대장가액에 바로 합산이 된다. 따라서 이미 대장에 등재된 자산의 부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발생유형 3, 4번을 선택하고 대장번호를 통해서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사례의 경우 부대비 설정을 통하여 컴퓨터의 취득가액에 더해져야 할 조달수수료 5만원이 기타수수료 등 비용계정과목으로 처리되어 105만원으로 등재되어야 할 대장가액이 100만원으로 등재되어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기타수수료 5만원이 과대계상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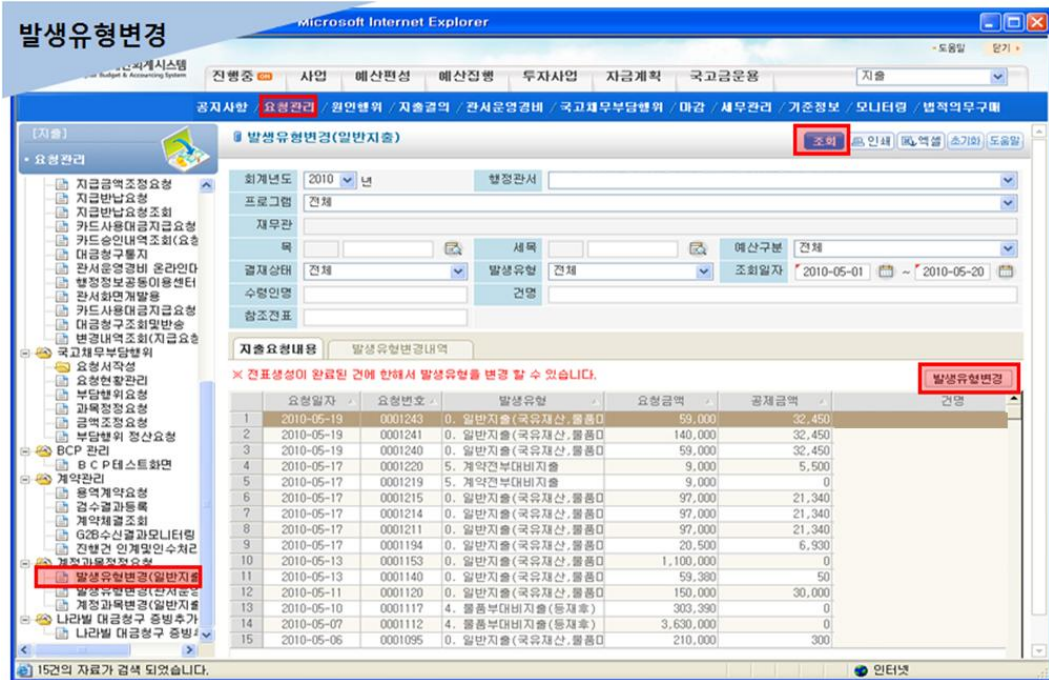
일선관서 부대비 설정 업무 수행 시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가 '5. 계약 전 부대비 지출' 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5번을 선택하여 부대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계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검수 시점에 관련 부대비 배부를 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발생한 '건설중인자산' 계정 금액이 건물, 토지 등 본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재무제표에 그대로 남아있어 감사원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대비 설정 시 시점에 맞는 발생유형을 선택하여 가능한 한 연계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오류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3) 오류 정정 방법

일반지출로서 비용 처리하여야 하나 부대비 설정을 통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재정상태표에 계상하거나, 부대비로 지정하여야 할 것을 일반지출로 처리하여 자산을 과소계상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 경우 해당 업무수행을 모두 취소한 후 다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dBrain 시스템에서는 '발생유형변경'이라는 메뉴를 통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15 | 발생유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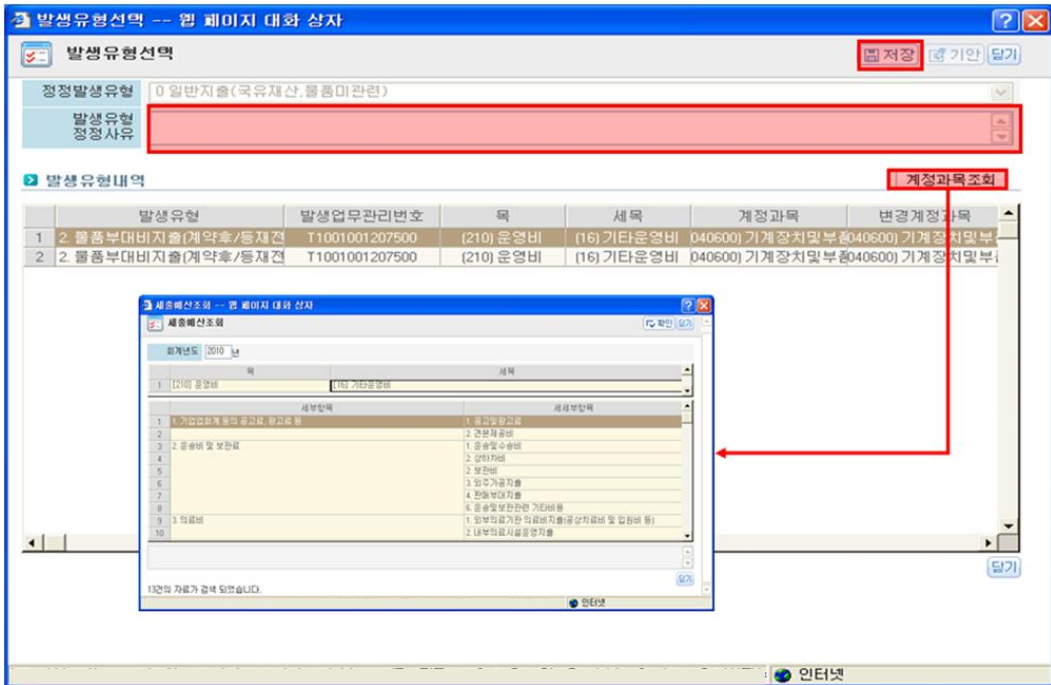
<그림 1-15>와 같이 「지출>요청관리>발생유형변경(일반지출)2)」 메뉴를 통해 일반지출로 처리한 지출에 대하여 부대비를 설정하거나, 또는 부대비를 설정한 지출에 대하여 일반지출로 변경할 수 있다.

2)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한 건에 대해서는 발생유형변경(관서운영경비)를 선택하여 진행 할 수 있다.

① 부대비 → 일반지출

부대비 발생유형을 선택하여 '건설중인자산'이 생성되었으나, 해당 지출이 부대비가 아닌 일반지출인 경우에는 발생유형 변경을 통하여 '0. 일반지출 (국유재산, 물품 미관련)'로 수정할 수 있다.

그림 1-16 ■ 발생유형변경(부대비→일반지출)



부대비로 설정된 지출건을 조회하여 선택하면 <그림 1-16>과 같이 해당 지출의 발생유형을 '0번'으로 변경하여 일반지출로 정정할 수 있다. 단, '0. 일반지출'로 변경된 건은 세부, 세세부항목 선택을 통하여 재정운영표에 계상되는 비용 계정과목이 결정되므로, 올바른 계정과목이 생성될 수 있도록 세부, 세세부항목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정업무를 수행하면 부대비 설정에 따른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이 사라지고 비용이 생성되는 다음과 같은 분개처리가 생성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부대비→일반지출	제 비용	100,000	건설중인자산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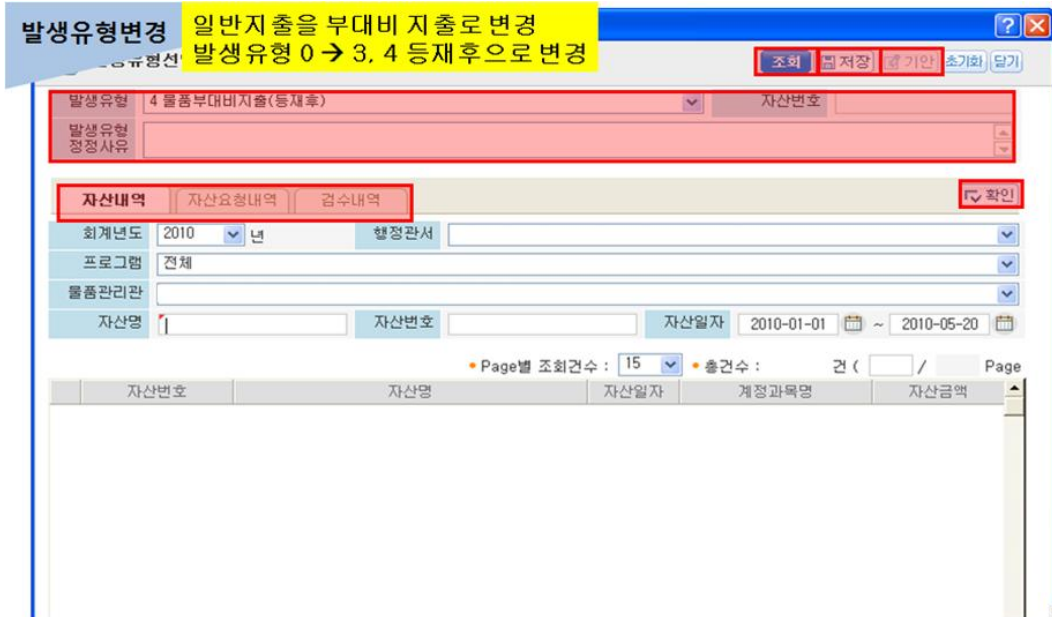
② 일반지출 → 부대비

본 사례에서와 같이 발생유형 '0번'을 선택하여 비용이 재무제표에 계상되었으나, 부대비 설정을 통하여 해당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생유형 변경을 통하여 수정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대비 설정은 해당 지출 시점에 따라 해당 자산이 대장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아직 등재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장 등재 후에 발생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정정방법은 아래 <그림 1-17>와 같다.

그림 1-17 ■ 발생유형변경(일반지출→부대비)_대장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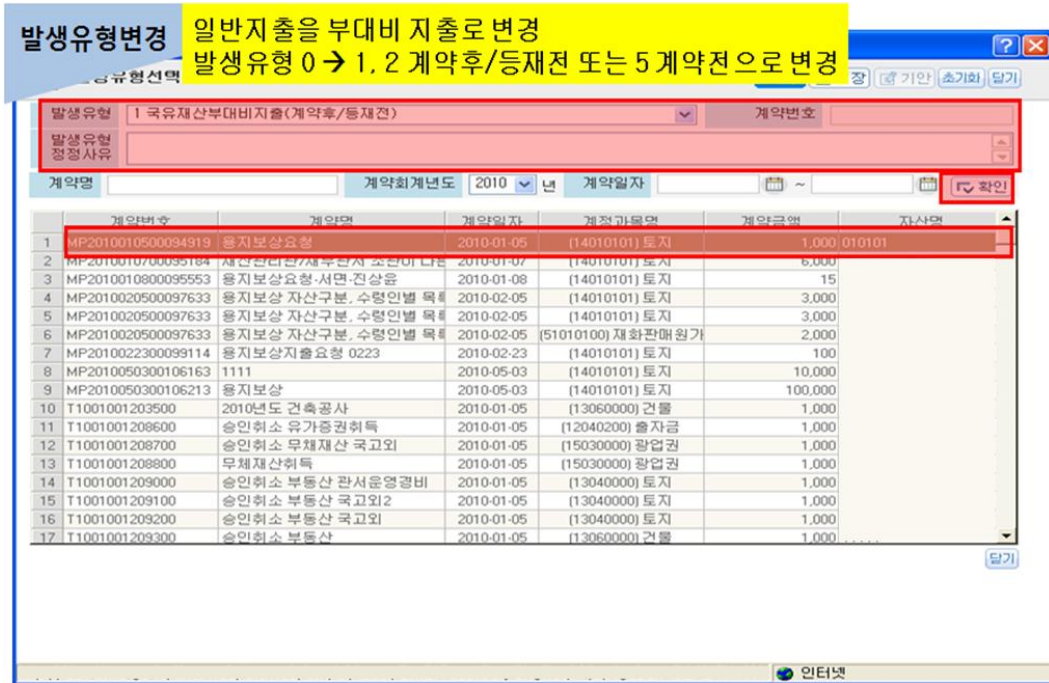
해당 자산(사례에서 컴퓨터)이 물품대장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유형 변경을 통하여 '4. 물품부대비지출(등재후)'로 발생유형을 변경³⁾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수행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일반지출→부대비(등재후)	사무용기기	50,000	기타수수료	50,000

3)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발생유형 3번을 선택한다.

만일 부대비를 배부해야 할 자산이 아직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림 1-18>와 같이 발생유형 1,2,5번을 통하여 부대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림 1-18 ■ 발생유형변경(일반지출→부대비)_대장 미등재



일반지출 건을 발생유형 1,2,5번을 통하여 부대비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비용계정과목이 사라지고 '건설중인자산'이 생성된다. 해당 건설중인자산 계정은 본 자산을 대장에 등재할 때 부대비 배부를 통하여 자산의 대장 가액에 합산되게 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일반지출→부대비(등재전)	건설중인자산	50,000	기타수수료	50,000
부대비 배부(등재시)	사무용기기	50,000	건설중인자산	50,000

국유재산 또는 물품의 검수시점(대장 등재시점)의 부대비 배부 또는 대장 등재 후의 부대비 배부와 관련한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은 [국유재산·물품 담당자] Part의 '1장. 물품의 취득' 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I : 청사 신축관련 여비 부대비 미 설정

• OO청에서는 청사 신축(1억원)과 관련하여 감독 등의 여비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발생유형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후/ 등재 전)' 또는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로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 일반지출(국유재산, 물품 미관련)'을 선택하여 지출하였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사 신축 관련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출장 등으로 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4)

따라서 여비 1,000만원은 부대비 설정을 통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OO청은 일반지출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

○ 부대비 설정(올바른 업무처리)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건설중인건물	10,000,000	현 금	10,000,000

○ 부대비 미 설정(잘못된 업무처리)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제 비용	10,000,000	현 금	10,000,000

잘못된 업무처리에 따라 부대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비 1,000만원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대장 등재 금액은 1억원으로 1,000만원 과소 계상되며, 비용이 1,000만원 과대 계상된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자산의 취득과 관련 있는 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에 부대비의 성격이 있는지 판단하여 발생유형 선택을 통해 부대비 설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되어야 하는 부대비 성격의 지출을 일반지출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발생유형변경'을 통하여 해당 지출을 부대비로 설정 해주어야 한다.

4)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공사 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시설부대비(420-05목)에 계상」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 1-18 ■ 발생유형 구분

발생유형	구분
0. 일반지출(국유재산, 물품 미 관련)	순수한 일반지출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부대비(계약번호 선택, 별도 배부처리)
2. 물품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	부대비(대장번호 선택 시 자동반영) (요청번호, 검수번호 선택 시 별도 배부처리)
4. 물품 부대비 지출(등재 후)	
5. 계약 전 부대비 지출	부대비(별도 배부처리)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지출을 부대비로 설정하는 방법은 그 시점에 따라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뉘어진다.

본 자산이 검수 업무처리를 통하여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생유형 3번'의 대장번호를 선택하여 비용을 자산의 가액에 바로 반영하고, 아직 본 자산이 검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유형 1번'을 선택하여 부대비로 설정한 후 본 자산의 검수 시점에 부대비배부를 통하여 대장가액에 반영해야 한다.

○ 본 자산 대장 등재 후(발생유형 3번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건 물	10,000,000	제 비용	10,000,000

○ 본 자산 대장 등재 전(발생유형 1번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건설중인건물	10,000,000	제 비용	10,000,000

자산 취득에 따른 여비의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여비는 발생유형 선택을 통하여 일반지출이 아닌 부대비로 설정하여야 한다. 만일 일반지출로 업무를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식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유형변경을 통하여 해당 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출을 부대비로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본 자산의 검수시점에 부대비배부를 통하여 설정된 부대비를 자산으로 대체하는 처리를 수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Case II : 부대비 발생유형 5번 선택 오류

• OO청에서는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청사 신축(1억원)과 관련하여 부대비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발생유형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후/ 등재 전)' 또는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로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유형 '5. 계약전 부대비 지출'을 선택하여 지출하였다.

발생유형 5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부대비 관련 자산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중인가타의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된다. (기타일반유형 자산에 대해서 부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중인가타일반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

이 경우 발생한 '건설중인자산' 관련 연계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검수 시 부대비 배부 누락 가능성이 높으며, 누락 시 건물, 토지 등 본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해당 건설중인자산이 재무제표에 그대로 남아 있어 재무제표가 왜곡 된다.

따라서 부대비 설정 시 시점에 맞는 발행유형을 선택하여 가능한 한 연계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오류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 부대비 발생유형 1번 선택(올바른 업무처리)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건설중인건물	10,000,000	현 금	10,000,000

○ 부대비 발생유형 5번 선택(잘못된 업무처리)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건설중인가타의유형자산	10,000,000	현 금	10,000,000

위와 같은 처리에 따라 발생유형 5번을 선택하여 부대비를 배부하는 경우에는 연계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검수 시점에 관련 부대비를 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자산취득과 관련된 부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에 맞는 발생유형 선택을 통하여 연계정보가 입력되도록 해야 한다.

(1) 배경

계약전부대비지출에 해당하여 발생유형 5번을 선택하는 경우 연계정보가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검수시점에 관련 부대비배부가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dBrain시스템에서는 지출요청서 작성 시 부대비 발생유형 5번을 선택하는 경우 공사계약통합번호를 선택하는 팝업을 띄어주어 부대비배부가 누락되는 일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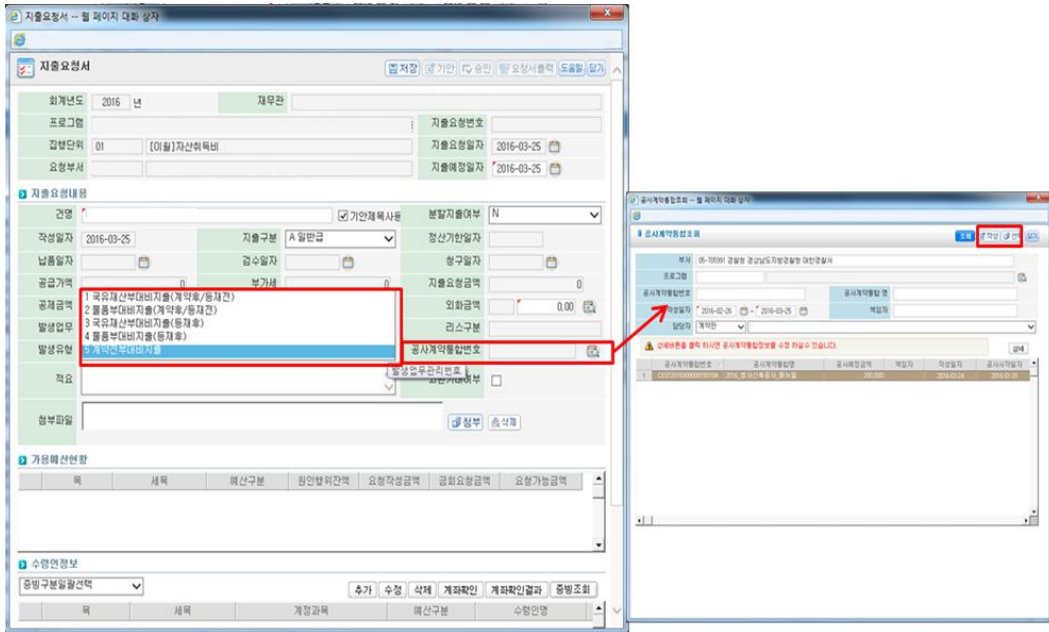
공사계약통합관리기능은 '공사가 장기간(1년이상) 진행'되거나 '여러 개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 공사계약통합관리번호를 통해 관련된 계약의 전체 진행현황이나 부대비 발생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관리하는 기능이다.

공사계약통합번호 입력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나, 통합관리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하여 부대비배부 누락 가능성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2) 공사계약통합번호와 연계

발생유형코드가 '5.계약전부대비지출'일 경우 공사계약통합번호 팝업버튼이 나타나고, 팝업버튼을 누르면 공사계약통합번호 팝업이 호출되어 해당하는 공사계약을 조회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19 ■ 발생유형5번 선택 시 공사계약통합번호 입력



공사계약통합관리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유재산·물품 담당자] Part의 <2장. 국유재산의 취득>의 <참고> 공사계약통합관리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5) 부대비 설정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자산 취득 관련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 (2013회계연도)

OO부 특별회계에서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사업’,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동 건립공사’ 등과 관련한 설계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건설중인 건물(일반유형자산)과 건물(일반유형자산)이 각각 6억 6,206만 원, 7억 2,214만 원 과소 계상되었으며, 기타수수료, 연구용역비, 기타용역비가 각각 3억1,498만 원, 1억 2,882만 원, 9억 4,040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209p 중>

○ 건설중인유형자산 과소 계상 (2014회계연도)

OO부 특별회계에서 도로용지 취득을 위한 지장물 보상비용 등 취득부대비용은 자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지급수수료가 274억 1,342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217p 중>

○ 토지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 (2015회계연도)

OO청 일반회계에서 국립무형유산원 주변정리를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영업보상비, 이주비 등 자산 취득부대비용을 토지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기타수수료로 처리하여 토지(일반유형자산)가 4억 235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수수료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321p 중>

5 조달(계약)을 통한 지출

집행단위담당자인 나재정 주무관은 향후 비용 처리될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조달(계약)에서 계약요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용역계약요청서를 작성하는 중에 용역명세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건중자산' 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집행단위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을 지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집행단위담당자가 계약(물품계약, 공사계약, 용역계약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출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하여 계약요청서 작성 시 자산 명세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향후 비용처리될 용역계약 건에 대해서 자산 관련 항목을 선택할 경우 향후 선금지급 시 잘못된 계정과목이 생성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20 | 용역계약요청

구분	목/세목	계정과목	내용	수량

(2) 오류에 따른 영향

각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요청서를 작성할 때는 분개가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 선금 지급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요청서에서 선택한 자산명세에 따라 생성되는 계정과목이 달라진다. 자산 관련 항목을 선택할 경우 '건설중인 자산' 계정과목이, 비용 항목을 선택할 경우 '선금금' 계정과목이 선금지급 시 생성된다.

- 용역명세를 잘못 선택한 경우(자산 관련 항목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건설증인자산	10,000	현 금	10,000

- 용역명세를 올바르게 선택한 경우(비용 항목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선급금	10,000	현 금	10,000

(3) 오류 정정 방법

자산명세 선택 오류로 인하여 선급 지급액이 잘못된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된 경우 업무담당자가 **검사 시점에 자산명세를 변경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회계연도말 현재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납품 미완료 등)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입력을 통해 해당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다만, 결산담당자는 향후 검사 시점에 자산명세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결산조정분개를 역분개 처리해야 한다.

- ◆ dBrain 시스템의 업무 절차 상 수입이란 조세 등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수입으로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 ◆ 국고금관리법에서는 수입의 정의, 원칙, 절차 및 제한 등 업무담당자가 수입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회계 기준에서는 수입 업무에 대응되는 수익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 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 dBrain 상 수입 업무절차는 징수요청, 징수결의 및 수납정산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업무담당자와 수입징수관 등이 각각의 단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 국유재산 및 물품의 처분 등에 따른 수입은 수입 업무가 아닌 국유재산 또는 물품 메뉴를 통하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단순 수입 업무 수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	65
2. 잡이익 과다계상	...	75
3. 지출금 반납	...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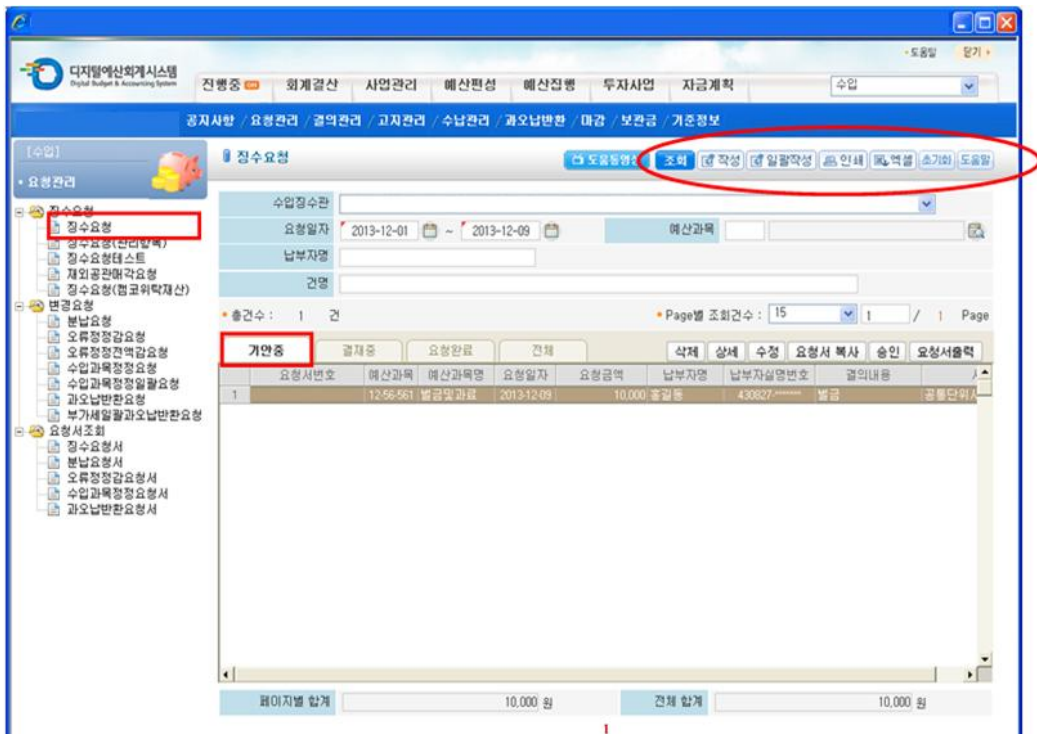
1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일반회계 사업담당자 차징수 주무관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 100만원을 고지하려고 한다. 징수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조회화면에서 '변상금' 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나 '위약금' 을 선택하여 요청서를 작성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수입업무를 위하여 징수요청서를 작성할 때 세입예산조회 화면은 고지를 통해 유입되는 현금과 관련한 수익 계정과목을 결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수입과 관계없는 예산과목 및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재정 운영표에 집계되는 수익정보가 왜곡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2-1 | 징수요청



세입예산조회

회계년도: 2010 조회구분: 수입목

관	항	목
1 [11] 재산수입	[53] 전대차관이자수입	[532] 통화금융기관전대차관이자수입
2		[534] 기타민간전대차관이자수입
3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1]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4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5		[545] 기타재산수입
6 [12] 경상이전수입	[56] 벌금및몰수금	[561] 벌금
7	[57] 변상금및위약금	[571] 변상금
8		[572] 위약금
9	[58] 가산금	[581] 가산금
10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93] 법정부담금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 변상금수익의 세입회계가 일반회계 등일 때

진수요청서

차감수익사업: 0000 경찰분야/경찰부원/경찰프로그램

재권발생일자: **요청일자 2010-03-11**

수입징수관: _____

징수관계자번호: _____

예산과목: 12-57-571 경상이전수입/변상금및위약금/변상금

계정과목: 61040100 변상금수익

납부자명: _____ 납부자실명번호: _____

납부자주소: _____

※ 사용안내 - 납기내기한 결과 후에도 수납을 하시려면 납기내/후구분을 "납기무관"으로 선택하세요.

납기내/후구분: [납기내] 가산(연체)율: _____ %

가산(연체)과목: _____

납기내기한: _____ 납기후기한: _____

요청금액: 0 납기후금액: 0

부과근거(내역): _____

산출근거1: _____

산출근거2: _____

산출근거3: _____

고지발송방법: 통합발송 자체발송 우송수단: [직접수령]

이는 지출업무를 수행할 때 세출예산조회와 동일하지만 세입의 경우 세부·세세부항목뿐 아니라 세입예산인 관·항·목의 선택에도 유의해야 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지출과 마찬가지로 수익에서도 dBrain 시스템은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을 통해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을 연계하여 재무결산에 필요한 계정과목 정보를 생성하고 있다.

변상금 및 위약금과 관련된 재무계정과목 연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표 2-1 ■ 경상이전수입_변상금및위약금(12-57)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관	항	목	세부항목	
12. 경상이전수입	57. 변상금및위약금	571. 변상금	세입회계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일 때	변상금수익/재원의조달
			세입회계가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 일 때	변상금수익/비교환수익등
		572. 위약금	세입회계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일 때	위약금수익/재원의조달
			세입회계가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 일 때	위약금수익/비교환수익등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관·항·목에 따라 연결되는 재무계정과목이 변동되며, 관·항·목에서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 세부 및 세부항목을 두어 재무계정과목을 연계하고 있다. 변상금과 위약금의 경우에는 '목'으로 수익계정과목이 각각 변상금수익과 위약금수익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변상금 선택	현 금	1,000,000	변상금수익/재원의조달	1,000,000
위약금 선택	현 금	1,000,000	위약금수익/재원의조달	1,000,000

따라서 차징수 주무관이 변상금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선택함에 따라 순자산변동표에 나타나는 계정과목이 잘못 생성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3) 오류 정정 방법

① 업무 완료 전

아직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각 담당자가 승인 취소를 한 후 수입징수관이 징수요청서를 재작성 하여야 한다.

② 업무 완료 후

수입 업무가 완료되어 수납정산까지 모두 이루어진 후에는 징수요청서를 작성한 담당자가 수입메뉴에서 '수입과목정정결의'를 통하여 수입과목을 정정할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수납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한 수입과목정정은 수입과목정정요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정이 가능하며, 세부·세세부항목 뿐만 아니라 예산과목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요청일자를 수납일자와 동일한 회계연도로 변경한 후 예산과목 조회를 통하여 올바른 수입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그림 2-2 | 수입과목정정결의



그림 2-3 | 수입과목정정요청서

수입과목정정요청서

결의내용

사업 0000 공통분야/공통부문/공통프로그램/공통단위사업

수입정수관

고지번호 0125101282160000004

수납일자 2010-12-12 수납금액 105,000

납부사명

납부자실명번호 201011-12121212

건명 가산 확인 테스트 (수납정산 가산결의) (수납정산)

과목정정요청내용

요청일자 2010-12-31

변경전	계정과목	변경
예산과목	계정과목	예산과목
1 11-54-545 기타재산수입	잡이익	12-59-593 경상이전수입/기타경상
2 12-58-581 가산금	가산금수익	담금수익

그림 2-4 | 수입과목정정 세입예산조회

세입예산조회

회계년도 2010

조회구분 수입목

관	항	목
1 [11] 재산수입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2		[545] 기타재산수입
3 [12] 경상이전수입	[56] 벌금및몰수금	
4	[57] 변상금및위약금	
5	[58] 가산금	
6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		
8		
9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5] 면허료및수수료	
10	[69] 잡수입	

세부항목

1.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
2. 정부외견대차관이자수익
3. 환율변동에 의한 추가수입
4. 기타수입

차징수 주무관의 경우 아직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승인 취소 등의 방법으로 징수요청서를 제작성 하여야 하며, 업무가 완료된 경우라면 '수입과목정정'을 통해 수입목을 '위약금'이 아닌 '변상금'으로 수정하여 올바른 회계처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I : 재화판매수익 선택

• OO청 사업담당자는 폐지매각대금 1,200만원을 '재화및용역판매수입_잡수입_기타잡수입(13-69-691)' 예산항목의 세부항목 중 '기타수입'을 통하여 업무처리를 해야 하나 '재화판매관련수익'을 선택하여 세입을 처리하였다.

재화판매수익이란 재고자산(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표 2-2 ■ 재화및용역판매수입_잡수입_기타잡수입(13-69-691) 매핑

예산과목(세부항목)	재무계정과목
재화판매관련수익	재화판매수익
유형자산 사용에 대한 수익	사용료수익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	수수료수익
수익사업이익전입금	수익사업이익전입금
기타수입	잡이익

세입을 재화판매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는 재고자산이 존재하여 해당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해당 재화의 판매가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폐지매각대금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며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세입을 재화판매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다.

○ 잘못된 업무처리(재화판매관련수익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현 금	12,000,000	재화판매수익	12,000,000

○ 올바른 업무처리(기타수입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현 금	12,000,000	잡이익	12,000,000

OO청 사업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재화판매수익을 선택할 때는 세입의 성격이 재화판매수익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재화판매수익은 재고자산의 판매 또는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한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담당자는 재화판매수익을 선택함에 있어 해당 세입이 재화판매수익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폐지매각에 따른 수입은 국가회계실체의 주된 활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화판매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② Case II : 관서운영경비 통장의 이자수입 처리

- OOOO위원회는 관서운영경비를 관리하는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1,000원의 수입처리 시 세부항목을 '국고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세부항목 및 세세부항목을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정기예금이자수익으로 선택하여 처리하였다.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세부·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표 2-3 ■ 재산수입_기타이자재산수입_기타재산수입(11-54-545) 매핑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유형자산 사용에 대한 수익		사용료수익
유가증권의 처분	단기(만기 1년 이내)	단기투자증권처분이익
	장기(만기 1년 초과)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인적사무에 대한 반대급부		수수료수익
기금여유자금운용 이자수익	정기예금이자수익	정기예금이자수익
	정기적금이자수익	정기적금이자수익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기타금융상품이자수익
	국채이자수익	국채이자수익
	공채이자수익	공채이자수익
	회사채이자수익	회사채이자수익
	지방채이자수익	지방채이자수익
	기타투자증권이자수익	기타투자증권이자수익
기타이자수익	기타이자수익	
국고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잡이익

관서운영경비를 관리하는 통장의 이자수입은 세부항목 중 ‘국고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을 선택하여 수입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차징수 주무관은 해당 수입을 세부항목 ‘기금여유자금운용 이자수익’ 중 ‘정기예금이자수익’ 세세부항목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나타날 수 없는 ‘정기예금이자수익’ 계정과목이 계상되었다.

○ 세부·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정기예금이자수익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현 금	1,000	정기예금이자수익	1,000

○ 세부·세세부항목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경우(국고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현 금	1,000	잡이익	1,000

관서운영경비통장에서 발생하는 국고예금 이자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작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정기예금이자수익 계정과목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한 수익 계정과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차징수 주무관의 경우 아직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승인 취소 등의 방법으로 징수요청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며, 업무가 완료된 경우라면 ‘수입과목정정’을 통해 세부·세세부항목을 ‘정기예금이자수익’이 아닌 ‘국고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수정하여 올바른 회계처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임차보증금, 지급보증금 관련 업무처리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재무계정과목 연계에서 유의할 점은 선택에 따라 수익계정과목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차감과 연계된다는 점이다. 자산의 차감과 연계되는 항목은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차보증금과 영업보증금과 같은 기타지급보증금이다.

아래 <표 2-4>와 같이 지급보증금의 수령에 따른 세입은 '임차보증금_채권'과 '기타지급보증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로 나누어진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지급보증금	현 금	1,000,000	임차보증금_채권	1,000,000
	현 금	1,000,000	기타지급보증금	1,000,000

'임차보증금_채권'은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아 국유재산인 무체재산권으로 등재되지 않고 채권으로 관리되는 임차보증금을 말하며, '기타지급보증금'은 영업보증금 등을 의미한다. 한편, 전세권이 설정되어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임차보증금⁵⁾의 반환은 단순 수익징수 메뉴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국유재산 매각으로 업무처리 해야 한다.

표 2-4 ■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회수(전세권 미설정으로 국가채권으로 관리)	계약기간 1년 이내 단기	임차보증금-채권
	계약기간 1년 초과 장기	장기임차보증금-채권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회수(전세권을 설정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	계약기간 1년 이내 단기	임차보증금-국유
	계약기간 1년 초과 장기	장기임차보증금-국유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회수(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보고대상이 아닌 경우)	계약기간 1년 이내 단기	임차보증금-일반
	계약기간 1년 초과 장기	장기임차보증금-일반

5) 재무계정과목 상으로는 '임차보증금_국유'로 표시된다.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임차보증금 이외의 지급보증금 회수	영업보증금 등(계약기간 1년 미만 단기)	기타지급보증금
	영업보증금 등(계약기간 1년 이상 장기)	장기기타지급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전신전화가입권
기타비교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제외)	세입회계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일 때	기타비교환수익/재원의조달
	세입회계가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 기관) 및 기금일 때	기타비교환수익/비교환수익등
과년도 민간경상보조비 등의 비용, 보조금 반환	과오가 아닌 사유로 반납 받는 과년도의 비용 지출금	지출금반납금
	보관금의 국고귀속 및 기타, 표시 되는 세부항목 이외의 수입처리 포함	잡이익
과오의 사유로 반납 받는 과년도의 비용 지출금		과오지급금회수금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기술료)		사용료수익

2 잡이익 과다계상

사업담당자인 차징수 주무관은 세입예산조회 화면에서 세입과 관련된 세부 및 세세부항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및 세세부항목 선택 시 세부항목 구분이 어려워 기타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세부항목 또는 세세부항목에 관련되는 재무계정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선택을 위한 기타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는 비경상적 또는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수익계정과목을 모두 분류하지 않고 재정정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세입과 관련된 세부 또는 세세부항목이 존재함에도 기타항목을 선택하면 잡이익이 과다 계상되어 재정정보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오류가 발생한다.

표 2-5 | 잡이익 생성 주요 예산·재무계정과목 연계표

예산세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재무계정과목
11-54-545 (기타재산수입)	기금여유자금운용 이자수익	기타이자수익	기타이자수익
	국고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	잡이익
12-59-596 (기타경상이전수입)	과년도 민간경상보조비 등의 비용, 보조금 반환	과오가 아닌 사유로 반납 받는 과년도의 비용 지출금	지출금반납금
		보관금의 국고귀속 및 기타, 표시되는 세부항목 이외의 수입 처리 포함	잡이익
13-67-672 (용수수입)	기타수입	-	잡이익
	공업용수 사용료 등 용수이용에 따른 수입	-	사용료수익
14-69-691 (기타잡수입)	재화판매관련수익	-	재화판매관련수익
	유형자산 사용에 대한 수익	-	사용료수익
	기타수입	-	잡이익

(2) 오류에 따른 영향

위와 같은 오류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잡이익 금액이 과다하여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정확한 수익정보가 산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표 2-6 | 2017회계연도 중앙관서별 잡이익 계상 현황(상위 8개 부처)

연번	부처명	금 액(백만원)
1	OO부	1,405,198
2	OO청	227,475
3	OO부	145,326
4	OO부	96,584
5	OO부	78,637
6	OO부	72,007
7	OO부	70,267
8	OO부	61,950

물론 재무계정과목이 각 부처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잡이익 이외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세부 또는 세세부항목 선택 오류에 의한 잡이익 계상 건도 많이 발견되었다.

사업담당자는 징수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능한 한 수입의 성격에 맞게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해서 관련 수익계정과목이 존재하는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계정과목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잡이익 과다계상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부담금수익 계정분류 오류(2013회계연도)

OO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임산물 수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임산물 수입이익금은 순자산변동표상의 부담금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재정 운영표상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잡이익이 15억 615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부담금수익(재원의조달및이전)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326p 중>

○ 자산처분이익 계정분류 오류(2016회계연도)

OO부 XX기금에서 수익증권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분배금 11억 7,443만원을 단기투자증권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잡이익으로 23억 4,886만원을 계상하고 금융상품이자수익을 11억 7,443만원 차감하는 등 잘못 회계처리하여 단기투자증권처분이익(비배분수익)이 11억 7,443만원, 금융상품이자수익(비배분수익)이 11억 7,443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잡이익(비배분수익)이 23억 4,886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348p 중>

3 지출금 반납

사업담당자인 차징수 주무관은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비용 지출금 (관련 프로그램 존재)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12-59-596)으로 반납 받았다. 이때, 세세부항목 중 '과오가 아닌 사유로 반납 받는 과년도의 비용 지출금' 을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없어 '보관금의 국고귀속 및 기타, 표시되는 세부항목 이외의 수입처리 포함' 을 선택하여 계정과목이 잡이익으로 처리되었다.

(1) 오류의 유형

전기 이전에 지출했던 비용을 반납받는 경우 지출 업무를 통해 징수요청서를 작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입 업무에서 징수요청서를 작성하였다. 수입에서 징수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올바른 세세부항목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잘못된 세세부항목을 선택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수입에서 징수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예산의 세부항목 8번 중 세세부항목 1번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2. 보관금의 국고귀속 및 기타, 표시되는 세부항목 이외의 수입처리'를 선택하여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였다.

표 2-7 |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매핑(Mapping)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회계과목	관리과목
7. 과오의 사유로 반납 받는 과년도의 비용 지출금	-	기타수익	과오지급금회수금
8. 과년도 민간경상보조비 등의 비용, 보조금 반환	1. 과오가 아닌 사유로 반납 받는 과년도의 비용 지출금		지출금반납금
	2. 보관금의 국고귀속 및 기타, 표시되는 세부항목 이외의 수입처리 포함		잡이익

- 세부·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2번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미수채권	1,000,000	잡이익	1,000,000

- 세부·세세부항목을 올바르게 선택한 경우(1번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미수채권	1,000,000	지출금반납금	1,000,000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로 인해 지출금반납금은 과소 계상되고 ‘잡이익’은 과대 계상됨에 따라 재무계정과목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다수의 부처에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담당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오류 정정 방법

① 수입업무 취소

아직 미수납된 상태라면 ‘오류정정전액감’ 업무를 수행하고, 수납정산까지 완료된 경우라면 ‘과오납반환’ 처리를 통해 수입에서 진행했던 업무를 취소 하여야 한다. 각 상황별 취소 세부 방법은 <표 2-8>에 따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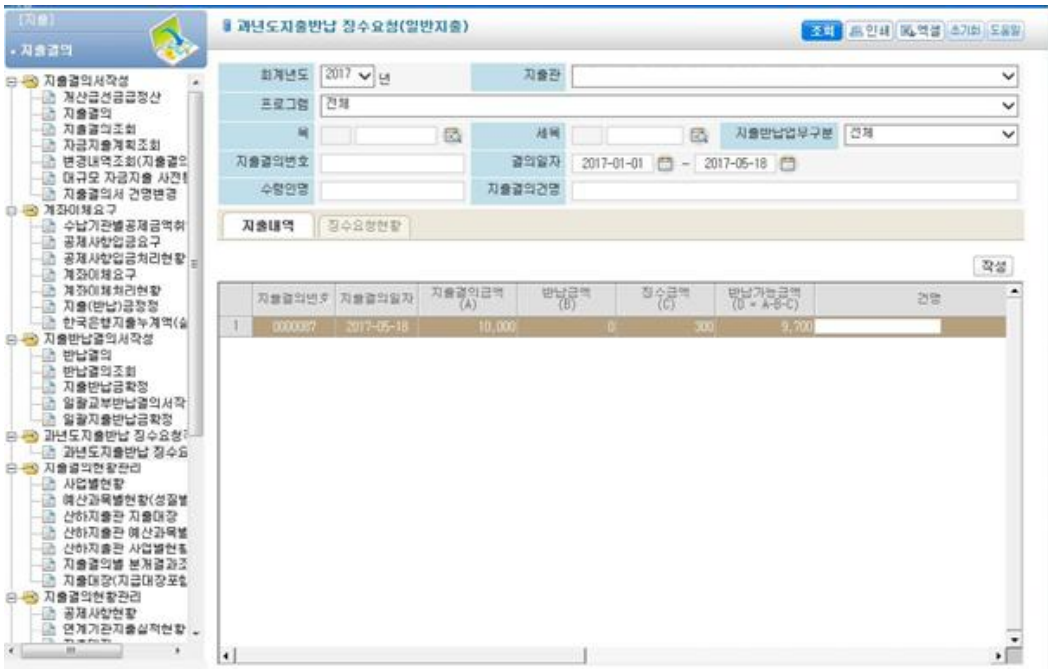
표 2-8 | 수입업무 취소 방법

구분	dBrain 메뉴	업무절차
오류정정 전액감	[수입>요청관리>변경요청>오류정정전액감요청]	1. [요청대상]탭에서 고지번호 건별로 조회된 화면에서 요청일자, 요청사유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2. [기안중]탭으로 이동하여 자료 조회 및 선택 후 [승인] 버튼 클릭 * 승인 이후 바로 기안 여부 질문 창 팝업시 “예” 를 선택하면 다음 3, 4 단계 화면 이동 없이 처리 가능
	[결의관리>변경결의>오류정정감결의]	3. 요청자료 조회, 선택 후 [일괄기안] 버튼 클릭 4. 기안 후 전자결재 승인 처리
과오납 반환	[수입>요청관리>변경요청>과오납반환요청]	1. 대상 조회, 선택 후 [작성] 버튼 클릭 2. 과오납반환요청서 작성 화면에서 요청일자, 이체거래여부*등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이체거래여부는 반드시 “아니오” 로 선택 및 반환계좌 미입력 3. 과오납반환요청 화면에서 [기안중]탭으로 이동하여 자료 조회 및 선택 후 [승인]* 버튼 클릭 * 수입경수관서와 요청부서가 다르면 [승인]버튼 대신 [일괄기안]버튼이 활성화되며, 동 버튼을 클릭해서 전자결재 기안 후 승인처리 되어야 과오납반환결의 자료가 생성됨 4. 승인이후 결의서의 일괄기안을 바로 진행 할 경우 다음 5, 6 단계 화면 이동 없이 처리 가능
	[수입>과오납반환>과오납반환결의]	5. [기안중]탭에서 요청된 자료 조회, 선택 후 [일괄기안] 버튼 클릭하여 기안 6. [전자결재>결재대기목록] 화면에서 해당 자료 선택 후 [일괄승인] 버튼 클릭

② 지출을 통한 징수요청서 작성

수입 업무에서 진행했던 징수요청서를 취소한 후 지출업무를 통해 징수요청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데 전년도 이전의 지출금반납금에 대한 수입금처리는 지출관(또는 집행단위담당자)이 디브레인 메뉴 [지출>지출결의>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일반지출)]⁶⁾을 통해 징수요청서를 작성한다.

그림 2-5 | 과년도지출반납 징수요청



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일반지출) 화면에서 과거의 지출 건을 조회하여 선택한 후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2-6>와 같이 과년도지출반납 징수요청 작성화면이 팝업 창으로 띄게 된다.

작성 화면 아래에 살펴보면 '사유'라는 항목이 있으며 사유항목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유를 '과오가 아닌 사유로 반납받는 과년도의 비용 지출금'을 선택하는 경우 '지출금반납금'으로 회계처리가 발생하며, '과오의 사유로 반납받는 과년도의 비용 지출금'을 선택하는 경우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회계처리가 발생하므로 사유 선택 시 주의하여야 한다.

6) 집행단위담당자인 경우 [지출>요청관리>일반지출>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요청관리)]

그림 2-6 | 과년도지출반납 징수요청 작성

과년도지출반납 징수요청 작성 -- 웹 페이지 대화 상자

과년도지출반납 징수요청 작성

1 당초 지출요청 내역

회계년도: 2017 년 요청부서:

요청일자: 2017-05-18 요청번호: 0000286

요청건명:

2 당초 지출금액 내역

결의일자: 2017-05-18 결의번호: 0000087

지출란:

지출건명:

프로그램:

과목	세목	예산구분	수령인	공급가격	부가세	결의금액	
1	요양비	사업연구비	일반예산	정액	10,000	0	10,000

3 징수요청 내역

징수요청 회계년도: 2018 년 작성일자: 2018-05-23 징수요청일자: 2018-05-23

수입징수관:

징수관계자번호:

지출반납업무구분: 일반지출 반납

거래처명:

거래처실명번호:

징수요청 건명:

지출금액: 10,000 가반납금액: 0 가징수요청금액: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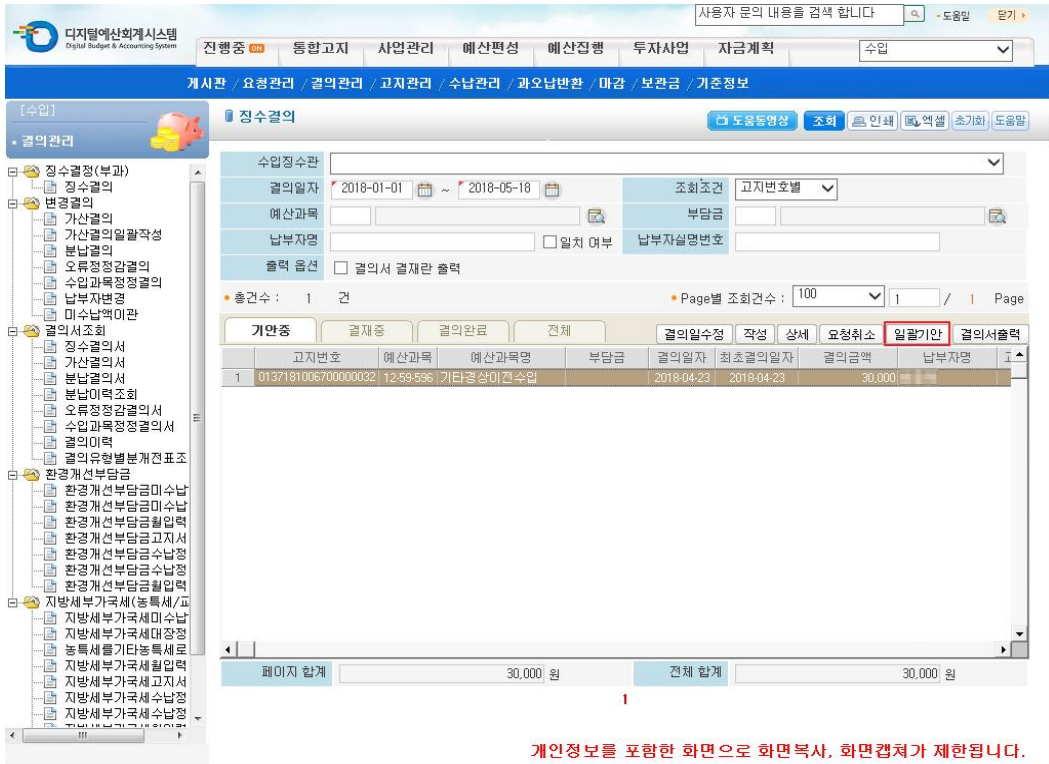
징수요청가능금액: 9,700 징수요청금액: 0

사유: **과오가 아닌 사유로 반납 받은 과년도의 비용 지출금**
과오의 사유로 반납 받은 과년도의 비용 지출금

③ 징수결의서 작성

지출 메뉴에서 징수요청서를 작성 한 후 수입징수관은 수입 메뉴를 통해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징수결의서는 [수입>결의관리>징수결의] 화면에서 조회 가능하며 지출에서 작성한 징수 건을 선택하여 징수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림 2-7 | 징수결의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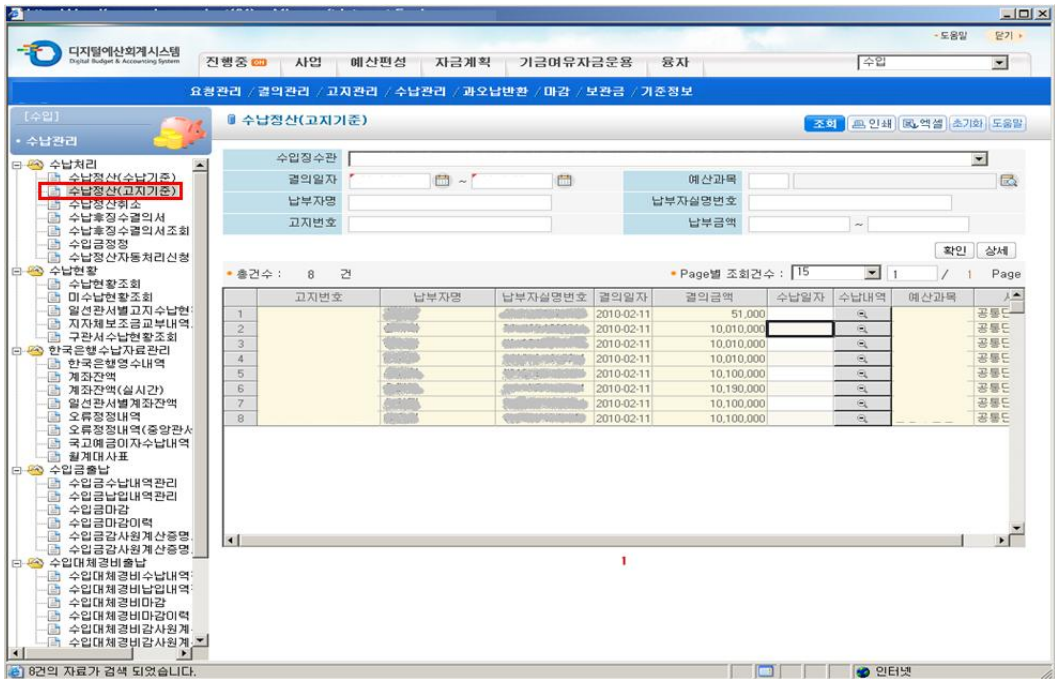


④ 징수결의 이후 업무처리

지출금반납금이 미수납된 상태라면 징수결의 이후 고지서 및 독촉장 출력, 수납정산, 마감업무는 일반적인 수입 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하면 된다.

반면, 지출금반납금을 이미 돌려받아 과오납반환 요청을 통해 수입업무를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결의 후 [수입>수납관리>수납처리>수납정산(고지기준)] 화면에서 징수결의된 건을 조회하여 수납정산 처리한다. 다만, 수납일자는 과오납반환요청서 작성 시 입력한 요청일자과 동일한 날짜로 입력해야한다.

그림 2-8 | 수납정산(고지기준)



(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I : 과오로 과년도 지출금 반납 시 세세부항목 선택 오류

- OO부는 과오로 전기 이전의 비용 지출금(관련 프로그램 존재)을 반납 받으면서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12-59-596)에서 세부항목 중 '과오의 사유로 반납 받는 과년도의 비용 지출금'을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관금의 국고귀속 및 기타, 표시되는 세부항목 이외의 수입처리 포함'을 선택하여 잡이익으로 처리되었다.

과오의 사유로 전기 이전의 비용을 반납 받는 경우 '과오지급금회수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가 발생하며, 이 경우에도 수입이 아닌 지출 업무를 통해 징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오가 아닌 사유로 인해 지출금을 반납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수입 업무를 취소한 후 지출 메뉴를 통해 징수요청서를 재작성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과년도지출반납 징수요청 작성 시 사유를 '과오의 사유로 반납 받는 과년도의 비용 지출금'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Case II :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같이 반환 받은 경우

- OO부는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비용 지출금(관련 프로그램 존재)을 반납 받을 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같이 수령하였으며, 이자는 재산수입/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기타재산수입(11-54-545) 세목에서 세부항목 국고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을 선택하여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지출금 반환 시 정산금에 포함된 지출금 정산이자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한다. 위의 사례는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자도 동일하게 '지출금반납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정산이자는 원금과 달리 수입 업무를 통해 징수요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때 세부항목을 '국고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아니라 '지출금 반납 관련 이자수익' 중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표 2-9 ■ 재산수입/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기타재산수입(11-54-545) 매핑

예산과목		재무계정과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회계과목	관리과목
국고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	기타수익	잡이익
지출금 반납 관련 이자수익	전기 이전에 과오로 초과지급한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	기타수익	과오지급금회수금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	기타수익	지출금반납금

○ 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국고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미수채권	1,000,000	잡이익	1,000,000

○ 세부항목을 올바르게 선택한 경우(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는 경우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미수채권	1,000,000	지출금반납금	1,000,000

(5) 지출금반납금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과오지급금회수금 계정분류 오류(2014회계연도)

OO부 XX기금에서 각종 지급금에 대하여 과오로 초과 지급함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을 과오지급금회수금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을 과오납반환하는 경우에는 전기과오납금반환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잡이익 및 잡손실로 잘못 처리하여 과오지급금회수금(비배분수익) 및 전기과오납금반환금(비배분비용)이 각각 604억 592만원, 51억 9,970만원 과소 계상되었으며, 잡이익(비배분수익) 및 잡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206p 중>

○ 보조비 반납금 계정분류 오류(2016회계연도)

OO부 □□기금에서 2015년 이전에 지출한 프로그램 관련 사업비 중 일부를 본 회계연도에 반납 받은 경우 해당 반납금을 지출금반납금(프로그램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잡이익(비배분수익)으로 잘못 처리하여 잡이익(비배분수익)이 301억 6,401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지출금반납금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389p 중>

○ 프로그램수익의 비배분수익 분류 오류(2017회계연도)

OO부 특별회계에서 2016년 이전에 지출한 프로그램 관련 사업비 중 일부를 본 회계연도에 반납받은 경우 해당 반납금을 지출금반납금(프로그램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비배분수익으로 처리하여 지출금반납금(프로그램수익)이 241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지출금반납금(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307p 중>

○ 프로그램수익의 비배분수익 분류 오류(2017회계연도)

OO부 □□기금에서 2016년 이전에 지출한 프로그램 관련 사업비 중 일부를 본 회계연도에 반납받은 경우 해당 반납금을 지출금반납금(프로그램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잡이익(비배분수익)으로 처리하여 잡이익(비배분수익)이 14억 4,238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지출금반납금(프로그램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 888p 중>

참고

당기 지출한 비용 반납 업무처리

전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이 아닌 당기 지출한 비용을 반납 받을 경우 디브레인 메뉴 [지출>요청관리>일반지출>지출반납요청]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지출반납요청 화면에서 당기에 발생한 지출 건을 조회한 후 선택하여 지출반납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업무처리 하는 경우 당기 발생했던 비용 계정과목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그림 2-9 | 지출반납요청 화면

지출결의번호	지출결의일자	지출결의금액 (A)	반납요청금액 (B)	반납가능금액 (C=A-B)	건명	수입인
0000029	2018-04-09	400,000	100,000	300,000		
0000029	2018-04-09	200,000	0	200,000		
0000030	2018-04-09	100,000	0	100,000		
0000040	2018-04-10	50,000	0	50,000		
0000043	2018-04-17	1,000	0	1,00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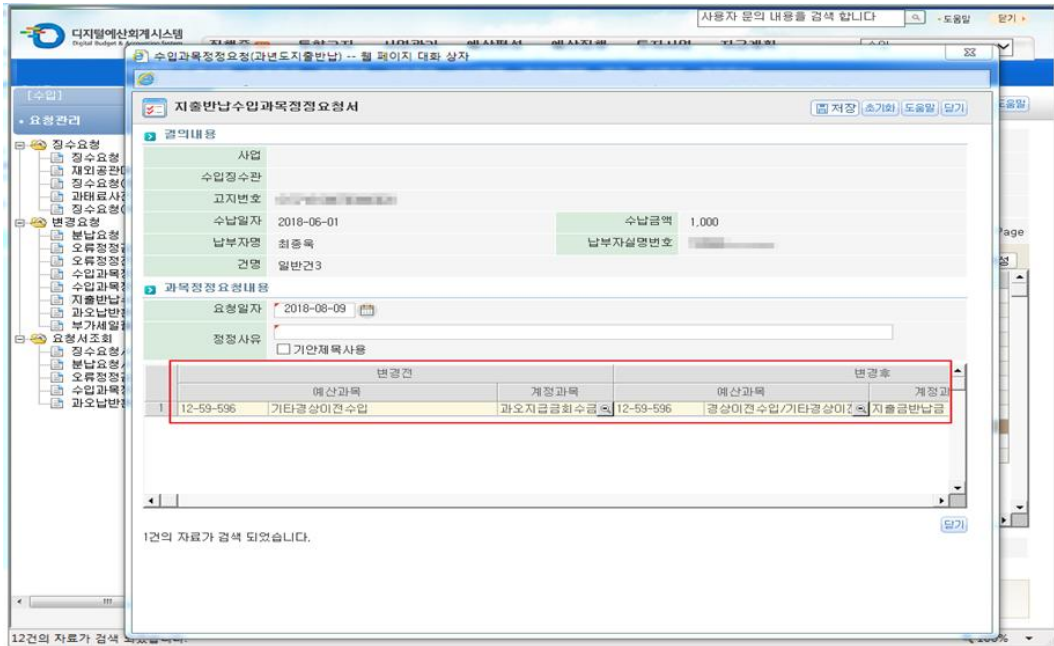
과년도 지출반납 수입과목정정 기능

과년도 지출금을 반납받은 경우 지출 메뉴의 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일반 지출) 화면에서 징수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징수요청서 작성 시 반납받는 사유가 과오인지 과오가 아닌 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된다. 만약 업무담당자가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았으나 실수로 사유를 과오로 선택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한 경우 계정과목을 변경해 줘야한다. 다만, 과년도 지출 반납 업무는 지출 업무에서 수행하였으므로 계정과목 변경을 수입 메뉴 '변경결의'의 '수입과목정정결의'를 통하여 수입과목을 정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과오지급금회수금과 지출금반납금간의 계정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디브레인 메뉴 [수입>요청관리>변경요청>지출반납수입과목정정요청]에서 계정과목 정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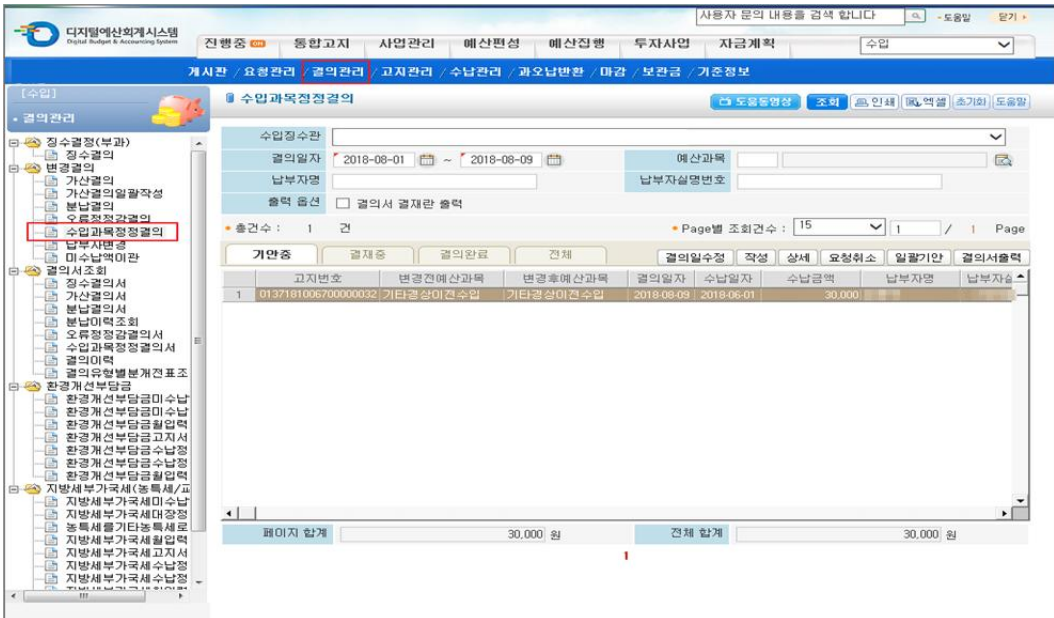
그림 2-10 | 지출반납수입과목정정요청 화면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지출반납수입과목정정요청' (Request for Correction of Expenditure Refund Income Account) screen. The interface includes a search bar at the top right, a menu tree on the left, and a main table with columns for '고지번호' (Invoice No.), '예산과목' (Budget Item), '수납일자' (Collection Date), '수납금액' (Collection Amount), '납부자명' (Payer Name), and '납부자실명번호' (Payer Real Name No.). A red box highlights the '지출반납수입과목정정요청' menu item in the left sidebar. At the bottom, a red box highlights a warning message: '※ dBrain 지출업무에서 과년도 일반지출반납 징수요청을 진행하고 수납일자가 당해년도인 고지에 한하여 과목정정이 가능합니다. ※ 과오가 아닌 사유로 반납 받는 과년도의 비용 지출금, 과오의 사유로 반납 받는 과년도의 비용 지출금' 간 과목정정이 가능합니다.'



지출반납수입과목정정요청이 완료되면 기존 수입과목정정과 동일하게 수입과목정정결의를 수행한다.

그림 2-11 | 수입과목정정결의 화면



- ◆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국가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즉, 국회, 정책결정자, 일반국민 및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에게 국가회계실체의 개별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 국가통합 결산보고서는 자산 또는 부채의 과대표시 및 수익 또는 비용의 중복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회계실체내 또는 회계실체간의 내부거래를 상계 제거하여 작성한다.
- ◆ 내부거래의 제거는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국가통합 결산보고서 작성 작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 내부거래와 관련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와 결산담당자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며 이 장에서는 내부거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동시에 주요 오류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거래처 관련 오류	...	91
2. 계정과목 관련 오류	...	100
3.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 관련 오류	...	102
4. 수동대사	...	105

1 거래처 관련 오류

사업담당자인 차징수 주무관은 폐지를 매각하면서 세입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폐지를 매각한 곳은 민간으로 dBrain 상 거래처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징수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거래처 등록을 통하여 실제 수납하는 거래처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서를 거래처로 입력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세입처리를 위해 징수요청서 작성 시 납부거래처를 등록하여야 한다. 납부 거래처는 실제 수납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개인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차징수 주무관은 해당 거래처가 dBrain 상 거래처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래처에 자신의 관서를 입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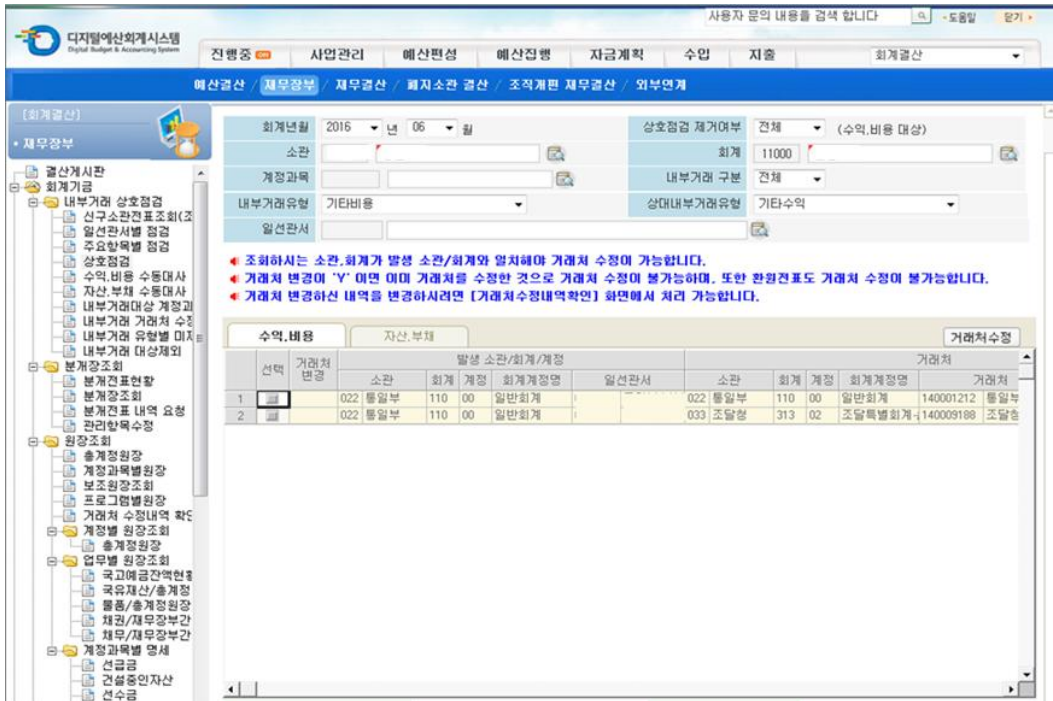
그림 3-1 | 징수요청서

거래처를 본인의 관서와 같이 국가회계실체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국가회계실체간의 거래인 내부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로 인지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위와 같은 오류에 따라 내부거래 상호점검 시 내부거래 미제거 현황에 해당 거래가 조회되며, 실제 내부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거래제거가 수행되지 않아 부처통합 및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3-2 | 내부거래 상호점검



(3) 사용자 유의사항

따라서 납부거래처 입력 시 거래처가 없는 경우 사업자번호 등으로 해당 거래처 확인한 후 거래처 등록을 통하여 실제 수납하는 기관 및 개인을 거래처로 입력하여야 한다.

거래처가 조회되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래처를 자신의 관서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거래가 내부거래로 인지되어 내부거래제거 대상으로 등록이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담당자는 올바른 거래처 입력을 통하여 해당 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I : 거래처 입력 오류

- 사업담당자인 차징수 주무관은 수행한 수납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선택을 총괄계정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관계정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거래처를 잘못 입력하여 내부거래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처를 잘못 입력한 회계실체가 거래처 수정을 통하여 자동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표 3-1 | 거래처 입력 오류

발생소관, 회계, 계정			거래처(상대소관, 회계, 계정)			제거 여부
소관	회계	계정	소관	회계	계정	
A부	a기금	총괄계정	B부	b기금	-	미제거
B부	b기금	-	A부	a기금	차관계정	미제거

위와 같은 경우에는 B부 b기금에서 거래처를 소관, 회계까지는 올바른 거래처를 선택하였으나, 총괄계정이 아닌 차관계정으로 선택하여 거래처가 불일치한 사례이다. 따라서 B부 b기금의 차징수 주무관이 거래처 수정을 하여야 한다. 거래처 수정은 '상호점검' 메뉴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3 | 상호점검_거래처 수정(I)

수익,비용		자산,부채				거래처수정								
선택	거래처 변경	발생 소관/회계/계정					거래처							
		소관	회계	계정	회계계정명	일선관서	소관	회계	계정	회계계정명	거래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033	조달청	313	02	조달특별회계	140009188	조달청	
<input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60000306	통계청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170000462	기획자	
<input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60000306	통계청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170000462	기획자	
<input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60000306	통계청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170000462	기획자	
<input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60000306	통계청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170000462	기획자	
<input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60000306	통계청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170000462	기획자	
<input type="checkbox"/>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035	통계청	110	00	일반회계	160000306	통계청	
<input type="checkbox"/>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069	기획재정부	502	00	국유재산관리기	170000462	기획자	

상호점검 메뉴에서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한 후 '선택' 열에서 거래처를 수정할 전표를 클릭한 후 '거래처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림 3-4 ■ 상호점검_거래처 수정(II)

The screenshot displays a multi-step process for adjusting a transaction. It consists of several sections:

- 조정전 분개내역 (Before Adjustment):** A table with columns for 회계년월 (Accounting Year/Month), 계정과목 (Account Name), 차대변구분 (Debit/Credit), 차변금액 (Debit Amount), 대변금액 (Credit Amount), and 수정후 전표번호 (Adjusted Voucher No.). Row 1 shows a debit of 10,000 to account 51040300 (소모성물품비).
- 조정후 분개내역 (After Adjustment):** A table with columns for 계정과목 (Account Name), 차대변구분 (Debit/Credit), 차변금액 (Debit Amount), and 대변금액 (Credit Amount). Row 2 shows a debit of 10,000 to account 51040300 (소모성물품비).
- 적요 (Summary):** A table showing '수정전 금액' (Before Adjustment Amount) of 10,000 원 and '수정후 금액' (After Adjustment Amount) of 10,000 원, with a difference of 0 원.
- 관리항목내역 (Management Item Details):** A table with columns for 순번 (No.), 관리항목명 (Management Item Name), 관리항목값 (Management Item Value), 관리항목값명 (Management Item Value Name), and 필수여부 (Required). Row 1 shows '거래처코드' (140009188) with value '조달청 징수관' (Y). Row 2 shows '거래처분류코드' (121) with value '중앙재정-기업특별회계' (N).

'거래처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3-4>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올바른 거래처를 선택하여 거래처를 수정할 수 있다. 거래처 수정은 거래처만 상이한 동일한 계정과목이 차변, 대변에 입력되는 거래처조정전표를 입력하는 것으로, 거래처 수정을 수행하면 상호점검 조회 시 '거래처변경' 열에 'Y'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처 수정 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한번 거래처를 수정하여 '거래처변경' 열에 'Y'가 찍혀있는 전표는 재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번 거래처를 수정한 전표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정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거래처 수정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Case II : 내부거래 상대 없음

-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으나, 본인이 발생시킨 내부거래의 짝이 되는 내부거래가 조회되지 않아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표 3-2 ■ 내부거래 상대 없음

발생소관, 회계, 계정			거래처(상대소관, 회계, 계정)			제거 여부
소관	회계	계정	소관	회계	계정	
A부	a기금	-	B부	b기금	차관계정	미제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내부거래 대상자료 조회 시 본인이 발생시킨 내부거래와 짝이 되는 내부거래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로서, 원인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①발생소관이 내부거래로 집계되지 않아야 할 전표의 거래처를 정부내 거래처로 발생시킨 경우, ②상대소관이 내부거래로 집계되어야 하는 전표의 거래처를 정부내 거래처로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내부거래 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거래 대상자료로 집계된 발생소관의 전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내부거래 여부를 확인 후, 내부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처 수정을 수행하여 내부거래 대상자료로 집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내부거래가 맞는 경우에는 상대 소관이 잘못 전표를 생성시켰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거래처 또는 해당 거래처의 중앙관서 결산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여야 한다.

③ Case Ⅲ : 거래처 선택 및 등록 오류

- OO특별회계에서 거래처가 XX기금인 미수채권 전표를 원전표의 거래처와 다른 YY공공기관으로 차감하는 결산조정전표를 입력하면서 재정상태표는 의도대로 미수채권이 '0'으로 나왔으나 내부거래제거 대상은 계속 남아있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일반회계에서 OO기금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면서 거래처를 OO기금의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 투신운용사로 처리하여 내부거래 제거대상으로 집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일반회계에서 XX기금을 거래처로 등록하면서 거래처구분을 중앙정부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선택하여서 국가회계실체간 거래로 인지되지 않아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서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납부자란 수납의무를 지는 거래상대방을 의미하는데, 수입징수업무를 통해 생성되는 미수채권이나 수익의 거래처 정보가 되며, 이는 향후에 내부거래 제거를 위한 기본 정보 역할을 담당한다.

납부자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경우에는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회계·기금 등 국가회계실체인 경우에는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 해당되어 정보가 관리된다.

따라서 납부자 실명번호에 납부자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납부자를 추가 등록하지 않고 수입징수관을 납부자로 선택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수입징수관을 납부자로 오해하여 납부자로 수입징수관을 선택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하므로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④ Case IV : 거래처수정 중복 처리 오류

- 업무담당자는 디브레인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내부거래상호점검] 화면에서 전표적요가 '거래처 수정'이고 부(-)의 금액으로 미제거되는 거래건을 발견하였다.

업무담당자는 결산담당자보다 신속하게 업무 실질을 파악할 수 있고,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보다 더 많은 내부거래 조회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내부거래 제거를 위해서는 업무담당자와 결산담당자 서로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해당 사례는 결산담당자와 업무담당자간의 협조가 미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오류 발생원인은 아래와 같다.

- ① 업무담당자는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거래처를 국가회계실체로 잘못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차변		대변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잡손실	100	현금	100	00부 일반회계

- ② 이 후 결산담당자는 위의 업무담당자가 발생시킨 전표의 거래처가 잘못 선택된 것을 알고 업무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처를 '기타'로 수정하였다.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잡손실	100	기타	잡손실	100	00부 일반회계

- ③ 업무담당자는 뒤늦게 본인의 잘못을 알고 기존에 입력했던 전표를 취소하고 거래처를 수정하여 다시 전표를 생성하였다.

차변		대변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현금	100	잡손실	100	00부 일반회계
잡손실	100	현금	100	기타

위의 사례는 업무담당자와 결산담당자가 거래처수정을 중복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로, 결과적으로 결산담당자가 처리했던 거래처수정 전표만 내부거래 미제거 오류로 발생하게 된다.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산담당자가 디브레인 [회계결산>재무장부>원장조회>거래처 수정내역 확인] 메뉴에서 거래처 수정 전표를 취소해야 한다.

그림 3-5 ■ 거래처 수정내역 확인

The screenshot displays the '거래처 수정내역 확인' (Check Transaction Modification History) menu. The interface includes search filters for fiscal year (2017), month (11), and company. A table lists transaction details with columns for division, fiscal year, transaction number, selection status, and amount. A '취소' (Cancel) button is highlighted in red.

구분	회계년월	신규전표번호	선택	신규	계정과목	처대	수정전	거래처
1	201701	00000008	☑	2	42080101 일반회계연입금세교	대변	092010096	기획재정부 국고국
2	201704	00000030	☑	2	42080110 당기순이익연입금세	대변	092010096	기획재정부 국고국
3		00000031	☑	2	42080109 감가상각연입금세교	대변	092010096	기획재정부 국고국

참고

상호점검 화면상 내부거래 미제거 사유 기입 기능

(1) 배경

내부거래 상호점검 화면에서 내부거래 미제거 항목에 대하여 사유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없어서 미제거 사유를 상호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재무결산 및 재무장부의 상호점검 화면에서 미제거 사유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미제거 사유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2) 상호점검 화면상 내부거래 미제거 사유 기입

그림 3-6 | 재무결산의 상호점검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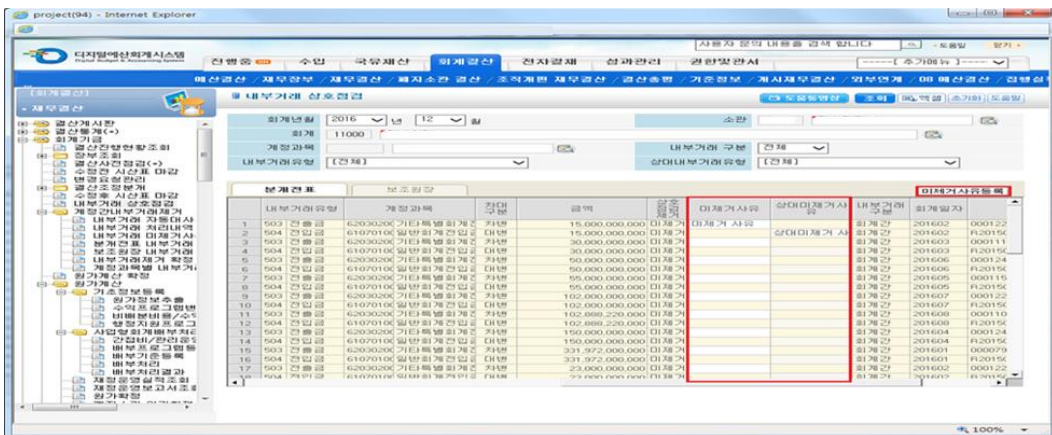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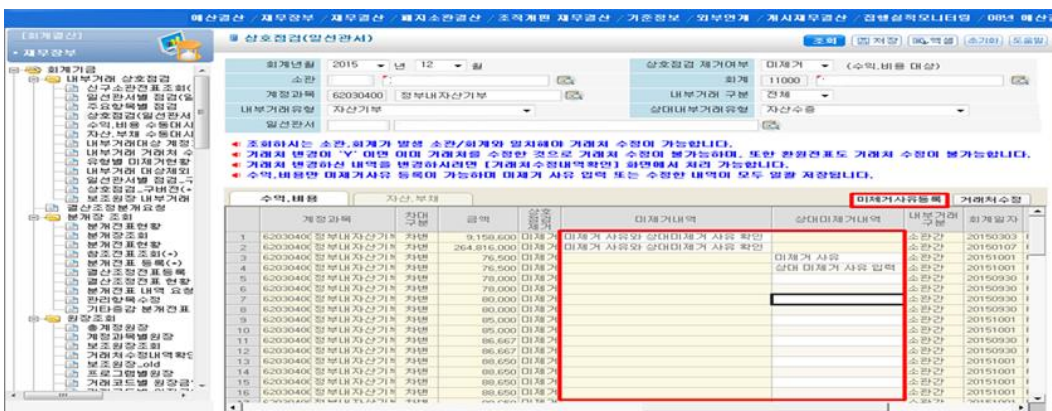


그림 3-7 | 재무장부의 상호점검 화면



2 계정과목 관련 오류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는데, 계정과목의 내부거래 유형이 일치하지 않아 자동대사가 수행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계정과목이 잘못 되어 내부거래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정과목 수정을 통하여, 자동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표 3-3 | 내부거래 유형 불일치

발생소관, 회계, 계정			거래처			계정과목	제거 여부
소관	회계	계정	소관	회계	계정		
A부	a기금	총괄계정	B부	b기금	-	정부내자산수증	미제거
B부	b기금	-	A부	a기금	총괄계정	기타재원이전	미제거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발생시킨 계정과목의 내부거래 유형이 일치하지 않아 자동대사가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두 명의 업무담당자 중 계정과목을 잘못 발생시킨 업무담당자가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표 3-4 | 내부거래 유형별 COA 예시

유형	Code	계정과목명	상대유형	Code	계정과목명
이자비용 (501)	51270100	국채이자비용	이자수익 (502)	41040201	국채이자수익
	51270200	공채이자비용		41040202	공채이자수익
	51270303	정부내전대차관이자비용		41040303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
	51270304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41040304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자산기부 (505)	42080310	정부내자산기부 /비교환수익등	자산수증 (506)	42080104	정부내자산수증 /비교환수익등
	62030400	정부내자산기부		61070400	정부내자산수증

내부거래 유형별 COA란 '이자비용·이자수익', '자산기부·자산수증'과 같이 내부거래 대상이 되는 계정과목과 제거 가능한 상대 내부거래 계정과목을 유형별로 구분해 놓은 것으로, 서로 짝이 되는 유형끼리만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내부거래가 잘못 제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오류 정정방법

계정과목은 업무담당자의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는 올바른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잘못 선택하였을 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의 정정은 지출 메뉴 중 '계정과목변경'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8 | 계정과목 변경

번호	요청일자	요청번호	요청금액	공제금액	건명	지출요청종류
1	2011-03-16	0000360	35,000	0		일반지출
2	2011-03-15	0000353	495,000	0		일반지출
3	2011-03-15	0000352	770,000	0		일반지출
4	2011-03-15	0000351	150,000	0		일반지출
5	2011-03-15	0000350	216,000	0		일반지출
6	2011-03-15	0000349	852,500	0		일반지출
7	2011-03-15	0000348	607,500	0		일반지출
8	2011-03-15	0000346	483,780	0		일반지출
9	2011-03-15	0000345	1,029,480	0		일반지출
10	2011-03-14	0000344	90,000	0		일반지출
11	2011-03-14	0000343	300,000	0		일반지출
12	2011-03-14	0000342	600,000	0		일반지출
13	2011-03-14	0000340	1,350,000	0		일반지출
14	2011-03-11	0000337	10,600	0		일반지출
15	2011-03-10	0000326	12,600	0		일반지출
16	2011-03-09	0000307	300,000	0		일반지출
17	2011-03-09	0000305	126,000	0		일반지출
18	2011-03-09	0000304	315,000	120,000		일반지출

수정해야 하는 지출이 일반지출이었다면 '계정과목변경(일반지출)' 메뉴에서, 관서운영경비 지급을 하였던 건이라면 '계정과목변경(관서운영경비)'에서 각각 조회되므로, 이를 선택하여 계정과목 변경을 수행할 수 있다.

3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 관련 오류

-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는데,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이 '미제거'로 표시된 것을 발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① Case I : 대상제외 항목 거래처 선택 오류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인 우편요금 지출 시 거래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지정해야 내부거래 대상제외로 집계 가능하나, 우체국 예금특별회계나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잘못 선택하여 내부거래가 대상제외로 분류 되지 않고 미제거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표 3-5 ■ 대상제외 항목 거래처 선택 오류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제거 여부
	소관	회계	계정		
00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	공공요금	대상제외
00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공공요금	미제거
00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공공요금	미제거

② Case II : 대상제외 항목 계정과목 선택 오류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인 우편요금과 조달수수료에 대해서 거래처는 적정하게 선택하였으나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한 결과, 내부거래가 대상제외로 분류 되지 않고 미제거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표 3-6 ■ 대상제외 항목 계정과목 선택 오류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제거 여부
	소관	회계	계정		
00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	공공요금	대상제외
00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	잡손실	미제거
00부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	기타수수료	대상제외
00부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	소모성물품비	미제거

내부거래가 소액다수 건이어서 제거로 인한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크고 그 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dBrain시스템에서는 내부거래 대상제외로 지정하여 내부거래 자동대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7 ■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

항목	대상제외 조건		대상제외 사유
	거래처	계정과목	
조달수수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조달사업회전자금	기타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조달수수료, 나라장터이용수수료는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자산 취득 관련 조달수수료, 나라장터이용수수료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기타의미지급금, 기타의미지급비용	
우편요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공공요금	우편요금은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징수할 시 정부내거래를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검사수수료 및 허가수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중앙전파관리소	공공요금, 기타수수료, 기타의미지급금, 기타의미지급비용	검사수수료 및 허가수수료는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징수할 시 정부내거래를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등기료	대법원 등기특별회계	등기료법정수수료	등기료는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등기특별회계에서 징수할 시 정부내거래를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세금	국세청 일반회계 / 관세청 일반회계	기타수수료, 제세, 법인세비용	국세청, 관세청의 경우 dBrain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징수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거래처 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며, 국가회계실체가 납부하는 세금이 전체 세금 중 비중이 높지 않음. 이에 따라 내부거래로 국세수익이 과대되는 위험보다 전체 국세수익이 공시되어야 하는 효익이 더 높으므로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2) 오류에 따른 영향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은 시스템에서 '대상제외'로 조회되므로 내부거래 제거 관련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대상제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나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하여 시스템 상 '대상제외'가 아닌 '미제거'로 조회된다면 불필요한 내부거래 검토 업무를 하게 되어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3) 오류 정정방법

우편요금, 조달수수료 등과 같이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임에도 거래처나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하여 '미제거'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앞의 '1. 거래처 관련 오류' 및 '2. 계정과목 관련 오류'에서 설명한 거래처 수정('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내부거래 상호점검>상호점검'메뉴)과 계정과목 정정('지출>요청관리>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메뉴)을 통해 대상제외로 올바르게 집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대상제외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계정과목 등의 오류로 대상제외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올바른 거래처나 계정과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수동대사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는데, 거래처 전표가 1:1로 대응되지 않거나, 전표의 회계일자가 크게 차이를 보임에 따라 자동대사를 통해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은 '미제거' 항목을 발견하였다.

(1) 내부거래 제거 방법

내부거래의 거래처, 내부거래 유형 및 금액이 모두 일치하면 시스템에서 자동대사되어 내부거래가 제거 되나, 회계일자 차이가 큰 경우와 전표가 1:1대응이 되지 않고, 1:n 또는 n:n으로 대응되는 경우에는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가 수동대사를 해야 한다.

(2) 수동대사 필요 유형

① Case I : 상대방 전표와 1:1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표 3-8 | 전표 1:n 대응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금 액	제거여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10,000,000	미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8,000,000	미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2,000,000	미제거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전표가 1:1로 대응되지 않아 자동대사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전표가 1:2로 서로 짝이 된다는 사실을 시스템에 반영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내부거래 수동대사라 한다.

② Case II : 상대방 전표와 회계일자 차이가 큰 경우

표 3-9 | 회계일자 차이가 큰 경우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회계일자	제거여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10,000,000	2012. 7. 31	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10,000,000	2012. 8. 31	제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20,000,000	2012. 7. 31	미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20,000,000	2012. 12. 31	미제거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인 경우에도 회계일자의 거래월을 기준으로 상대거래 건의 거래월이 전월부터 차월까지의 범위를 벗어나면 dBrain 시스템 상 자동대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1:n, n:n 으로 전표가 대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동대사를 통해서 전표를 각각 짝지어 주어야 한다.

(3) 수동대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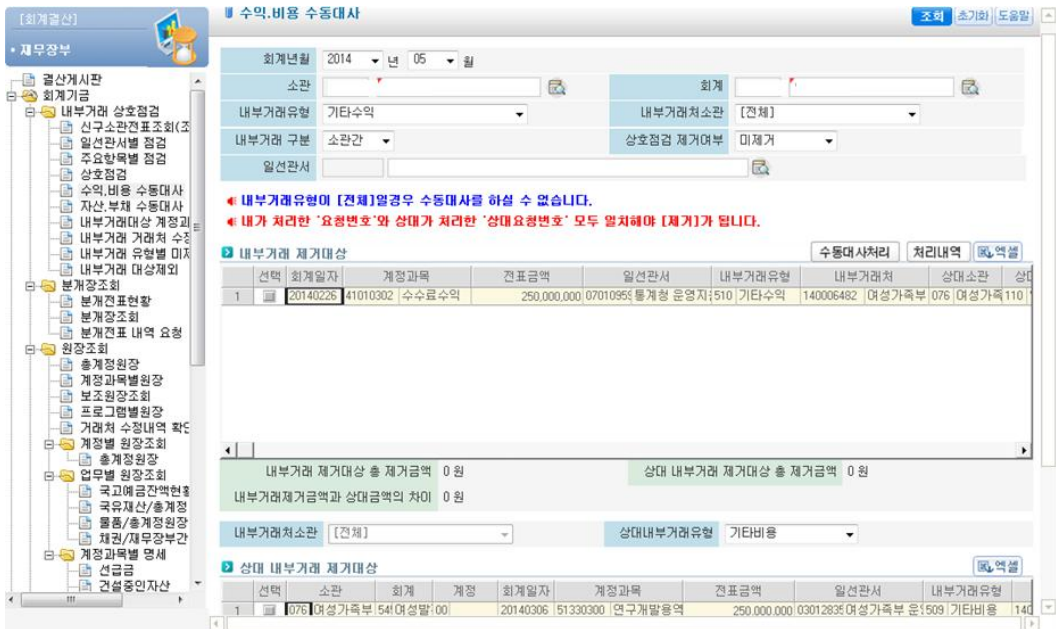
그림 3-9 | 내부거래 수동대사(내부거래 유형 전체)

The screenshot displays the '내부거래 수동대사' (Internal Transaction Manual Reconciliation) screen. It features a sidebar with a tree view of organizational units, a top navigation bar with search and filter options, and a main table listing transactions. The table has columns for '회계일자' (Accounting Date), '계정과목' (Account), '전표금액' (Original Amount), '일선관서' (Original Office), '내부거래유형' (Internal Transaction Type), '내부거래처' (Internal Counterparty), '상대소관' (Counterparty Agency), and '상대회계' (Counterparty Accounting). Below the table, a summary bar indicates '내부거래 제거대상 총 제거금액 0 원' and '상대 내부거래 제거대상 총 제거금액 0 원'. The interface also includes buttons for '수동대사처리' (Manual Reconciliation), '처리내역' (Processing History), and '역설' (Reverse).

수동대사 메뉴에서 소관과 회계를 선택하고, 내부거래 구분과 상호점검 제거 여부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상기 <그림 3-9>과 같이 내부거래 대상 자료 중 수동대사를 수행할 전표들이 조회된다. 또한 아래쪽 화면에서는 상대방에서 발생시킨 전표(내가 발생시킨 거래와 제거해야 하는 상대 거래처에서 발생시킨 전표)가 조회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내부거래 유형을 전체로 놓고 조회하면 조회는 가능하나 수동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수동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거래 유형을 특정하여 선택 후 진행하여야 한다. 내부거래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 아래쪽 화면에서는 상대 거래처가 발생시킨 전표 중 선택한 유형과 짝이 되는 유형만 조회가 가능하다.

그림 3-10 ■ 내부거래 수동대사(내부거래 유형 선택)



<그림 3-10>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거래 유형을 '기타수익'으로 설정한 후 조회를 했을 경우에는 '선택'열이 추가로 생성되며, 상대내부거래유형은 '기타비용'으로 고정되어 조회가 이루어진다.

조회되는 전표 중 짝이 되는 전표를 위아래로 모두 선택한 후 '수동대사 처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수동대사가 수행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내가 발생시킨 전표의 금액과 상대방이 발생시킨 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대사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동대사를 수행하게 되면 상호점검 화면에서 '요청번호' 열에 일련번호가 생성되며, 이 일련번호는 수동대사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이 된다.

수동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내부거래제거는 두 개의 회계실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업무담당자 본인이 수동대사를 수행한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 거래처에서 동일한 수동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모든 업무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단, 차감전표 수동대사는 예외적으로 상대방에서 동일한 수동대사를 할 필요 없음).

그림 3-11 ■ 수동대사 제거대기내역

일련번호	내부거래유형	대사금액
1	0000000000000001 기타수익	250,000,000

소관	회계	계정	전표번호	회계일자	계정과목	차대변	제거금액	적요
1	076 여성가족부 545 여성발전 00	R2014030765	2014-03-06	연구개발용역비	D	250,000,000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2	035 통계청 110 일반회계 00	R2014020351	2014-02-26	수수료수익	C	250,000,000	통계대행과-333(2014.2	

수동대사 화면에서 '처리내역'을 클릭하면 수동대사를 수행한 전표는 '제거 대기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동일하게 수동대사를 완료한 이후에야 제거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거내역에서 조회가 되는 건은 자동대사와 마찬가지로 결산시점에 자동으로 내부거래제거가 이루어진다.

상호점검에서 수익·비용 전표를 확인하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수동대사를 수행한 것은 요청번호에 일련번호가 조회되며, 상대 거래처에서 본인과의 거래에 대해 수동대사를 수행한 것은 상대요청번호에 일련번호가 조회가 되므로 수동대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요청번호와 상대요청번호가 일치한다면 수동대사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요청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제거', '미제거' 대신 '불일치'라고 상호점검제거 열에 표시가 이루어진다. 만일 '불일치'로 조회되는 건이 있다면 각 담당자가 서로 다르게 수동대사를 수행한 것으로 수동대사를 취소하고 재수행 하여야 한다.

수동대사가 양 거래처에서 모두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면, <그림 3-12>과 같이 '제거내역'으로 조회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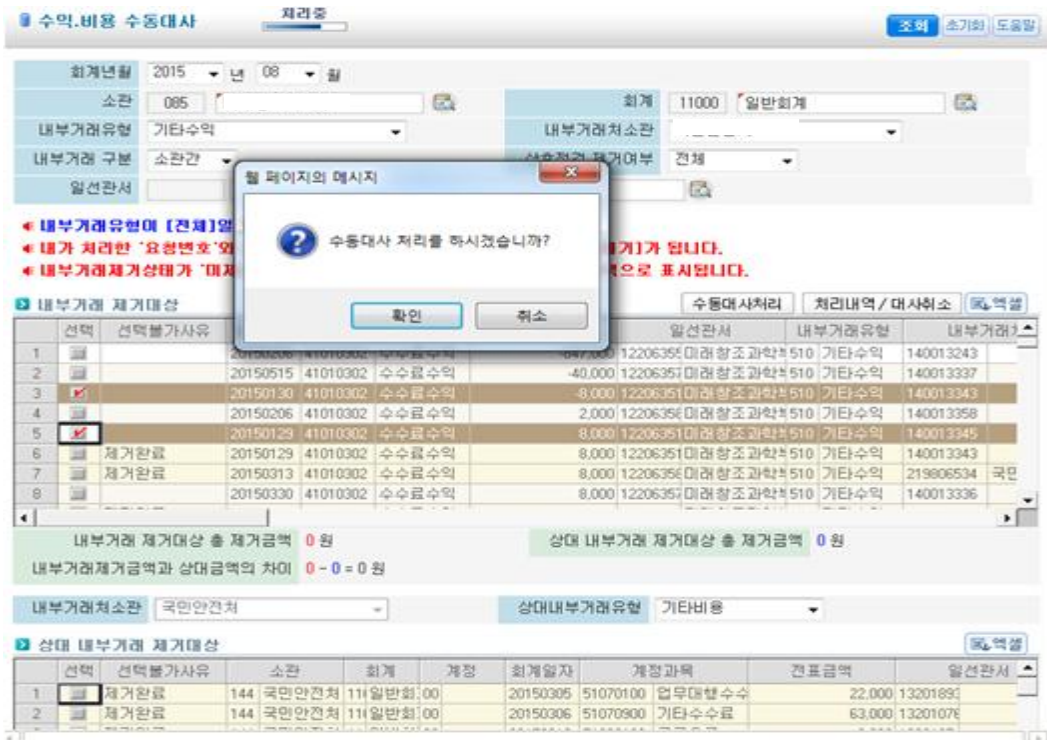
그림 3-12 ■ 수동대사 제거내역

내부거래 대사 상세					
내부거래제거대상					
제거내역		제거대기내역			
내부거래제거전표번호	내부거래유형	상대내부거래유형	대사금액	작업일시	
1	합 계	전입금	전출금	2,730,929,668	2014-05-27
2	0000000000000000027	전입금	전출금	536,431,370	2014-01-24
3	00000000000000000357	전입금	전출금	34,000	2014-02-15
4	00000000000000000358	전입금	전출금	693,000	2014-02-15
5	000000000000000001200	자산수증	자산기부	5,162,748	2014-03-06
6	000000000000000001401	전입금	전출금	179,310,000	2014-03-12
7	000000000000000001686	전입금	전출금	256,570	2014-03-25
8	000000000000000001687	전입금	전출금	161,780	2014-03-25
9	000000000000000001688	전입금	전출금	78,220	2014-03-25
10	000000000000000001689	전입금	전출금	3,983,340	2014-03-25
11	000000000000000001690	전입금	전출금	584,560	2014-03-25
12	000000000000000001691	전입금	전출금	514,600	2014-03-25
13	000000000000000001692	전입금	전출금	3,678,130	2014-03-25
14	000000000000000001693	전입금	전출금	230,700	2014-03-25
15	000000000000000002009	전입금	전출금	6,209,400	2014-04-08
16	000000000000000002164	전입금	전출금	65,750	2014-04-09
17	000000000000000002165	전입금	전출금	325,780	2014-04-09
18	000000000000000002166	전입금	전출금	1,500,000	2014-04-09

(1) 차감전표 수동대사

일반적으로 내부거래 전표의 수동대사는 양 회계실체가 각각 동일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내부거래 차감전표의 경우에는 차감전표를 발생시킨 회계실체에서만 수동대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2015년 dBrain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그림 3-13>와 같이 차감전표를 발생시킨 회계실체만 수동대사 하여 내부거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3 | 차감전표 수동대사



(2) 내부거래 상대소관의 수동대사 취소

일반적으로 내부거래 전표의 수동대사 취소는 요청한 회계실체만 가능하고 요청받은 회계실체는 수동대사 취소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내부거래 수동대사 요청 후 발생소관에서 원전표를 취소할 경우 요청받은 상대소관은 수동대사 요청 내역을 삭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dBrain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내부거래 수동대사 요청을 받은 회계실체에서도 수동대사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4 ■ 상대소관 수동대사 취소



	일시번호	내부거래유형	대사금액
1	0000000000000001	자산기부	144,46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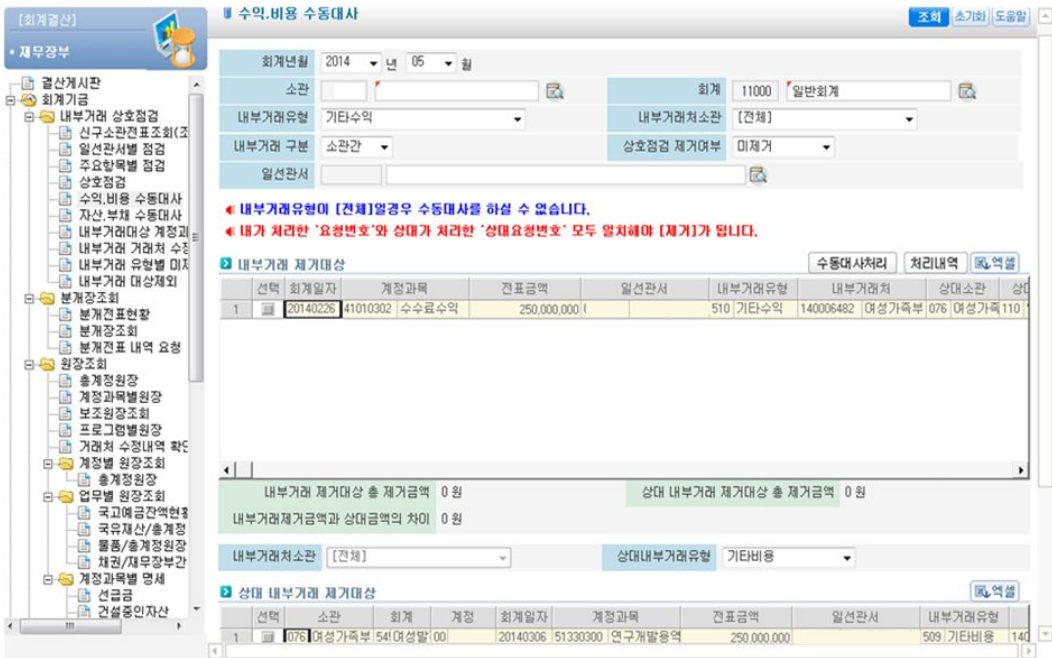
(3) 거래처 오류 건에 대한 수동대사 처리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미제거 내역 검토 중 거래처가 잘못 입력된 미제거 건에 대해서 거래처 수정을 수행하여야 하나 수동대사로 처리하였다.

수동대사는 1:1 대응 전표가 아니거나 또는 회계일자 차이가 커서 제거되지 않는 건의 경우 시스템 상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짝을 지어주는 업무이다.

따라서 거래처 오류 또는 계정과목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거래처수정이나 계정과목 수정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이나, 수동대사 처리하는 경우에는 내부거래가 미제거된다.

그림 3-15 | 거래처 오류 건에 대한 수동대사 처리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자동대사를 위해 해당 수수료수익의 거래처를 여성가족부 일반회계에서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으로 수정하여야 하나, 해당 거래처 오류 건에 대해 수동대사 처리하여 내부거래가 미제거 되었다.

표 3-10 | 거래처 불일치

발생소관	발생회계	거래처소관	거래처회계
통계청	일반회계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	통계청	일반회계

내상호 주무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발생시킨 거래의 소관회계와 상대방이 발생시킨 거래처 소관회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동대사가 가능하나, 상대 거래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발생은 기금, 거래처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수동대사를 수행할 수 없다.

수동대사의 경우 거래 당사자가 각각 동일한 전표에 대해서 수동대사처리를 해야 업무가 완료되므로, 내부거래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동대사 메뉴에서 조회된 내부거래 제거대상을 수동대사처리하기 전에 거래처 확인 후 일치할 경우 수동대사를 해야 내부거래가 제거될 수 있다. 만약 거래처가 불일치 할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올바르게 못한 거래처를 선택한 업무담당자가 거래처를 수정하여 자동대사를 통한 내부거래 제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 · 물품 담당자

제1장

물품의 취득

- ◆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 ◆ 물품의 취득은 dBrain 상 조달(계약)메뉴의 구매요청(물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하여 취득하게 된다.
- ◆ 취득 업무를 통하여 소유하게 되는 물품은 자산의 품종선택에 따라 유형자산의 형태가 구분되며, 물품의 구분과 각각 그에 해당되는 재무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물품	일반유형자산	
	회계과목	관리과목
전기통신기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차량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운반건설기계및차량
기계요소/공작기계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산업기계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의료화학분석기기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물리실험측정기기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인쇄 사진 및 시청각기기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기타잡기기	기타일반유형자산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 ◆ 본 장에서는 조달(계약) 메뉴를 통하지 않고 물품을 취득해서 발생하는 오류와 구매요청서 작성 및 부대비 미배부관련 오류사례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일반지출을 통한 자산의 취득 오류	...	118
2. 구매요청서 작성 시 물품명세 선택 오류	...	124
3. 부대비(조달수수료 등) 미배부 오류	...	127

1 일반지출을 통한 자산 취득 오류

사업담당자로 새로 임명된 김국유 주무관은 출장용 노트북 1대를 100만원에 구매하려고 한다. 조달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김국유 주무관은 일반지출 업무를 통해서 노트북 구입 관련 요청서를 작성하였다.

(1) 오류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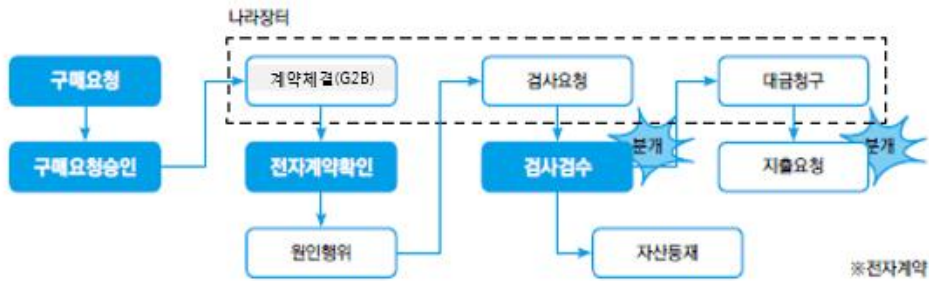
국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은 아래 <그림 1-1>과 같이 dBrain 메뉴 중 조달(계약) 메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사업담당자가 조달(계약)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일반지출 메뉴를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1 | 구매요청(물품)

요청번호	건명	요청일자	요청금액	채결구분	진행상태	
1	물품	2011-03-08	0	dBrain(서면계약)	요청-기안건	경:
2	000	2011-03-08	1,000	G2B(전자계약)	요청-기안건	경:
3	검수반려 테스트_물품	2011-03-03	100	G2B(전자계약)	요청승인-승인	경:
4	111	2011-03-03	1,000	dBrain(서면계약)	요청승인-승인	경:
5	1111	2011-03-02	1,000	dBrain(서면계약)	요청승인-승인	경:
6	분류식별 번호	2011-03-02	10,000	dBrain(서면계약)	요청-기안건	경:
7	복사기 구매	2011-02-25	10,000	dBrain(서면계약)	요청승인-승인	경:
8	L O E B A	2011-02-25	0	dBrain(서면계약)	요청-기안건	경:
9	복사기 구매	2011-02-24	15,000	dBrain(서면계약)	요청승인-승인	경:
10	리스 대금청구 예산 테스트	2011-02-24	100,000	dBrain(서면계약)	요청승인-승인	경:
11	4444	2011-02-18	1,000	dBrain(서면계약)	요청-기안건	경:
12	20110218_물품_국고인	2011-02-18	0	dBrain(서면계약)	요청-기안건	경:

조달(계약) 메뉴를 통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요청서 작성 후 검사, 검수 업무를 통하여 해당 국유재산과 물품이 각각의 대장에 등재되고, 대금청구 등을 통하여 지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 1-2 | dBrain 상 취득업무 흐름



(2) 오류에 따른 영향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달(계약) 업무 메뉴에는 검사, 검수를 통한 국유 재산·물품의 대장 등재 및 대금지출 업무처리가 함께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지출 메뉴를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검사 및 검수 업무를 통한 국유재산 또는 물품의 자산 등재 업무처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산이 대장에서 누락되게 된다.

○ 조달(계약)메뉴 회계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검 수	사무용기기	1,000,000	미지급금	1,000,000
지 출	미지급금	1,000,000	현 금	1,000,000

○ 일반지출 메뉴 회계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지 출	사무용품비	1,000,000	현 금	1,000,000

위의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계약)메뉴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검수시점과 지출(계좌이체)시점에 회계처리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검수시점에는 대장에 자산이 등재되며 차변에 자산이 인식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에 대한 미지급금(부채)이 대변에 인식된다. 그리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지출 시점에 기인식되었던 미지급금을 상계하고 현금이 나가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며 업무가 완료된다.

하지만 김국유 주무관과 같이 물품 구매 시 조달(계약)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지출 메뉴로 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자산이 등재되지 않고 사무용품비 등 비용으로 회계처리 되어 자산이 과소 계상되고, 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위 사례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부 부처에서는 '기타증감'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등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타증감' 업무의 '기타(증)' 사유를 통하여 자산을 등재하는 것은 오류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추가로 생성되어 또 다른 오류를 발생 시키게 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_기타(증)	사무용기기	1,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

위의 회계처리와 같이 기타증감_기타(증)으로 자산을 대장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지출 시 인식되었던 비용의 과대계상 효과는 사라지지 않고, '전기오류 수정이익'라는 수익 계정과목이 생성되어 수익 역시 과대 계상된다.

따라서 해당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지출 메뉴를 통한 업무를 취소하고, 조달(계약) 메뉴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노트북 구입과 같은 물품을 구입할 경우 일반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업무 처리 방식이다. 따라서 사업담당자는 물품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반지출 메뉴가 아닌 조달메뉴의 구매요청(물품)을 통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처리 방식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I : 이동성기계장치 구매 시 일반지출 취득

• OO부는 물품구입 시 조달(계약) 메뉴를 거치지 않고 일반지출 메뉴를 통하여 물품을 취득하여 사무용품비 2,828,000원이 과대 계상 되었으며, 해당 물품의 대장 등재를 위하여 기타증감_기타(증) 업무를 통하여 이동성기계장치를 동액 인식하여 수익이 과대 계상되었다.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 메뉴가 아닌 조달메뉴의 구매요청(물품) 메뉴를 이용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OO부 담당자는 일반지출 메뉴로 물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잘못된 회계처리가 나타나게 된다.

○ 조달(계약)메뉴 회계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검 수	이동성기계장치	2,828,000	미지급금	2,828,000
지 출	미지급금	2,828,000	현 금	2,828,000

○ 일반지출 메뉴 회계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지 출	사무용품비	2,828,000	현 금	2,828,000

또한 해당 물품의 대장 등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은 '기타증감_기타(증)'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잘못된 회계처리가 다시 나타난다.

○ 기타증감_기타(증) 처리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이동성기계장치	2,828,000	전기오류수정이익	2,828,000

OO부는 물품 구입 시 일반지출로 업무를 처리하여 해당 물품이 자산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되었다. 해당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처리를 다시 수행하였어야 하나 물품관리관은 해당 재산을 대장에 '기타증감_기타(증)' 을 통해 단순히 대장의 금액만을 등재하였기 때문에 재무결산 상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이 계상되며 추가로 오류가 발생하였다.

참고

기타증감 메뉴

(1) 기타증감이란?

dBrain 시스템의 국유재산, 물품 업무에는 대장관리 메뉴 중 '기타증감' 메뉴가 존재한다. 해당 메뉴는 현금의 지출과 수입이 수반되지 않는 대장의 변화를 설정하는 메뉴로 합병, 분할과 같은 업무와 취득일자 변경, 내용연수 변경 등 대장의 정보관리항목 변경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3 | 기타증감메뉴

증감사유	품명	규격	증감수량	증감금액	단위	분류번호	식별번호
------	----	----	------	------	----	------	------

(2) 기타증감사유

기타증감사유에는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 환수, 매립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며 사유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상대계정과목도 다르다. 이에 업무담당자는 기타증감메뉴를 사용해야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기타증감의 정확한 사유를 선택하여야 올바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표 1-1 | 기타증감 국유재산

기타증감사유	사유세부사항	상대계정과목
취득/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	선금금
취득/환수	법률, 법원의 판결, 행정처분등으로 무상 환수한 경우	잡이익
취득/매립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취득	잡이익
취득/누락재산 등록	전년도 결산 시 누락된 재산을 현 년도에 등록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
취득/사용종료 (인수)	각 부처의 사용 종료 재산을 총괄청에서 인수	정부내자산수증
...

표 1-2 | 기타증감 물품

기타증감사유	사유세부사항	상대계정과목
취득/금융리스물품	금융리스물품은 취득가액을 후급(분할)하여 지급	금융리스부채
취득/부생	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잡이익
취득/양여취소	양여후 소유권이전 후 양여취소	정부외자산수증
취득/국유재산편입	국유재산에서 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잡이익
취득/재고자산 편입	재고자산에서 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재화판매원가
...

(3) 기타증감메뉴 사용시 주의사항

기타증감 업무처리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타증감 메뉴 중 ‘기타(증)’ 또는 ‘기타(감)’을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이다. 해당 메뉴는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하기 때문에 정보관리항목의 입력이 거의 없어 해당 메뉴로 자산의 가액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경우 추후에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아래와 같이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정과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 기타증감의 기타(증),기타(감) 사유선택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기타(증)	자 산	xxx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기타증감기타(감)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자 산	xx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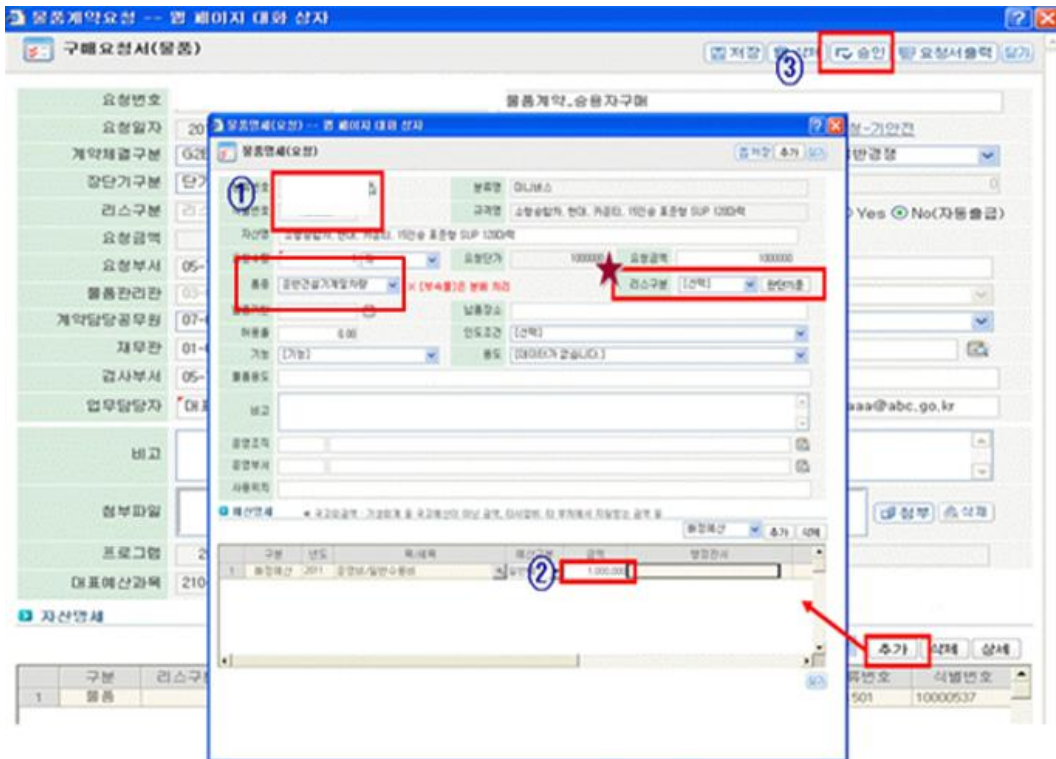
2 구매요청서 작성 시 물품명세 선택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 회의실에 회의용 탁자(70만원)를 설치하기 위하여 물품을 구매하려고 한다. 조달(계약) 메뉴를 통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하던 김국유 주무관은 자산명세의 품종 선택 시 '사무용집기' 를 선택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소모성물품비' 로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물품의 취득을 위하여 조달(계약) 메뉴에서 구매요청(물품)을 선택하여 요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취득하는 물품의 명세를 입력하게 되어있다. 아래 <그림 1-4>와 같이 물품의 명세 입력을 통하여 해당 물품의 대장 등재여부와 품종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1-4 | 물품명세(요청)



물품명세 선택에 따라 자산과 비용으로 구분되며, 해당 자산의 대장 품종을 결정하게 되는데 물품명세의 구분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 물품명세의 구분

계약종류	물품명세	
	자산(자산대장등재)	비용
구매요청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성기계장치 • 전기통신기기 • 사무용기기 • 사무용집기 • 운반건설기계및차량 • 기타공용자산 • 외부소프트웨어 • [부속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장X] 소모성물품비 • [대장X] 사무용품비 • [대장X] 홍보물품비 • [대장X] 간행물비 • [대장X] 의료용품 • [대장X] 치안유지자산(자산) • [대장X] 정부미술품/미화물품(자산) • [대장X] 피복 • [대장X] 기타

(2) 오류에 따른 영향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 회의실 탁자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용집기'를 선택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했으나, 소모성물품비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물품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소모성물품비로 비용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잘못된 업무 처리(소모성물품비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소모성물품비	700,000	현 금	700,000

○ 올바른 업무 처리(사무용집기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사무용집기	700,000	현 금	700,000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위 사례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부 부처에서는 '기타증감_기타(증)'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등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타증감_기타(증)'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등재하는 것은 오류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추가로 생성되어 또 다른 오류를 발생 시키게 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_기타(증)	사무용집기	7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700,000

위의 회계처리와 같이 기타증감_기타(증)으로 자산을 대장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지출 시 인식되었던 비용의 과대계상 효과는 사라지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는 수익 계정과목이 생성되어 수익 역시 과대 계상된다. 따라서 해당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담당자가 구매요청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외에 취득 물품의 가액에 더해져야 할 부속물이 있는 경우(ex. 차량을 구입하면서 해당 차량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에어컨)에는 부속물을 선택하여 구매요청을 해야 하는데 해당 부속물은 차량의 물품대장 등재 시점인 검수시점에 분배를 통하여 자산 가액에 더해지게 된다.

구매요청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은 물품명세를 입력할 때의 선택에 따라 자산과 비용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담당자는 물품명세의 품종을 선택할 때 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하는 물품의 취득일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명세를 정확히 선택해서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TIP>



<물품 계정과목 변경>

- 검수 승인 이전 : 검수서에서 품종을 수정해서 진행한다.
- 검수 승인 완료 : 조달(계약) > 검수 > 물품계약(물품/국유)명세변경 > 명세변경서등록 메뉴에서 변경한다. 변경요청서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자산명세(변경후)에서 자산구분을 물품으로 선택한 후 품종을 변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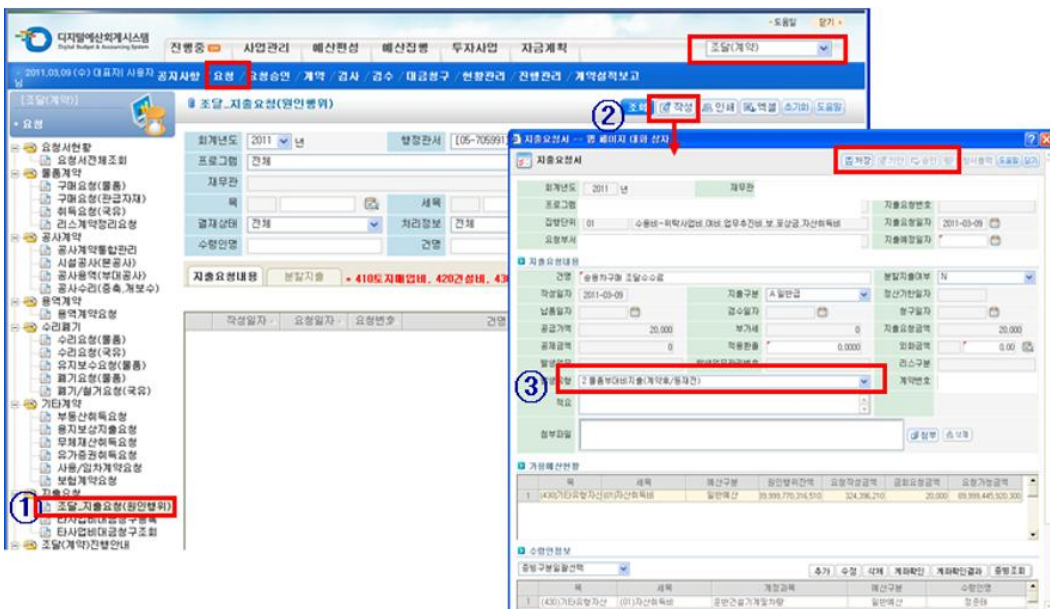
3 부대비(조달수수료 등) 미배부 오류

물품관리관인 이조달 주무관은 조달청에서 구입한 컴퓨터(구입가격 : 100만원)를 검사·검수절차를 거쳐 자산대장에 등재하였다. 해당 자산에는 조달수수료 5만원이 부대비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조달 주무관은 해당 부대비를 배부하는 것을 잊고 배부하지 않았다.

(1) 오류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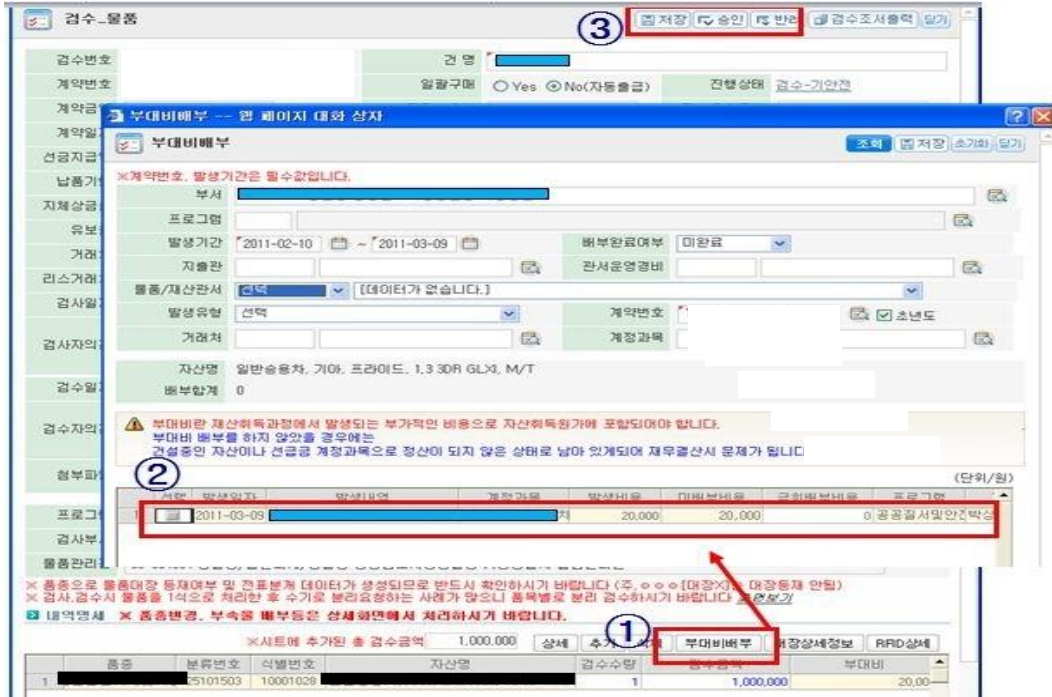
지출요청서 작성 시 발생유형 선택을 통하여 부대비로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부대비는 지출이 완료되는 시점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부대비와 관련된 자산의 검수시점(대장 등재시점)에 해당 부대비를 조회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배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5 | 조달화면에서 지출요청 메뉴



검수시점의 부대비의 배부는 <그림 1-6>와 같이 검수화면에서 이루어지며, 관련된 부대비를 조회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림 1-6 ■ 검수_물품(부대비 배부)



검수화면에서 부대비 배부를 선택하면 배부 가능한 부대비 목록이 조회되고, 이 중에서 검수 대상 자산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부대비 지출액을 선택하면 본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게 된다.

부대비의 설정은 시점에 따라 <표 1-4>와 같이 구분이 된다.

표 1-4 ■ 부대비 설정 연계정보

발생유형	연계정보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계약번호
2. 물품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	계약번호, 검수번호, 대장번호
4. 물품 부대비 지출(등재 후)	
5. 계약 전 부대비 지출	공사계약통합번호

계약번호 및 검수번호로 정보를 연계시킨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연계정보로, 계약 전 부대비 지출과 같이 연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계약통합번호를 입력하거나 건명을 검색하여 부대비를 배부하여야 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이조달 주무관은 컴퓨터에 관하여 부대비 배부 처리를 하지 않고 검수업무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관련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조달수수료 5만원이 그대로 재정상태표에 남아 있게 된다.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부대비 배부	사무용기기	50,000	건설중인자산	50,000
부대비 미배부	<회계처리 없음>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은 경우의 재정상태표	
사무용기기	100만
건설중인자산	5만
⋮	

부대비를 배부한 경우의 재정상태표	
사무용기기	105만
⋮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위 사례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정상태표에 '건설중인자산' 가액이 남아있게 된다. 부대비의 배부는 검수 시점에 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경우와 검수 시점 이후에 부대비를 설정하는 경우(대장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검수번호 또는 계약번호로 부대비 정보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검수 시점 이후에 부대비를 배부 할 수 있다.

그림 1-7 | 기타증감처리(부대비 배부)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form for '기타증감처리' (Other Increase/Decrease). The form has several input fields and dropdown menus. The '건명' (Name) field is set to '부대비배부'. The '사유' (Reason) dropdown is set to '증가' (Increase), and the '변동/부대비배부(지출연동)' dropdown is also set to '증가'. The '처리일자' (Processing Date) field is empty. Below the form is a table with columns for '증감사유' (Increase/Decrease Reason), '자산번호' (Asset Number), '품명' (Item Name), '규격' (Specification), '증감수량' (Increase/Decrease Quantity), '증감금액' (Increase/Decrease Amount), '단위' (Unit), and '분류번호' (Classification Number). The '부대비배부' option is highlighted in the table header.

검수 시점 이후의 부대비 배부는 <그림 1-7>와 같이 기타증감처리의 증가 사유 중 '부대비배부(지출연동O)'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기타증감처리 사유 중 지출과 연계되어 있는 '부대비배부(지출연동 O)'를 선택을 하여야 계상된 '건설중인자산'이 상계되는 처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타증감처리 사유 중 '기타(증)'을 선택하면 해당 자산의 대장가액과 재정상태표 금액은 올바르게 증가하게 되나, 이미 계상되어 있는 '건설중인자산'이 상계되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 잘못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경우('기타증감_기타(증)'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사무용기기	5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50,000

- 올바른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경우('기타증감_부대비배부'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사무용기기	50,000	건설중인자산	50,000

또한, 기타증감처리 메뉴를 이용하지 않고, 결산조정시점에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하여 해당 건설중인자산을 상계하고 자산을 계상하는 '자산 / 건설중인자산'의 회계전표를 생성시키게 되면, 재정상태표 상 오류는 사라지지만 물품대장에는 반영되지 않아 물품대장과 재정상태표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한 수정은 지양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검수 업무를 수행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해당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 존재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부대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대비 배부(지출연동O)' 사유를 통하여 해당 부대비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일 검수시점에서 부대비를 배부하는 절차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기타 증감_부대비배부(지출연동O)' 메뉴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동일유형 오류사례

- OO청은 수정전시산표 상 이미 취득이 완료된 자산에 대해 건설중인고정성
기계장치 21백만원, 건설중인사무용기기 2.4백만원, 건설중인이동성기계장치
4.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다.

지출요청서 작성 시 부대비로 발생유형이 선택된 지출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완료시점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관리되어 본자산이 대장에 등재될 때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된다.

OO청은 부대비로 설정된 지출을 검수 시점에 파악하지 못하고 부대비 배부
업무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수정전시산표 상 이미 취득이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건설중인자산' 금액이 계상되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타증감_부대비배부(지출연동O)' 메뉴를
통하여 부대비로 설정된 지출내역을 조회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해주어야
한다.

- 올바른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경우('기타증감_부대비배부(지출연동O)'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고정성기계장치	21,000,000	건설중인고정성기계장치	21,000,000
사무용기기	2,400,000	건설중인사무용기기	2,400,000
이동성기계장치	4,600,000	건설중인이동성기계장치	4,600,000

제2장

국유재산의 취득

- ◆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및 무체재산권 등으로 구분된다.
- ◆ 국유재산의 취득은 dBrain 상 성격에 따라 물품계약, 공사계약, 용역계약, 기타계약으로 구분된다.
- ◆ 취득 업무를 통하여 소유하게 되는 국유재산은 자산의 품종선택에 따라 유형자산의 형태가 구분되며, 국유재산의 구분과 각각 그에 해당되는 재무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국가회계기준	
	중분류	회계과목(관리과목)
토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토지
건물		건물
공작물		구축물
기계기구		고정성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선박및항공기
입목축 (해당없음)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
유가증권	투자자산	건설중인자산 장·단기 투자증권 (채무증권지분증권기타투자증권)
무체재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등

- ◆ 본 장에서는 국유재산의 취득을 조달(계약) 메뉴를 통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와 계약종류 선택, 본공사와 부대공사의 구분, 선금지급,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등에 따른 오류사례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1. 계약 종류의 선택 오류	...	134
2. 용역명세 선택 오류	...	143
3. 부대공사 업무처리 오류	...	147
4. 부대공사 및 부대비 미정산	...	151
5. 검사 미정산	...	156
6. 자산대체서 승인 누락	...	158
7. 선금지급액 미청산	...	171
8. 공사계약의 증축 및 개보수 선택 오류	...	176
9. 자본형성적 경비에 의한 취득 업무처리 오류	...	181
10. 유동성 대체 오류	...	186
11. 자산 대응 프로그램 누락 오류	...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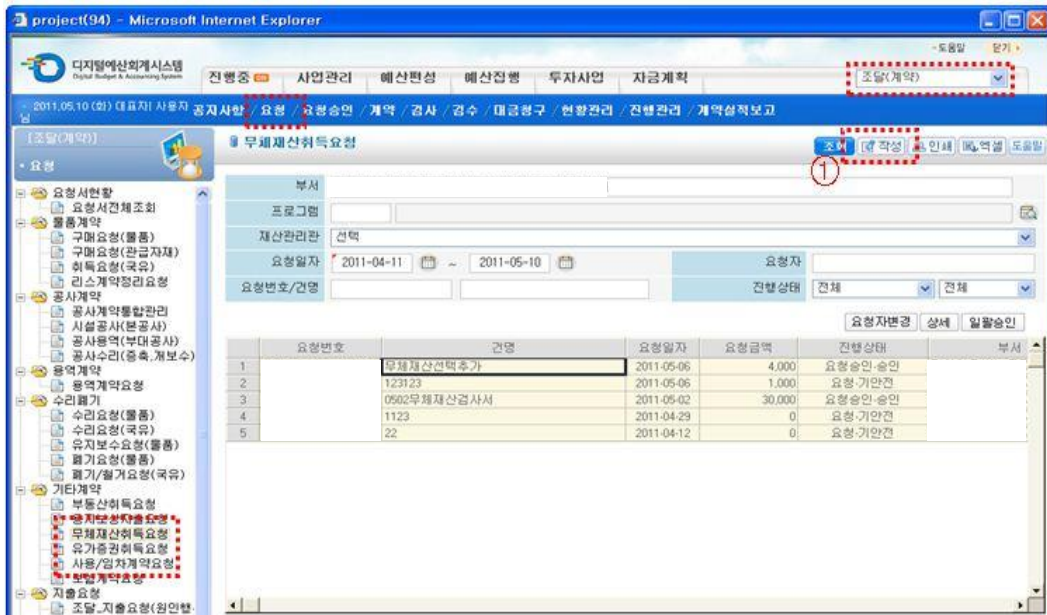
1 계약 종류의 선택 오류

사업담당자로 김국유 주무관은 관사를 1년간 사용하는 3천만원에 대한 임차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김국유 주무관은 전세권 설정을 마치고 '무체재산취득요청' 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사용/임차계약요청' 에서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전세권이 설정되는 임차보증금은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대장 등 무체재산에 등재된다.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dBrain 메뉴 중 '무체재산 취득요청'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2-1 | 무체재산 취득요청



dBrain 시스템은 각 업무과정에 따라 회계처리가 연계되어 생성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약 종류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계정과목이 상이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각 업무에 맞는 계약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국유재산으로서 재무계정과목은 '임차보증금_국유'로 관리되고,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은 국유재산이 아니므로 '임차보증금_채권'으로 관리된다.

표 2-1 | 전세권 설정에 따른 임차보증금 구분

구분	계정과목명	업무절차 구분
전세권 설정	임차보증금_국유	조달>요청>기타계약>무체재산취득요청
전세권 미설정	임차보증금_채권	조달>요청>기타계약>사용/임차계약요청

(2) 오류에 따른 영향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_국유'로 계정과목이 분류되며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체재산취득요청'이 아닌 임차계약요청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으로 등재가 되지 않고 재정상태표에도 '임차보증금_국유'가 아닌 '임차보증금_채권'으로 인식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위 사례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부 부처에서는 '기타증감의 기타(증)'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등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타증감'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등재하는 것은 오류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추가로 생성되어 또 다른 오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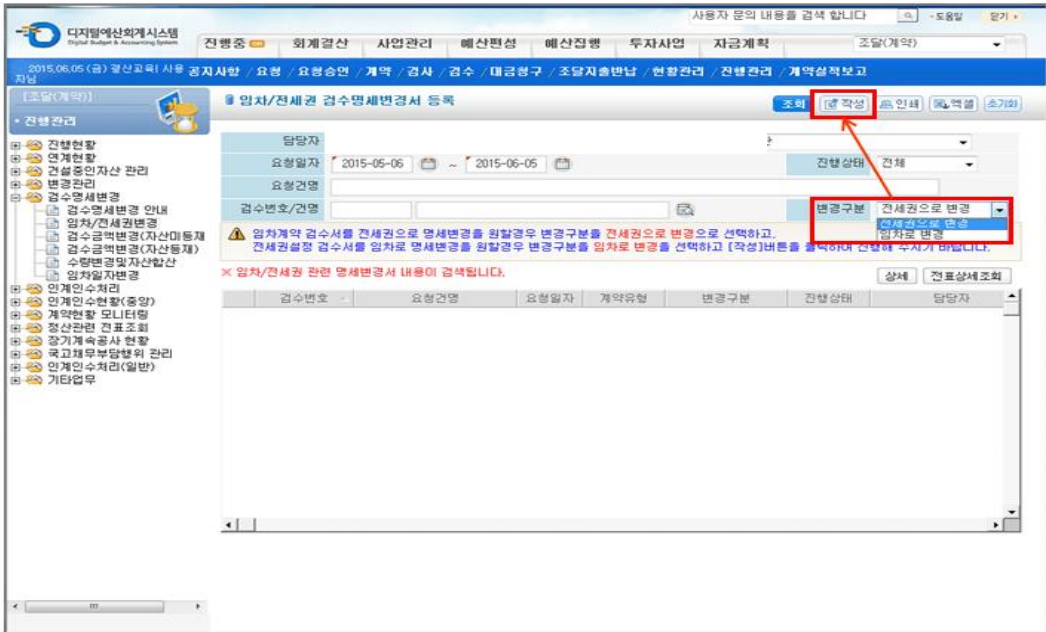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기타증감_기타(증)	임차보증금_국유	30,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000

위의 회계처리와 같이 기타증감_기타(증)으로 자산을 대장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지출 시 인식되었던 '임차보증금_채권'이라는 자산의 과대계상 효과는 사라지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이익'라는 수익 계정과목이 생성되어 수익 역시 과대 계상된다.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계약 종류의 선택을 잘못 적용한 경우 [조달>진행관리>검수명세변경>임차/전세권 변경] 메뉴를 통해 올바른 계정과목과 연계되도록 수정할 수 있다. 해당 메뉴를 통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국유'로 등재된 경우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수정해 주어야 하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채권'으로 등재된 경우 '임차보증금-국유'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다만, '임차보증금-채권'을 '임차보증금-국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채권'이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 소멸절차[채권>채권마감>마감자료조정>월별채권현황>대출(기타)채권소멸처리]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어야 한다.

그림 2-2 | 검수명세변경>임차/전세권변경(전세권으로 변경)



국유재산 취득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의 취득 성격에 맞는 계약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국유재산 중 무체재산권으로 '무체재산취득요청' 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지만, '사용/임차계약요청' 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이 대장에 누락된 것이다.

검수명세(전세권) 변경요청서

변경요청서 정보

재산관리관
 부서

검수번호 *동보기버튼을 눌러 검수서를 조회해주세요.
 요청연번
 요청일자
 검수일자
 변경사유

내역명세 *해당내역명세를 선택하.

자산명	검수수량

상세

검수명세(전세권) 변경요청서

변경요청서 정보

재산관리관
 부서

검수번호
 요청연번 2
 요청일자 2016-08-03
 검수일자 2016-08-03
 변경사유

내역명세 *해당내역명세를 선택

상세

자산명	검수수량	검수금액	변경전		변경후	
			구분	계정과목	구분	계정과목
1 임차명세	1	50,000,000	임차	장기임차보증금-채권	무체자산	장기임차보증금-국유

(4) 계약 종류의 선택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임차보증금 관련 자산 과대 계상 및 계정분류 오류(2011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임차보증금-국유'와 '장기임차보증금-국유'에 계상된 12억2,911만원을 '임차보증금-채권'과 '장기임차보증금-채권' 등에 이중으로 계상하여 기타유동자산(유동자산)이 5억 3,585만원,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기타비유동자산)이 6억 9,326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또한 전세권이 설정되어 국유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임차보증금-국유' 6,150만원과 '장기임차보증금-국유' 5억 4,504만원을 '임차보증금-채권'과 '장기임차보증금-채권'으로 같은 금액만큼씩 잘못 계상하였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454p 중>

- 임차보증금 회수 및 지급시 회계처리 오류(2016회계연도)

OO청 일반회계에서 임차보증금 지급 및 회수시 상대계정을 관련 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이익차감 및 정부외자산수증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조달)이 7억 3,480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1011p 중>

- 임차보증금 계상 누락 오류(2017회계연도)

OO부에서 숙소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지출 시에는 비용으로, 회수 시에는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잡이익(비배분수익)과 업무대행수수료가 각각 1억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자산 보증금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지 아니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7억 1,000만 원 과소 계상되었으며, 장기지급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628p 중>

참고**국유재산 취득 관련 계약종류 별 처리구분****(1) 계약의 종류**

dBrain 시스템 상 국유재산 취득관련 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2-2 | 국유재산 취득 관련 주요 계약 종류

계약 종류		적 요
물품계약	구매요청(관급자재)	관급자재 구매 시 사용
	취득요청(국유)	국유재산(기계기구, 공작물, 선박항공기) 취득 시 사용
	구매요청(물품)	물품 구입 시 사용
공사계약	시설공사(본공사)	국유재산의 신축
	공사용역(부대공사)	본공사에 포함되나 계약을 별도로 하는 공사
	공사수리(증축/개보수)	국유재산의 증축 및 개보수공사
용역계약	용역계약요청	용역계약 시 사용
기타계약	부동산 취득요청	국유재산인 부동산 매입
	용지보상 지출요청	용지 강제수용 후 보상비 지급
	무체재산 취득요청	국유재산인 무형자산 취득
	유가증권 취득요청	주식, 기타수익증권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 취득
	사용/임차계약요청	임차, 렌트 계약 등 국유재산과 관련 없는 건
	보험계약 요청	

각 계약종류 별로 나타나는 계정과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담당자는 요청서 작성 시 각 적요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예를 들면, 같은 공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시설공사와 공사용역 및 공사수리를 구분하게 되어 있으며, 각각의 업무에 따라 나타나는 계정과목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사업담당자가 요청서 작성 시 올바른 메뉴를 선택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업무처리는 문제없이 이루어 질 수 있겠지만, 재무결산 상 잘못된 계정과목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물품계약

dBrain 시스템의 물품계약 메뉴는 관급자재, 관급자재 외 국유재산 및 물품 구입 시 사용하는 메뉴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표 2-3 | 물품계약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선택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구매요청(관급자재)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또는 물품편입
취득요청(국유)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기계기구 공작물 선박·항공기	[국유재산대장] · 기계기구, 공작물, 선박·항공기
	[대장X]소모성물품비 [대장X]사무용품비 [대장X]홍보물품비 [대장X]간행물비 [대장X]의료용품 [대장X]치안유지자산(자산) [대장X]장부·숯품·회물품(자산) [대장X]피복 [대장X]기타	[비용] 품종의 선택에 따라 구분
구매요청(물품)	이동성기계장치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기타공용자산 외부소프트웨어 [부속물]	[자산] 품종의 선택에 따라 구분, 물품 대장에 등재됨 [부속물] 검수시 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부속물 대장에 등재됨 [리스자산구분]금융리스/운용리스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반드시 리스자산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함

구매요청을 통하여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품계약의 하위 메뉴인 구매요청(관급자재)와 취득요청(국유)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구매요청(관급자재)와 취득요청(국유)의 구분 이유는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관련 공사가 마무리 되어 본 자산으로 등재되는 시점에 해당 관급자재 구매금액을 본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매요청(관급자재) 메뉴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되고, 취득요청(국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선택에 따라 검수시점에 국유재산대장에 해당 자산으로 등재 된다.

(3) 공사계약

공사계약 메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표 2-4 | 공사계약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선택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시설공사 (본공사)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국유재산대장]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공사용역 (부대공사)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공사수리 (증축/개보수)	증축	[국유재산대장] 자본적지출(대장금액 증가)
	개보수	[비용] 수익적지출 처리

<표 2-4>에서 볼 수 있듯이 공사계약은 시설공사, 공사용역 및 공사수리로 나뉘며, 시설공사는 본공사로서 선택한 자산 명세의 대장에 등재되지만 공사용역은 부대공사로서 건설중인자산으로 관리되다가 공사 완료시점에 본공사 자산가액에 배부된다⁷⁾. 공사수리는 증축과 개보수로 구분되며 각각 자산대장금액을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과 비용으로 처리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⁸⁾

7) '2장 3. 부대공사 업무처리 오류'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8) 증축 및 개보수의 구분은 '2장 8. 공사계약의 증축 및 개보수 선택 오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4) 용역계약

용역계약 요청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표 2-5 | 용역계약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선택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용역계약요청	무체재산, 선박·항공기	[국유재산대장] 무체재산, 선박·항공기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용역계약요청은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국유재산(무체재산 및 선박항공기), 물품, 비용 및 건설중인자산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업무담당자가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아 명세를 잘못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잘못된 계정과목이 나타나게 된다.

(5) 기타계약

기타계약은 다음 <표 2-6>과 같이 구분된다.

표 2-6 | 기타계약 구분

계약 종류	자산, 비용 선택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부동산 취득요청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국유재산대장]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용지보상 지출요청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토지	[국유재산대장] 토지
무체재산 취득요청	광업권, 전화가입권, 전세권 [임차보증금] 등	[국유재산대장] 광업권, 전화가입권, 전세권 등
유가증권 취득요청	주식, 기타수익증권 국채/공채/지방채/회사채	[국유재산대장] 주식, 국채, 공채 등
사용/임차 계약요청	임차(임차료), 렌트 계약 등 국유재산/물품과 관련이 없는 계약 건	비용 또는 자산처리
보험계약요청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기타계약의 구분 시 유의할 점은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을 취득하는 계약의 경우 '사용/임차계약요청'이 아닌 '무체재산 취득요청'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권 등 국유재산의 취득은 '무체재산 취득요청'에서 처리하고 국유재산이 아닌 임차 계약 등은 '사용/임차계약요청'에서 처리하게 된다.

2 용역명세 선택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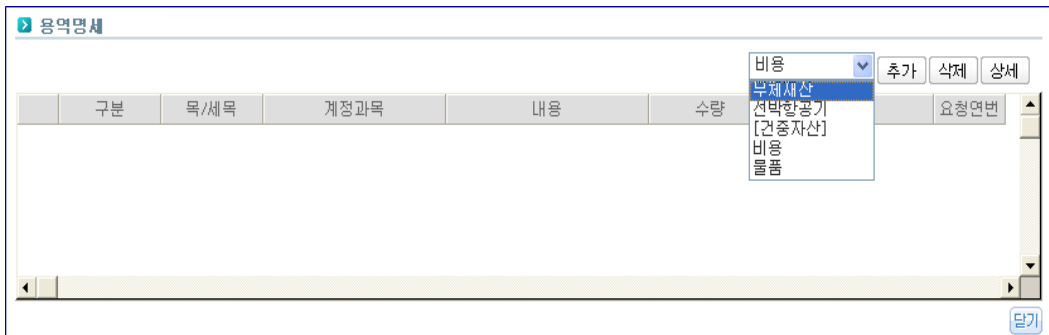
사업담당자로 김국유 주무관은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계약요청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김국유 주무관은 용역계약요청서의 명세 선택시 '무체재산' 이 아닌 '비용' 을 선택하고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사업담당자는 용역계약요청서* 작성 시 '용역명세'에서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국유재산(무체재산 및 선박항공기), 건설중인자산, 비용, 물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된 용역비는 무체재산으로 등재해야 하나, 무체재산이 아닌 비용을 선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조달(계약)>요청>용역계약>용역계약요청

그림 2-3 | 용역계약요청



(2) 오류에 따른 영향

김국유 주무관이 무체재산 취득 시 용역계약요청서 명세에서 '무체재산'이 아닌 '비용'을 선택하게 된다면 국유재산대장에 무체재산이 누락되고, 재정상태표에도 무형자산이 과소 계상된 금액으로 기재되게 된다. 또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가 내용연수동안 인식되지 않음에 따라 내용연수 기간 동안 재정운영표도 왜곡된 금액으로 나타나게 된다.

○ '비용' 선택 시 회계처리

연도	차변	금 액	대 변	금 액
20X1	연구개발비	1,000,000	현금	1,000,000

○ '무체재산' 선택 시 회계처리(내용연수 5년)

연도	차변	금 액	대 변	금 액
20X1	무형자산	1,000,000	현금	1,000,000
	무형자산감가상각비	200,000	무형자산	200,000
20X2	무형자산감가상각비	200,000	무형자산	200,000
20X3	무형자산감가상각비	200,000	무형자산	200,000
20X4	무형자산감가상각비	200,000	무형자산	200,000
20X5	무형자산감가상각비	200,000	무형자산	2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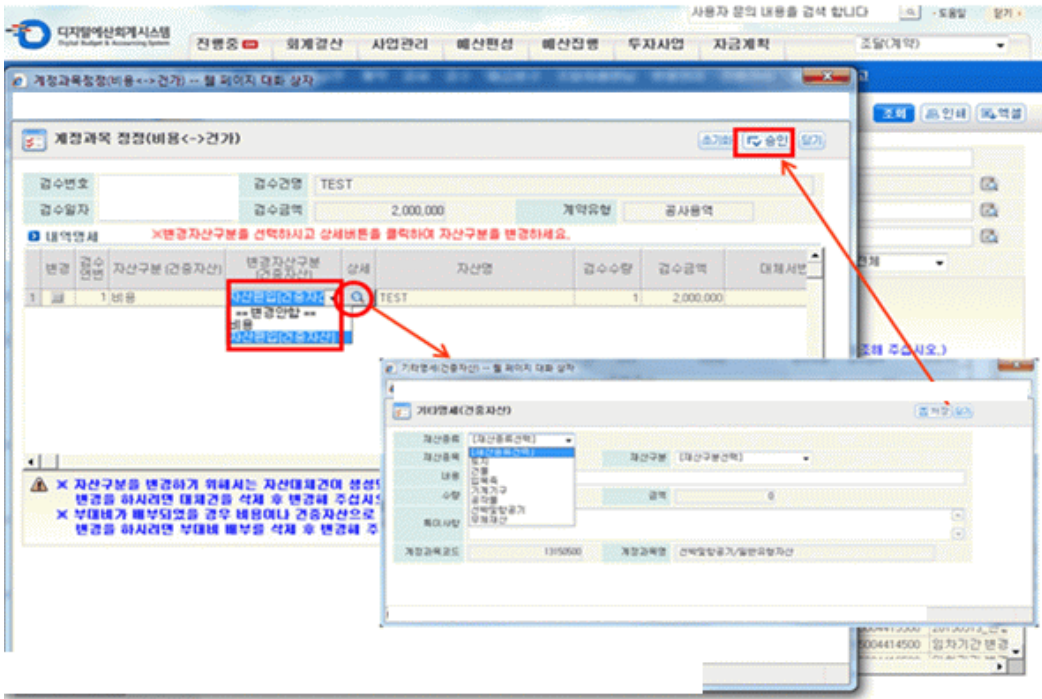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내부개발소프트웨어가 비용처리 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기능을 통해 선급금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직접 **건중자산대체서**를 생성하여 자산등재 할 수 있다.

계정과목 정정: 업무담당자는 **계정과목 정정(비용<->건가)*** 메뉴에서 변경할 건을 조회한 후 [상세]메뉴를 활용하여 자산종류를 '무체재산'으로 선택하면 계정과목이 '선급금'으로 수정된다.

* 조달(계약)>검사>검사등록>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그림 2-4 | 계정과목 정정(비용<->건가)



건중자산대체서* 생성: 업무담당자는 건명과 검수일자, 검수자를 선택한 뒤 건설중인자산 내역의 '추가' 버튼을 이용해 건설중인자산을 추가한다. '자산명세' 부분에서 '관서, 자산구분'을 선택한 뒤 '승인'버튼을 누르면 '무체재산'으로 자산 등재된다.

* 조달(계약)>검수>검수등록>건중자산대체서 생성

<TIP>

<취득(부동산, 무체재산)계약을 통해 자산등재된 경우>



- 해당 건이 자산대체서를 통하지 않고 바로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된 경우 (토지, 전세권)에는 업무담당자가 [조달/진행관리/검수명세변경/수량변경 및자산합산] 메뉴를 통해 자산구분을 [건중자산]으로 변경하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림 2-5 | 건중자산대체서 생성

건중증언자산 내역

선택	검수번호	연번	검수명	자산명	검사금액	미정산금액	금회정산금액(A)	검사일자
1	1	1	용역건중	기타잡공작물	100,000	0	100,000	2015-01-28

자산영세

물품/재산관리: 재산관리관
 자산구분: 공작물
 자산명: 기타잡공작물
 취득금액(A+B): 100,000
 정산금액(A): 100,000
 정산: 부대비(B)

부대비

발생일자	발생연번	발생내역	발생비용	대비용	금회정산금액(B)	거려치
------	------	------	------	-----	-----------	-----

(4) 용역명세 선택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소프트웨어 취득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2017회계연도)

○○부 특별회계에서 내부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연구개발비로 처리하여 내부개발소프트웨어(무형자산)와 무형자산상각비(관리운영비)가 각각 10억 6,333만 원, 3,667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연구개발용역비(관리운영비)가 11억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 328p 중>

3 부대공사 업무처리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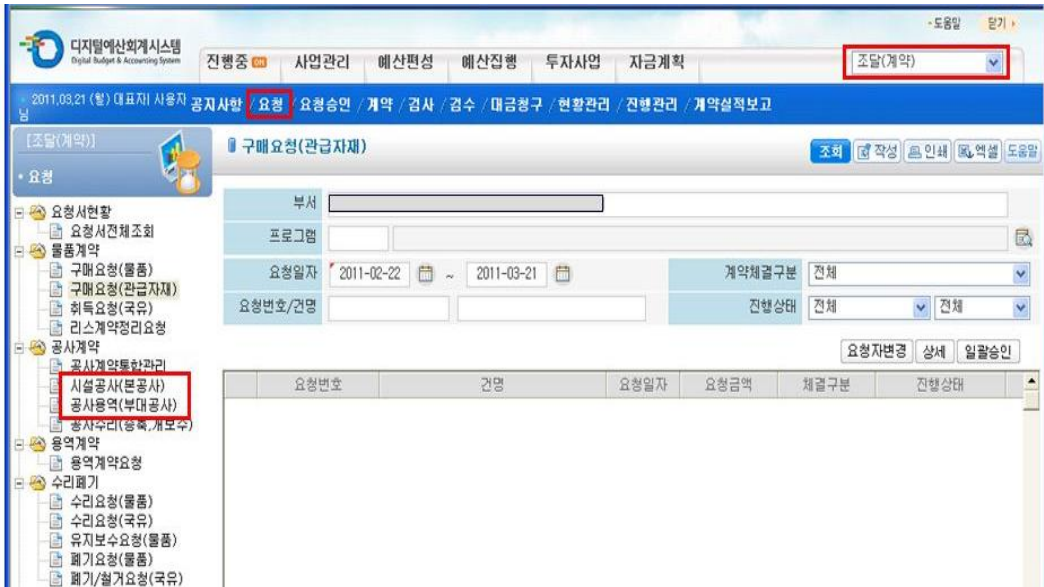
사업담당자로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 안전건설과 1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또한 청사의 소방·전기·통신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김국유 주무관은 소방 등 시설의 설치가 청사의 신축과 관련된 부대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용역(부대공사)' 메뉴를 선택하여 요청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공사(본공사)' 메뉴를 선택하여 요청서를 작성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부대공사는 본공사의 수행에 따라 부속적으로 수행되는 공사로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건설공사가 본공사라면 전기, 통신, 냉·난방, 소방 및 방범설비 등 청사건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공사는 부대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공사를 위해 집행되는 금액은 본공사인 건물 건설공사에 집행된 금액과 함께 본자산인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만일 사업담당자가 부대공사를 선택하지 않고 본공사로 업무를 수행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2-6 ■ 공사계약(본공사와 부대공사)



즉, <그림 2-6>의 화면에서 전기공사 등 부대공사를 위한 업무처리를 ‘공사용역(부대공사)’이 아닌 ‘시설공사(본공사)’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국유재산 등재 시점에 건물의 취득가액에 전기공사 등 부대공사의 공사금액이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별도의 국유재산으로 등재가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김국유 주무관은 소방·전기·통신시설의 부대공사를 ‘시설공사(본공사)’ 메뉴를 통하여 요청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부대공사 금액이 본공사 금액과 합쳐져서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고, 두 개의 개별 재산으로 대장에 등재가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당초 세워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어긋나 국유재산관리상 오류일 뿐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한 원가의 배분과정에서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소방, 전기 등 시설이 건물과 별도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액 등을 가지게 되어 감가상각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그림 2-7 | 공사용역요청서 작성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form for creating a construction service request. The form is titled '공사용역요청서' and includes several sections:

- Header:** '공사용역요청서' and '공시계약동행합의' (Consent to Proceed with Public Contract).
- Form Fields:**
 - 요청번호 (Request No.): []
 - 요청일자 (Request Date): 2011-03-21
 - 계약체결구분 (Contract Conclusion Type): dBrain(서면계약)
 - 장단기구분 (Short/Long Term): 단기선규
 - 공사관련번호 (Construction Related No.): []
 - 출사업비관련번호 (Outstanding Cost Related No.): []
 - 건명 (Project Name): 신축건기공사.테스트
 - 업무구분 (Business Type): []
 - 조달유형 (Procurement Type): 자재
 - 초년도계약번호 (First Year Contract No.): []
 - 요청금액 (Request Amount): 0
 - 계속비사업여부 (Continuation of Business): Yes No
 - 진행상태 (Progress Status): []
 - 계약방법 (Contract Method): 일반경쟁
 - 충부기금액 (Surplus/Deficit Amount): 0
- Table:** A table with columns: '공사계약동행번호' (Public Contract Proceeding No.), '공사계약동행명' (Public Contract Proceeding Name), '공사예정금액' (Estimated Construction Amount), '책임자' (Responsible Person), '작성일자' (Creation Date), and '공사시작' (Construction Start). Below the table, there are buttons for '자산편입(건물)' (Asset Inclusion (Building)), '추가' (Add), '삭제' (Delete), and '상세' (Details). A red box highlights the '자산편입(건물)' button.
- Footer:** '요청부서' (Requesting Dept.), '계약담당공무원' (Contract Officer), '재무관' (Finance Officer), '검사부서' (Inspection Dept.), '업무담당자' (Business Officer): 대표자, '전화번호' (Phone No.): 055-000-0000, '이메일' (Email): []@go.kr

사업담당자는 공사계약 관련 요청서 작성 시 해당 공사의 성격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본공사와 부대공사를 구분하여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부대공사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본공사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림 2-7>의 공사용역요청서 작성 화면에서 '자산편입(건물자산)'을 선택하여야 한다.

부대공사에서 선택하는 자산명세의 항목은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 부대공사 자산명세 항목

계약 종류	자산, 비용 선택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공사용역 (부대공사)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자산편입(건중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부대공사로서 본공사의 취득가액에 합산되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 편입(건중자산)’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대공사이기는 하지만 CCTV와 같이 물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자산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부대공사는 본공사의 수행에 따라 부속적으로 수행되는 공사로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건설공사가 본공사라면 전기, 통신, 냉·난방, 소방 및 방범 설비 등 청사건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공사는 부대공사로 볼 수 있다. 부대공사를 위한 공사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본공사와 구분하여 ‘부대공사(공사용역)’ 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4 부대공사 및 부대비 미정산

재산관리관 주재산 주무관은 청사의 신축과 관련하여 10억원 건물건설과 관련된 계약에 대하여 검사와 검수를 수행하려고 한다. 주재산 주무관은 시설공사(본공사)의 검수업무를 진행하면서 부대비와 부대공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공사에 대해서만 검수업무를 수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사용역을 통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도 재산 대장에 등재되어야 할 금액은 단순한 건물의 계약금액 뿐 아니라 해당 건물에 부속되는 소방, 전기 등 시설공사와 같은 '부대공사'와 조달수수료, 감독여비 등 '부대비'의 금액도 모두 집계되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공사의 검수시점(대장 등재시점)에 부대공사와 부대비의 정산 절차를 거쳐야 정확한 자산가액을 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8 | 부대공사와 부대비에 따른 자산가액



부대공사 및 부대비로 처리한 지출에 대해서는 본 자산이 검수될 때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본 자산의 검수시점에 해당 부대공사와 부대비설정 내역을 정산처리를 통하여 자산가액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2-9 ■ 부대비와 부대공사의 정산

① 정산

자산종류	자산구분	자산명	수량(단위)	정산금액	부대비	취득가	
1	사무소	행정재산(공용)	행당동 사무소	50.00	700,000	0	700,000

그림 2-10 ■ 부대비 및 부대공사 배부(준공정산)

① 자산편입[건중자산]

② 배부내역

구분	검수명	검사일자	자산명	검사금액	미정산금액	금회정산금액	부대공사금액	부대공사미정산	부대공사정산	계정
1	정사신축공사_테스트	2011-03-21	행당동 사무소	700,000	0	700,000	0	0	700,000	0 130600
2	신축전기공사_테스트	2011-03-21	행당동 사무소 전기공사	0	0	0	300,000	300,000	300,000	130600
3	완급자재구매_테스트	2011-03-21	철근구매	0	0	0	500,000	500,000	500,000	130600

(2) 오류에 따른 영향

물품의 부대비 배부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취득을 위한 부대공사 및 부대비는 검사시점 및 지출완료 시점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관리된다. 사례에서 주재산 주무관은 본 자산의 검수시점에 부대공사 및 부대비를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이 재정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고 남게 될 뿐 아니라 자산의 가액도 해당 건설중인자산 금액만큼 과소계상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본공사 (청사신축)	준공검사	건설중인건물	10억	기타의미지급금	10억
	계좌이체	기타의미지급금	10억	현 금	10억
부대공사	준공검사	건설중인건물	1억	기타의미지급금	1억
	계좌이체	기타의미지급금	1억	현 금	1억
자산대체(검수)		건 물	11억	건설중인건물	10억
				건설중인건물	1억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검수시점에 부대공사로 지출하였던 1억원이 정산을 통하여 건물가액에 더해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대공사 1억원의 건설중인건물 금액이 자산으로 대체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면 재정상태표에 '건설중인자산' 가액이 남아있게 된다. 부대비의 배부는 검수 시점에 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경우와 검수 시점 이후에 부대비를 설정하는 경우(대장 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검수번호 또는 계약번호로 부대비 정보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검수 시점 이후에 부대비를 배부 할 수 있다.

그림 2-11 | 기타증감처리(부대비 배부)

검수 시점 이후의 부대비 배부는 <그림 2-11>와 같이 기타증감처리의 증가 사유 중 '부대비배부(지출연동O)'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기타증감처리 사유 중 지출과 연계되어 있는 '부대비배부(지출연동O)'를 선택을 하여야 계상된 '건설중인자산'이 상계되는 처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타증감처리 사유 중 '기타(증)'을 선택하면 해당 자산의 대장가액과 재정상태표 금액은 올바르게 증가하게 되나, 이미 계상되어 있는 '건설중인자산'이 상계되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부대공사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본 공사와 연계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검수시점에 본 공사의 검수일 경우에는 관련된 부대공사 또는 부대비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관련 부대공사 등의 연계가 수월하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dBrain 시스템은 '공사계약통합관리' 메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해당 메뉴를 통하여 부대공사 등이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부대공사 및 부대비 미정산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토지 등재시 관련 수수료 등의 토지 미대체 오류(2013회계연도)

OO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대학 이전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를 본계정으로 대체하면서, 동 토지와 관련한 이주단지조성비 및 관련 수수료를 토지로 함께 대체하지 않고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속 계상하여,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이 160억 8,991만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토지(일반유형자산)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307p 중>

5 검사 미정산

재산관리관 주재산 주무관은 청사신축(100억원)과 관련 하여 검사만 수행하고, 검수를 수행하지 않았다.

(1) 오류의 유형

청사 신축 등 국유재산 취득 시 검사시점에 '건설중인자산'을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발생하며, 검사를 수행한 자산에 대해 검수를 통하여 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해당 취득자산에 대하여 지출업무와 연계되기 때문에 누락하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검수업무는 대장에 등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검사를 수행하며 발생한 건설중인자산은 검수를 통해 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나, 검수를 누락한 후 '기타증감' 메뉴를 통해서 대장에 등재하는 경우 건설중인건물이 건물로 대체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검사 시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건설중인건물	10,000,000,000	현 금	10,000,000,000

○ 취득자산 검수 수행(올바른 업무처리)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건 물	10,000,000,000	건설중인건물	10,000,000,000

○ 취득자산 검사 미정산(검수 미수행) & 기타증감 처리(잘못된 업무처리)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건 물	10,000,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000

‘기타증감’ 메뉴를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대장 상 건물 금액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나, 재무결산 상 건설중인건물이 사라지지 않아 자산이 과대 계상되며,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인식되어 수익 역시 과대 계상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자산의 검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타증감으로 대장에 등재하여 건설중인 자산이 남는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기타증감 업무를 취소하고 검수업무를 재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건설중인자산에 대하여 전기 이전에 ‘결산조정전표 입력’ 등을 통하여 건설중인자산을 삭제한 경우에는 ‘검사발생/정산현황(조달 - 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검사발생/정산현황)’ 메뉴를 통해 검사미정산내역을 조회한 후 소멸정리요청서를 작성하여 재무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재무결산담당자가 ‘소멸정리요청서’ 메뉴⁹⁾를 통하여 관련 요청서의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승인]을 할 경우에 관련 미정산내역이 최종 정리된다.

그림 2-12 | 조달(계약)>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소멸정리요청서



9) 참고의 소멸정리요청서 참조

6 자산대체서 승인 누락

자산관리관 주재산 주무관은 건물취득(50억원)과 관련 하여 해당 건물의 자산 대체서를 승인하지 않았다.

(1) 오류의 유형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면 자산 등재(자산대체서 승인)를 통해 건설중인자산을 토지, 건물 등 본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하나, 자산대체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자산대체서를 승인하지 않게 되면 취득이 완료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중인자산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되며 자산 등재도 누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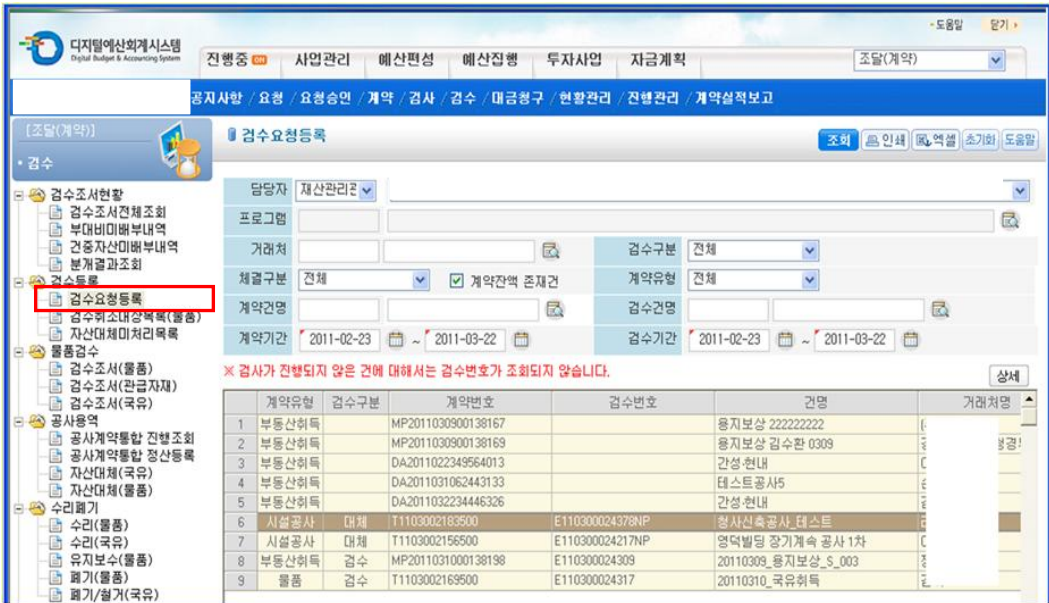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자산대체서 승인을 누락하여 자산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설중인자산은 조달(계약)메뉴(‘검수조서전체조회’ 또는 ‘검수요청등록’)에서 **미완료 대체서**를 조회한 후 ‘상세’버튼 클릭하여 대체서 **승인** 처리할 수 있다.

그림 2-13 | 조달(계약)>검수>검수조서현황>검수조서전체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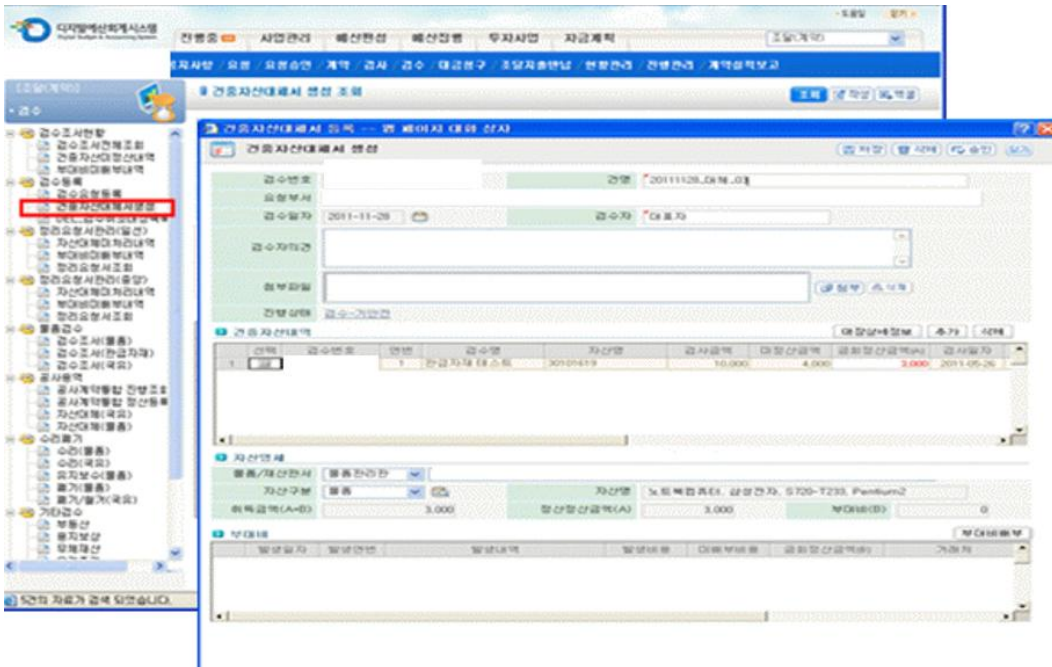
계약유형	검수구분	검수번호	건명	검수일자	검수금액	거래처명	건형상태
물품	검수		물품관리관	20110309	1,000,000		검수승인 T111
물품	검수		계약무 물기	20110309	0		검수승인 MP2
물품	검수		물품 물기	20110309	0		검수승인 MP2
물품	검수		차량과 차량용여객	20110309	1,500,000		검수승인 T111
물품	검수		일반수리	20110307	200		검수승인 T111
물품	검수		111	20110303	1,000		검수승인 T111
물품	검수		복사기 구매	20110225	10,000		검수승인 T111
물품	검수		리스 대금영구 액산 테스트	20110224	100,000		검수승인 T111
물품	검수		실급 검수환	20110217	2,000,000		검수승인 MP2

그림 2-14 | 조달(계약)>검수>검수등록>검수요청등록



미완료 대체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대체서가 생성되지 않은 건이므로, 건중자산대체서생성 메뉴에서 자산대체서를 생성한 후 대체서 승인을 통해 자산 등재할 수 있다.

그림 2-15 | 조달(계약)>검수>검수등록>건중자산대체서생성



(4) 자산대체서 승인 누락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건설중인건물 등 본계정 대체 누락 등(2016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취득이 완료된 건설중인자산 39건에 대해 본 회계연도 말까지 본계정으로 대체하지 아니하여 건설중인건물(일반유형자산)과 건설중인건축물(일반유형자산)이 각각 7억 7,031만원, 2,760만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건물(일반유형자산)과 건축물(일반유형자산)이 각각 3억 7,608만원, 3억 4,203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집기·비품·차량운반구(일반유형자산)가 7,980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취득이 완료된 건축물 2건을 대체하면서 건설중인건축물을 차감하지 않고 기타의기타순자산의증가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건설중인건축물(일반유형자산)이 8,085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기타순자산의증감(조정항목)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508p 중>

○ 건설중인건물 등 본계정 대체 누락(2017회계연도)

OO청 일반회계에서 취득이 완료된 건설중인건물에 대해 본계정으로 대체하지 아니하여 건물(일반유형자산)이 3억 6,608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건설중인건물(일반유형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과 건물감가상각비가 각각 61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707p 중>

참고

계약완료일자 알람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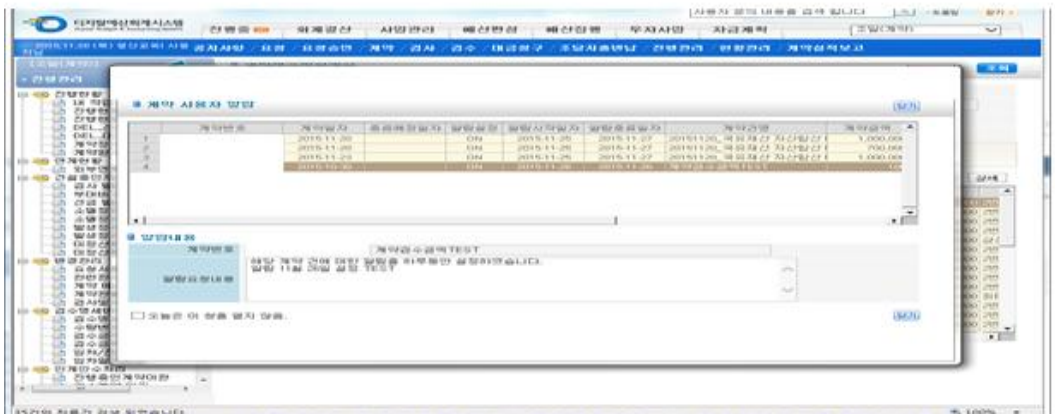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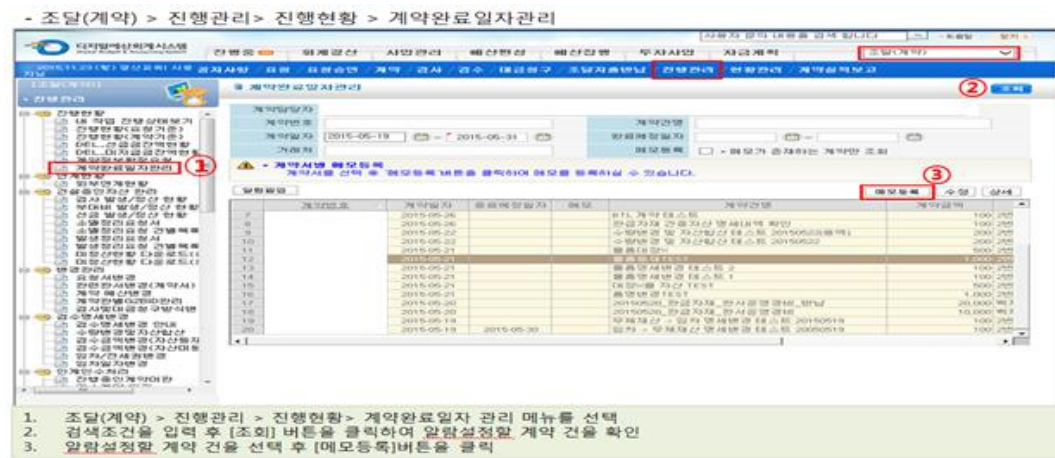
(1) 배경

dBrain 시스템은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검수가 누락되어 자산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완료일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였다.

(2) 계약완료일자 알람기능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계약)>진행관리>진행현황>계약완료일자관리] 메뉴에서 알람기능을 설정하면 설정된 시기에 팝업창을 통해 계약종료일을 알려주어 계약관리가 수월해지도록 하였다.

그림 2-16 | 계약완료일자 알람기능



(1) 배경

건설중인자산은 조달 등을 통해 발생하고, 검사나 선금청산, 부대비 배부 등의 업무를 통해 제거된다. 이때 재무장부에서도 동시에 회계처리되므로 원칙적으로 조달과 재무장부는 일치하게 된다. 다만 업무가 아닌 결산조정분개 입력으로 재무장부에서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하게 되면, 조달과 재무장부가 불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 내역에 대해서 일선관서에서 정산 또는 배부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조달의 내역을 회계처리 없이 삭제하는 기능이 필요하였다.

(2) 정리방법

업무담당자는 기성준공검사, 선금지출, 부대비지출에 의해 발생한 건설중인자산을 자산으로 등재할 수 없어 결산조정으로 처리하였거나 처리할 예정인 경우 소멸정리요청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서도 제거해 주어야 조달과 재무장부의 건설중인자산이 일치하게 된다.

dBrain시스템은 [조달(계약)>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소멸정리요청서] 메뉴를 신설하여 일선관서와 재정책임관이 하나의 메뉴에서 정리요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사미정산, 선금미정산, 부대비미배부 건에 대하여 정리요청서를 작성할 때 정리요청사유(예: 자산성없음, 당해연도 기등재, 이전연도 기등재 등)를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재무결산담당자도 사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7 | 정리요청 진행 화면



그림 2-18 | 소멸정리요청서 정리사유 등록

또한 조달메뉴에서 소멸정리요청서 작성 시 해당연도 재무결산이 마감된 경우 정리에요청일자를 해당연도로 입력 할 수 없던 것을 개선하여 재무결산이 마감된 후에도 원하는 정리에요청일자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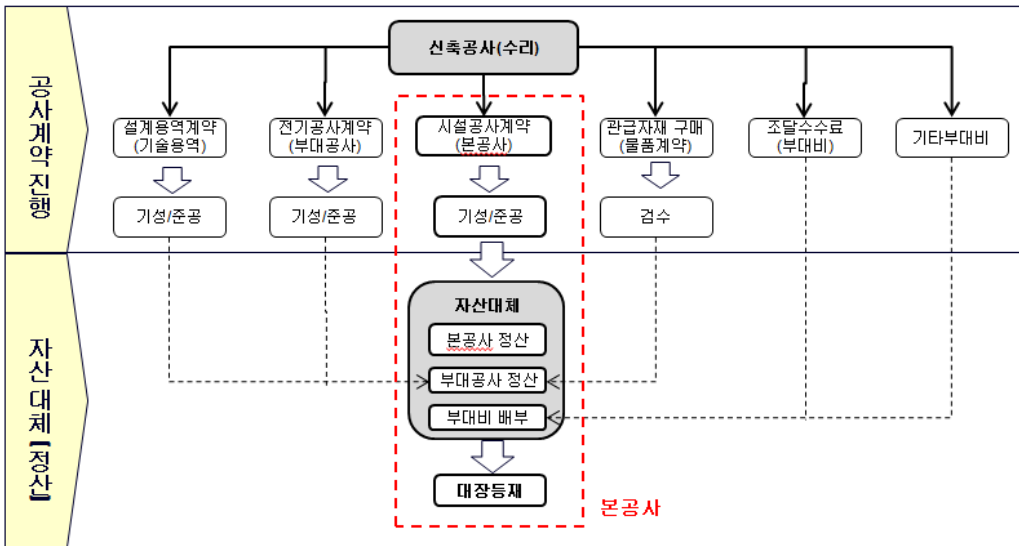
소멸정리요청 현황 및 진행상황은 [조달(계약)>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소멸정리요청 건별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배경

청사신축사업과 같이 ‘공사가 장기간(1년이상) 진행’되거나 ‘여러 개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 공사의 진행현황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공사 완료 후 공사비가 누락되는 등 자산취득가액이 올바르게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공사계약통합관리기능을 개설하여 공사계약통합번호를 통해 관련된 계약 전체의 진행현황이나 부대비 발생내역을 쉽게 조회하고 정산을 통해 누락되는 계약 없이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2-19 | 공사계약 통합관리 흐름도



(2) 공사계약통합의 진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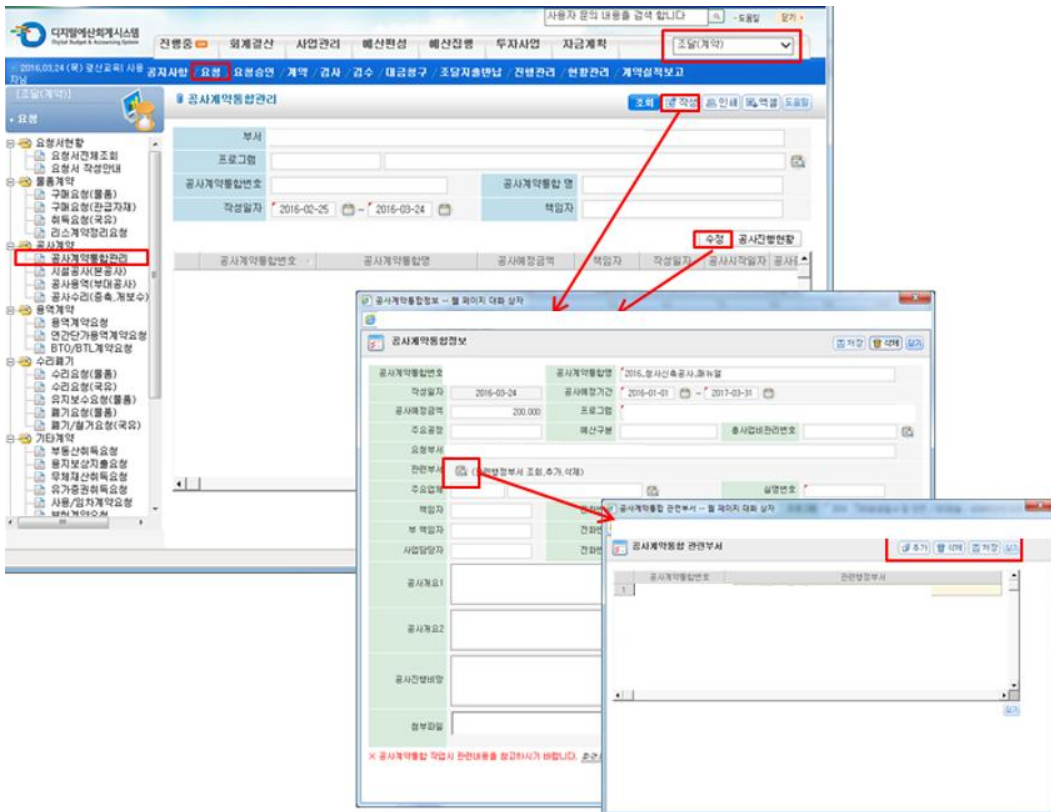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출을 처리하고자 한다.

- 사무실별관(본공사) 계약 : 500,000원
- 사무실별관 공사에 포함되어야 할 전기공사 및 설계용역(부대공사) : 800,000원
- 부대비 : 시설공사 및 설계용역수수료 25,000원

① 공사계약통합 등록

공사계약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공사계약통합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달(계약)>요청>공사계약>공사계약통합관리]에서 '작성'버튼을 클릭하여 공사계약통합명, 공사예정기간 등을 입력한 후 저장한다.

그림 2-20 | 공사계약 통합관리 등록



② 공사진행 현황조회

[조달(계약)>요청>공사계약>공사계약통합관리]에서 해당 공사를 조회한 후 '공사진행현황'버튼을 클릭하여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와 부대비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계약연결'(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이라면 '요청연결')을 클릭하여 계약서를 추가하거나 '연결삭제' 버튼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그림 2-21 | 공사진행 현황조회

The screenshot displays the '공사계약통합관리' (Contract Management) interface. The main window shows a list of contracts with columns for contract number, name, contract amount, and completion status. A red box highlights the '공사진행현황' (Contract Progress Status) button. A secondary window titled '공사진행현황조회' (Contract Progress Status Query) is open, displaying detailed information for a specific contract, including contract number, amount, and completion date. Below this, there are two tables: '공사진행현황' (Contract Progress Status) and '부대비 발생내역' (Subcontractor Expense Detai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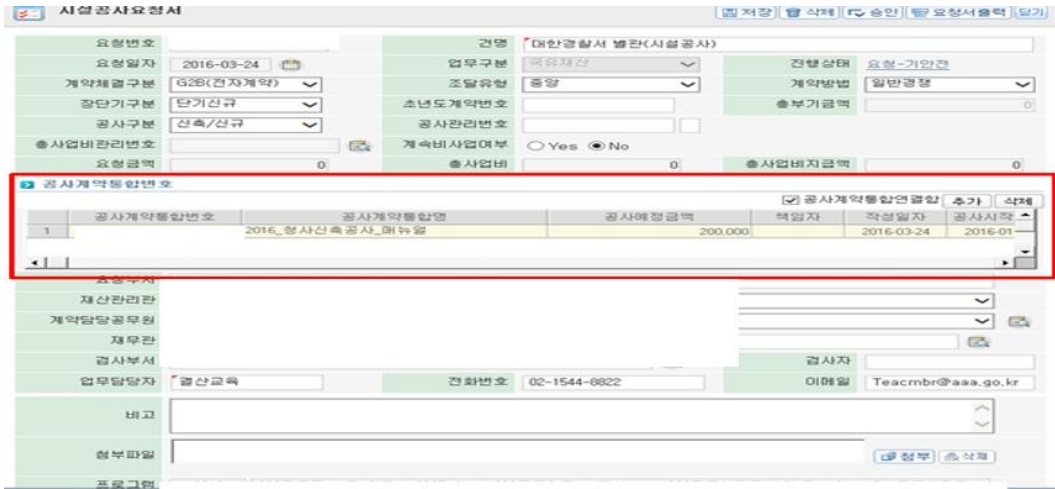
번호	내용	진행상태	계약수량	계약금액	공사수량	공사금액	진행률	계
1	■ 본공사							
2	▷ 대한경찰서 별관(시설공사)	계약확인		500,000				I1603
3	- (건물): 사무실 별관		50	500,000	0	0	0%	
4	■ 부대공사							
5	▷ 대한경찰서 별관(소방공사)	요청		600,000				MF201
6	- [자산관리(건축자산): 소방공사		1	600,000	0	0	0%	
7	▷ 대한경찰서 별관(건기공사)	계약확인		700,000				I1603
8	- [자산관리(건축자산): 건기공사		1	700,000	0	0	0%	
9	■ 용역							
10	▷ 대한경찰서 별관(설계용역)	계약확인		100,000				I1603
11	- (비용): 설계용역		1	100,000	0	0	0%	

발생일자	발생연번	내용	원인항위번호	발생금액	정산금액	미정산금액	거래처코드

③ 관련 계약 연결

신규계약을 연결하는 경우 공사, 용역, 관급자재 등의 계약요청화면에서 '공사계약통합번호 선택' 후에 계약을 진행하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건이라면 공사진행현황 조회화면에서 '계약연결'(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이라면 '요청연결')을 클릭하여 연결한다.

그림 2-22 | 관련계약 연결



④ 관련 부대비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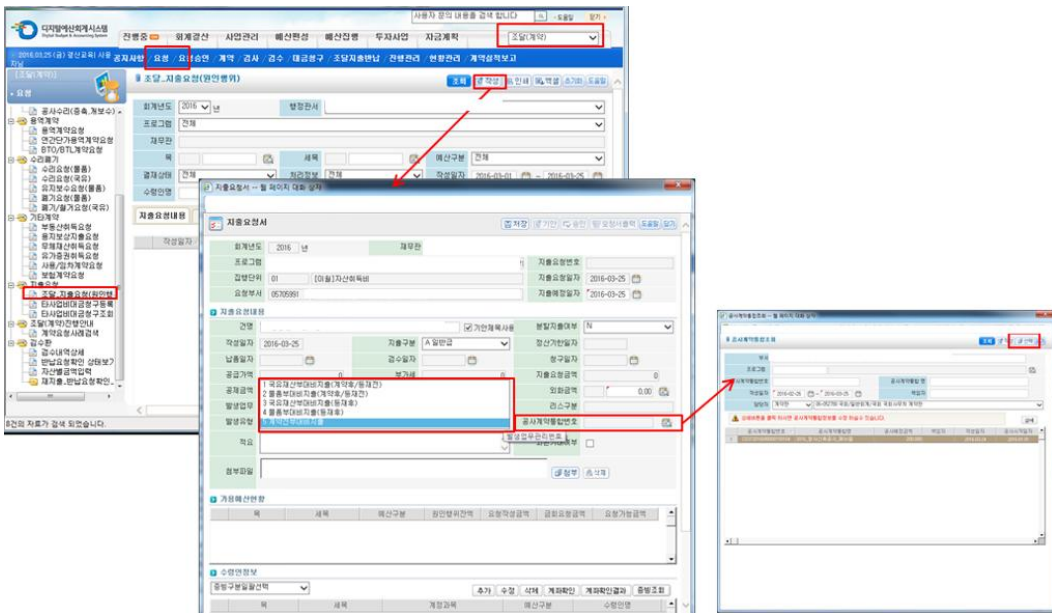
조달(계약) 또는 지출에서 신규로 발생한 부대비를 연결하는 경우 부대비 지출 시 발생유형 1번 또는 2번을 선택하여 공사계약통합에 연결된 계약 번호를 입력하거나, 발생유형 5번을 선택하여 공사계약통합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미 지출된 부대비를 연결하는 경우라면 공사진행현황 조회화면에서 '부대비연결' 버튼을 클릭하여 연결할 수 있다.

표 2-8 | 부대비 설정 연계정보

발생유형	연계정보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계약번호
2. 물품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	대장번호, 요청번호, 검수번호
4. 물품 부대비 지출(등재 후)	
5. 계약전부대비 지출	공사계약통합번호 직접입력

그림 2-23 ■ 부대비 계약번호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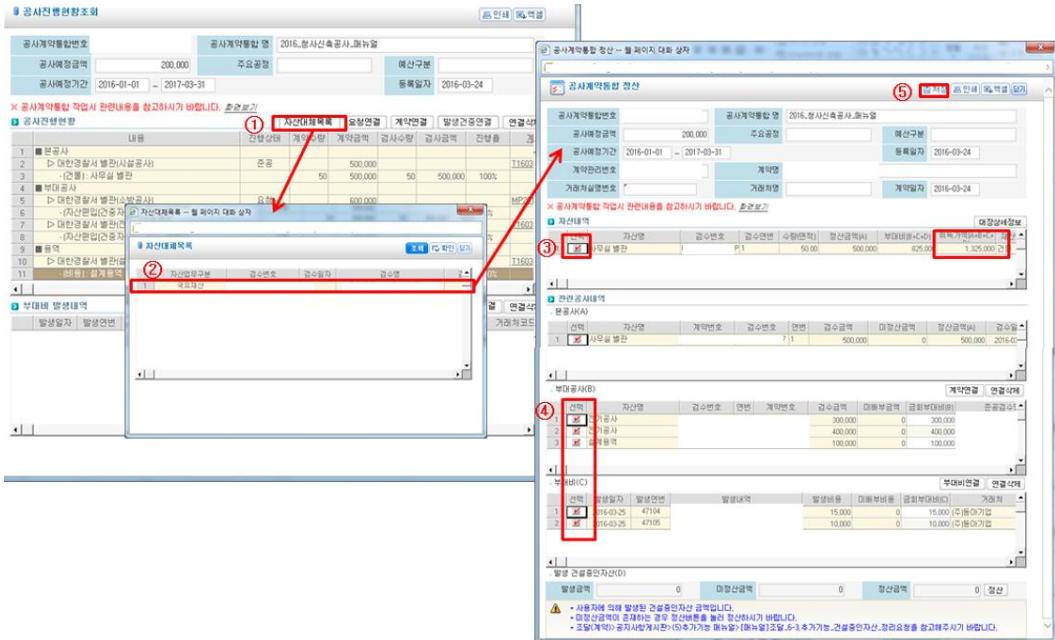


⑤ 공사계약통합관리 정산

검수를 통해 자산으로 대체되기 전에 공사계약통합번호로 연결된 부대공사와 부대비를 일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산은 일종의 분류작업으로 자산대장에 등재될 금액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담당자는 공사진행현황 조회화면에서 '자산대체목록'버튼을 선택하여 정산할 자산대체서를 클릭하면 공사계약통합정산 화면이 나타나고, 하나의 자산으로 등재되어야 할 부대공사와 부대비를 선택하여 정산한다.

그림 2-24 ■ 공사계약통합관리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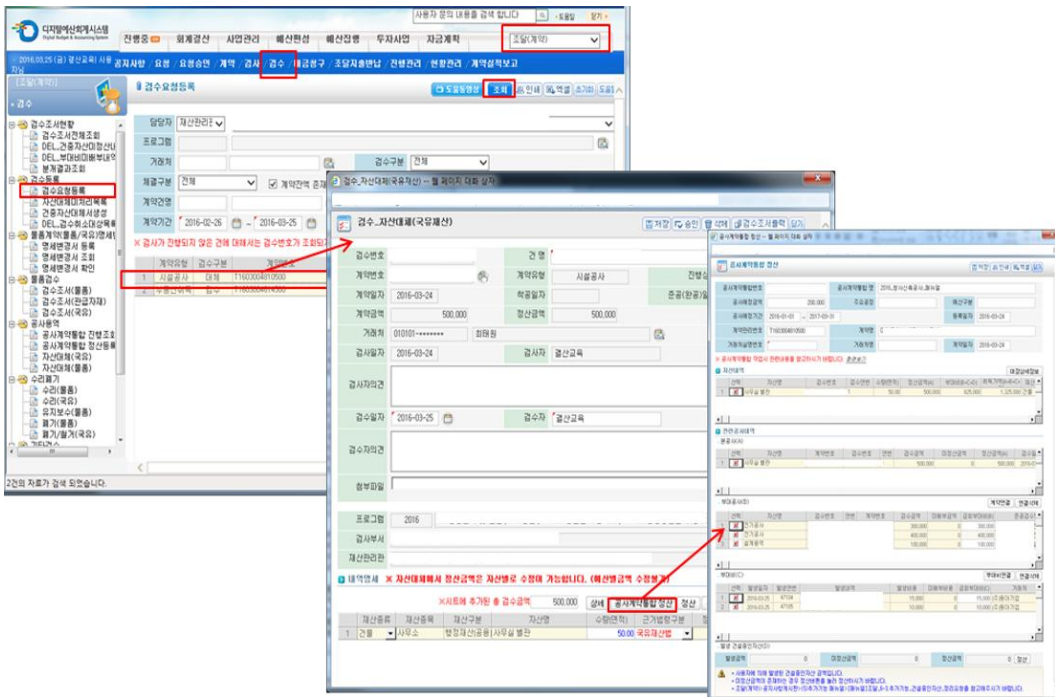


⑥ 자산대체(대장등재)

재산관리관이 검수업무를 수행하면 비로소 해당 자산이 대장에 등재되고, 회계처리도 일어나게 된다. 이때에도 통합관리하던 공사계약이 모두 대장 가액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정산이 누락된 공사계약이 있거나 사업담당자가 수행한 정산내역을 재산관리관이 수정하여야 할 때에는 [조달(계약)>검수>검수등록] 또는 [조달(계약)>검수>검수조서현황>검수조서전체조회]에서 자산대체서를 조회하여 공사계약통합정산 버튼을 클릭하면, 전 단계에서 진행한 공사 계약통합정산화면으로 연결되어 추가로 정산하거나 정산내역 수정이 가능하다.

그림 2-25 | 자산대체서 공사계약통합 정산



(3) 회계처리

위 업무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조달(계약)>검수>공사용역>공사계약통합정산등록]메뉴에서 자산대체서를 조회한 후 '전표상세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다.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본공사	준공검사	건설중인건물	500,000	기타의미지급금	500,000
	계좌이체	기타의미지급금	500,000	현 금	500,000
부대공사	준공검사	건설중인건물	800,000	기타의미지급금	800,000
	계좌이체	기타의미지급금	800,000	현 금	800,000
부대비(조달수수료)		건설중인건물	15,000	현 금	15,000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10,000	현 금	10,000
자산대체		건 물	1,325,000	건설중인건물	500,000
				건설중인건물	800,000
				건설중인건물	15,000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10,000

7 선금지급액 미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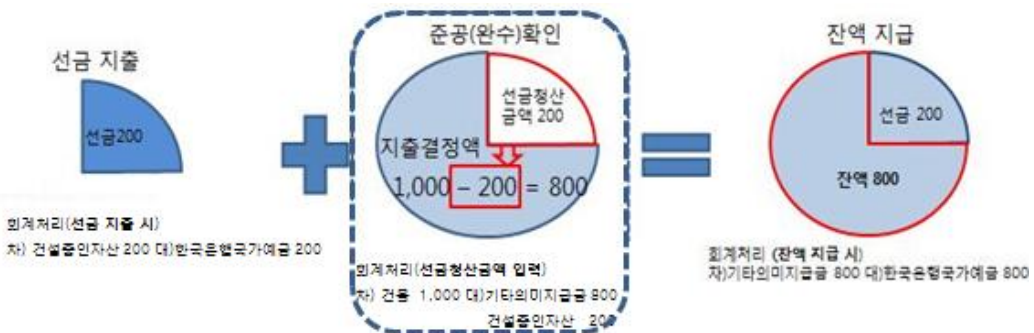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 건물 신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주) 안전건설에 총 계약금액 10억원 중 2억원을 선금금으로 지출하였다. 공사가 완료된 후 검사부서 주재산 주무관은 준공(완수)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확인서를 승인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공사계약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용역계약을 통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계약 관련 선금은 선금청구[조달>대금청구>선금청구] 메뉴를 통하여 지급된다. 그리고 기성 또는 준공확인을 통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의 지출액은 선금지급액을 제외하고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기성 또는 준공확인 시점에 선금 지급분 중 청산하여야 할 금액을 입력하여야 정확한 지출액이 계산될 수 있다.

그림 2-26 ■ 선금지급과 청산금액



검사 업무 중 준공(완수)확인의 예를 들면 아래 <그림 2-27>과 같은 화면에서 선금청산금액을 올바르게 입력하여야 한다. 선금청산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지출액이 올바르게 결정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선금청산잔액 = 선금지급액 - 반납액 - 기선금청산금액
- 지출결정금액 = 금회준공금액 - 선금청산금액 - 지체상금액

그림 2-27 | 준공(완수)확인

준공(완수)확인 저장 승인 삭제 검사조서출력 닫기

검수번호		건명	청사신축공사.테스트		
계약번호		계약금액	700,000	진행상태 <u>검사-기안전</u>	
계약일자	2011-03-21	기성출역	0	준공요청금액	0
혁공일자		준공(완공)일자		금회준공금액	700,000
선금지급액	0 (반납액: 0)	기성금청산금액	0	선금청산잔액	0
준공기한		준공확인요청일	2011-03-21	선금청산금액	0
지체상금률	0	지체일수	0	지체상금액	0
유보률	0.00	유보금액	0	지출결정액	700,000
거래처	1171172472	리스상사		지체대금청구	<input checked=""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검사일자	2011-03-21	검사자	대표자		

(2) 오류에 따른 영향

검사 업무가 완료되면 대금청구요청을 통해서 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대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 때 연계되는 항목이 위 그림의 지출결정액이다. 지출 결정액은 금회준공금액에서 선금청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본 사례에서는 총 계약금액 10억원 중 선금으로 지급한 2억을 차감한 8억원이다.

올바른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였을 경우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선금 지급	건설중인자산	200,000,000	현 금	200,000,000
준공(완수)확인	건 물	1,000,000,000	기타의미지급금	800,000,000
			건설중인자산	200,000,000
공사대금 지출	기타의미지급금	800,000,000	현 금	800,000,000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의해 최종적으로 '건물 10억 / 현금 10억'의 회계처리가 발생된다. 하지만 본 오류사례와 같이 선금청산금액 2억원을 입력하지 않고 준공(완수)확인을 통하여 대금청구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선금 지급	건설중인자산	200,000,000	현 금	200,000,000
준공(완수)확인	건설중인자산	1,000,000,000	기타의미지급금	1,000,000,000
공사대금 지출	기타의미지급금	800,000,000	현 금	800,000,000

위의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선금청산금액 2억원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 인식하였던 건설중인자산을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나타나지 않고 검사 금액 전부가 기타의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된다.

지출시점에서는 집행단위담당자 또는 지출관이 지출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지출금액을 수정하기 때문에 8억원이 올바르게 지급이 될 수 있으나, 건설중인자산 2억원과 미지급금 2억원이 상계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dBrain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나라장터 (G2B)를 통한 전자계약건의 경우 대금청구서의 지출금액 수정이 불가하도록 하였다. 검사서의 선금청산금액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대금청구와 검사서를 반려 후, 선금청산금액이 입력된 검사서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기성 또는 준공확인의 검사업무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금을 청산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사부서에서는 기성 또는 준공확인 시 선금청산잔액의 존재유무를 파악하여 올바른 선금청산 금액을 입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물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2-28 | 검수_물품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form for '검수_물품'. At the top right, there are buttons for '입력저장', '승인', '반려', and '검수조서출력'. The form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Contract Information:** Includes '계약번호' (Contract No.), '계약금액' (Contract Amount: 1,000,000), '계약일자' (Contract Date: 2011-03-09), and '납품기간' (Delivery Period).
- Inspection Information:** Includes '건명' (Project Name), '일괄구매' (Bulk Purchase: Yes/No), '기검수총액' (Total previous inspection amount: 0), '납품일자' (Delivery Date), '기선금청산금액' (Previous advance payment settlement amount: 0), '검사요청일' (Inspection request date: 2011-03-09), '지체일수' (Delay days: 0), and '유보금액' (Reserve amount: 0).
- Financial Summary:** Includes '진행상태' (Progress status: 검수-기인건), '검수요청금액' (Inspection request amount: 0), '공회검수금액' (Returned inspection amount: 1,000,000), '선금청산잔액' (Advance payment settlement balance: 0), '선금청산금액' (Advance payment settlement amount: 0), '지체상금' (Delay penalty: 0), '관가액' (Management fee: 0), '지출결정액' (Payment determination amount: 1,000,000), and '지체대금청구' (Delay payment request: Yes/No).
- Other Fields:** '거래처' (Counterparty: E 544 박), '리스거래처' (Lease counterparty), '검사일자' (Inspection date: 2011-03-09), '검사자' (Inspector), '검사자의견' (Inspector's opinion), '검수일자' (Inspection date), '검수자의견' (Inspector's opinion), and '첨부파일' (Attachments).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검사부서에서 검사서에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검사요청을 누락하였거나 검사금액과 지출될 금액을 혼동하여 검사금액을 적게 입력한 경우 회계처리상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선금청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사부서에서 검사서에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달(계약)>검사>검사조서현황>검사조서전체조회] 메뉴에서 해당 검사(검수)서를 조회하여 '선금청산 금액정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해야 한다.

그림 2-29 | 선금청산 금액정정기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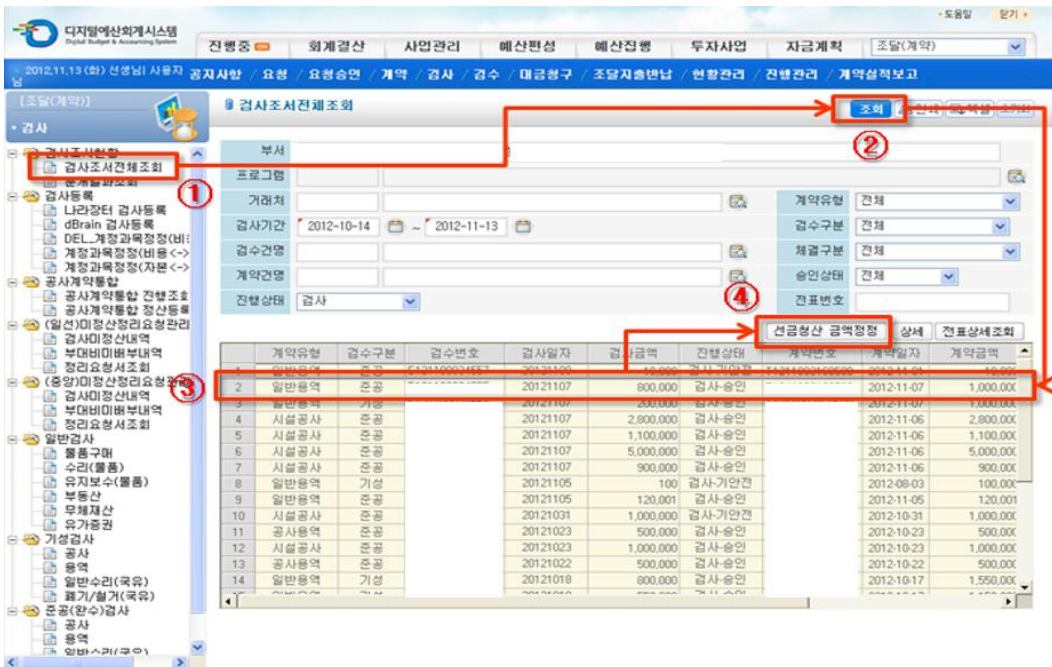


그림 2-30 ■ 선금청산 금액정정기능(2)

선금청산금액정정 -- 웹 페이지 대화 상자

선금청산금액정정 [승인] [닫기]

1 >> 계약정보

계약번호		계약건명	선금청산 금액정정용	
계약금액	1,000,000	총 검사금액	1,000,000	
총 선금지출액	500,000	총 선금청산금액	100,000	선금 미청산 잔액 400,000

2 >> 검사정보

검사번호		검사건명	선금청산 금액정정용	
검사금액	800,000	금회선금청산금액	0	
지체상금액	0	감가액	0	기타재외금액 0

3 >> 선금청산 정정금액 입력

선금청산 정정금액 0

4 >> 지출액 정보

지출결정금액	800,000	실 지출금액	350,000
--------	---------	--------	---------

⚠ 1. 최대선금청산 가능금액은
 [검사금액 - (지체상금 + 감가 + 기타재외(국고외, 국고채무부담, 리스) - 지출금액) 으로 산정됩니다.
 2. 지출결정금액이 지출금액보다 작게 산정되어 '정정'처리가 불가하실 경우,
 조달(계약)>공지사항계시판의 '미정산된 선금 정리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부서에서 검사요청을 누락하였거나 검사금액을 적게 입력한 경우에는 [조달(계약)>검사>검사등록>dBrain검사등록] 메뉴에서 추가적인 검사 등록을 해야 한다.

8 공사계약의 증축 및 개보수 선택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청사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공사계약을 통하여 1,000만원의 공사를 발주하였다. 엘리베이터 설치의 경우 자산의 가액에 더해져야 하는 자본적지출이므로 공사구분을 증축으로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나, 공사구분을 개보수로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공사계약을 통하여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증축 또는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메뉴에서 공사수리요청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이 때 공사구분이 '증축'과 '개보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다.

그림 2-31 | 공사수리요청서

요청번호		건명		요청일자 테스트.공사수리	
요청일자	2011-03-01	업무구분	국유재산	진행상태	요청-기안전
계약체결구분	G2B(전자계약)	조달유형	자체	계약방법	일반경쟁
장단기구분	단기신규	초년도계약번호		충부금액	0
공사구분	증축	공사관리번호		요청금액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축 개보수 					

자산에 대한 추가적 지출은 크게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나뉠 수 있는데 자본적지출이란 대상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하고 수익적지출이란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지출을 의미한다.

- 자본적지출 : 생산능력증대, 내용연수 연장, 원가 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 건물의 개조 및 증축
 - 엘리베이터 설치, 비상구 설치, 중앙집중식 냉난방장비 설치 등
- 수익적지출 :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 건물 페인트칠, 깨어진 창문 교환
 - 기계부속품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교체 등

따라서 사업담당자는 공사수리요청서 작성 시 해당 지출의 성격에 맞게 공사구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자본적지출은 '증축'으로 수익적지출은 '개보수'로 선택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공사수리요청서 작성 시 '증축'을 선택하고 대장의 자산을 선택하면 해당 자산의 가액이 증가하는 처리가 일어나고, '개보수'를 선택하고 대장의 자산을 선택하면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비 계정이 나타나는 회계처리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김국유 주무관이 자본적지출로 처리되어야 하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개보수'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자산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고 비용이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증축(자본적지출)	건 물	10,000,000	현 금	10,000,000
개보수(수익적지출)	건물수선유지비	10,000,000	현 금	10,000,000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의해 자산이 과소 계상되고 비용이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향후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왜곡되게 된다. 또한 자산성이 있는 지출이 비용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산관리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2018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하되,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 또는 공사비(420-03)로 반영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수익적지출,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는 자본적지출로 구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사업담당자는 공사수리요청서를 작성할 때 지출의 성격이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검토하여 '증축'과 '개보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증축' 또는 '개보수'를 선택한 후 연관되는 자산의 선택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익적지출이라 판단하여 '개보수'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지출에 맞는 자산을 선택하여야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처리되어 원가정보가 적정하게 집계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공사수리의 '개보수'를 통해 비용 처리한 항목을 자본적지출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기능을 통해 장부가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조달(계약)>검사>검사등록>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TIP>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과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차이>

-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당해연도에 완료된 공사수리(증축/개보수), 물품수리, 국유수리 관련 건물 중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또는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변경해야 할 경우 사용하는 메뉴
-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당해연도에 승인된 관급자재, 시설공사, 부대공사, 용역계약 건물 중 건설중인자산을 비용으로 또는 비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사용하는 메뉴(단 자산대체서로 정산되지 않은 건물만 가능)



(4) 공사계약(증축, 개보수)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한 오류(2015회계연도)

OO부 특별회계에서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이전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적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수선유지비(관리운영비)가 70억 6,384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건물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건물감가상각비(관리운영비)와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1억 4,128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196p 중>

○ 건물 증축 관련 지출의 비용 처리(2016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서울시 서초동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건물에 대한 증축 관련 자본적 지출액을 건설중인건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수선유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건설중인건물(일반유형자산)이 16억 2,739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수선유지비(프로그램명: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와 지급수수료(프로그램명: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가 각각 16억 1,542만원, 1,197만원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88p 중>

○ 건물 관련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한 오류(2017회계연도)

OO처 일반회계에서 식중독균주은행 건물의 통신·소방·전기공사 관련 자본적 지출은 건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수선유지비로 처리하여 건물(일반유형자산), 건물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 건물감가상각비(프로그램명: 식품영양안전성제고)가 각각 1억 2,488만 원, 42만 원, 42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건물수선유지비(관리운영비)가 1억 2,488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904p 중>

참고

수리요청과 자본적·수익적 지출

조달관리 업무 메뉴에는 수리 / 폐גיע약 메뉴가 존재한다. 해당 메뉴는 국유재산과 물품 등의 수리 혹은 폐기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메뉴로서 국유재산과 물품의 공사의 일반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메뉴이다. (공사를 통한 수리업무는 공사계약 메뉴의 증축 및 개보수의 선택으로 진행된다)

수리 / 폐גיע약 메뉴에서 수리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림 2-32>에서 볼 수 있듯이 요청서 하단에서 '지출구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림 2-32 | 수리요청서

앞서 설명하였듯이 공사계약의 증축, 개보수와 마찬가지로 해당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 자산의 가액에 더해지거나 혹은 비용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사업 담당자는 요청하려는 수리비의 성격이 자본적지출인지 아니면 수익적지출인지 사전에 판단하여 지출구분에서 그 성격에 맞게 선택하여야 한다.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자본적지출	건물	10,000,000	현금	10,000,000
수익적지출	건물수선유지비	10,000,000	현금	10,000,000

수익적지출로 처리된 수리계약을 자본적지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정과목 정정(자본<->수익)*메뉴에서 해당 검사서를 조회하여 선택 후 변경할 수 있다.

* 조달(계약) > 검사 > 검사등록 > 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9 자본형성적 경비에 의한 취득 업무처리 오류

집행단위담당자 나재정 주무관은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민간에 사업을 맡기고자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예산으로 1억원을 지출하였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었을 경우 확인 후 자산을 등재하여야 하나, 나재정 주무관은 이를 간과하고 더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 해외자본이전(340-03)과 같은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 또는 자치단체 및 해외 등에 위탁을 통하여 지출을 하는 예산(이하 '자본형성적 경비')이 존재한다. 자본형성적 경비는 그 성격상 예산을 집행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서 자산의 취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민간대행 등 위탁사업이 완료되어 자산이 등재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다.

표 2-9 | 자본형성적 경비의 종류

예산세목	성격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을 위한 경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30-04)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해외자본이전 (340-03)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보조금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할 경우 현금의 상대계정과목으로 일반 비용이 아닌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된다. 해당 지출은 자본형성, 즉 자산의 취득을 전제한 지출이기 때문에 자산이 취득되어 대장에 계상되기 전까지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민간대행사업비 등을 지출한 담당자는 해당 지출에 의하여 자산 취득업무 완료시점에 관련 자산을 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선급금'으로 처리된 자본형성적 경비에 대해서는 대장관리 메뉴 중 기타증감의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을 통하여 해당 선급금을 상계하고 자산을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선급금'으로 처리된 자본형성적 경비를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혹은 ② 기타증감의 '기타(증)' 사유로 자산을 등재하였을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기타증감의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으로 자산을 대장에 등재할 때 나타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지출	선급금	100,000,000	현 금	100,000,000
기타증감_외부에의한 기반시설취득	구축물	100,000,000	선급금	100,000,000

일련의 처리를 통하여 사업비 지출 시 계상되었던 선급금이 상계되고 자산이 정상적으로 재정상태표에 반영된다.

하지만 본 사례와 같이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확인을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선급금이 상계되지 않고 재정상태표에 남아 있어 재정상태표에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산의 등재를 '기타증감_외부에의한기반시설취득'이 아닌 '기타증감_기타(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자산이 대장에 등재되긴 하지만 선급금이 상계되지 않아 재정상태표에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법정민간대행사업비 지출	선급금	100,000,000	현 금	100,000,000
기타증감_기타(증)	구축물	100,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0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액이 선급금이 되어 재정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의하고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부가 업무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우선 자본형성적 경비 지출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자산이 완공되었는지 확인한 후 완공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 없으나,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국유재산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선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 '기타 증감_외부에의한기반시설취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대장에 등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 해외자본이전(340-03)과 같은 자본형성적경비 예산을 집행하였을 때는 해당 지출에 따라 '선급금'이 계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산의 취득여부를 확인하여 '기타증감_외부에의한 사회기반시설취득' 사유를 통하여 대장에 등재하는 후속조치를 처리해야 한다.

(4) 관련 오류사례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관리하고 있던 건물(10,000,000원)이 대장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대장에 등재하기 위하여 기타증감 메뉴의 누락재산 등록 사유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나 무주재산등록 사유를 선택하여 자산을 등재하였다.

dBrain 시스템의 국유재산, 물품 업무에는 대장관리 메뉴 중 ‘기타증감’ 메뉴가 존재한다. 해당 메뉴는 현금의 지출과 수입이 수반되지 않는 대장의 변화를 설정하는 메뉴로 합병, 분할과 같은 업무와 취득일자 변경, 내용연수 변경 등 대장의 정보관리항목의 변경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33 | 기타증감처리

<그림 2-33>에서 알 수 있듯이 기타증감 메뉴 중 취득이 존재하는데 이는 환수, 국가귀속 등에 의한 무상취득이나 무주재산 또는 누락재산 등록과 같은 신규 등록, 사고이월 혹은 기존계약에 따른 매입 등의 사유로 나눌 수 있다.

기타증감으로 대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게 되면 각 사유에 따라 계정과목이 선택되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져 있다. 김국유 주무관은 누락재산을 등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누락재산 등록’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무주재산등록’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기타증감 사유에 따라 나타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기타증감_누락재산등록	건물	10,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기타증감_무주재산등록	건물	10,000,000	잡이익	10,000,000

김국유 주무관이 대장에 등재한 건물은 누락재산이기 때문에 전기오류수정 이익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나 기타증감 사유를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되어 오류가 발생한다.

국유재산 결산지침에 따른 자산의 신규등록 사유별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누락재산등록 : 전년도 결산 시 누락된 재산을 현년도에 등록하는 경우
- 무주재산등록 : 민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재산 취득

무주재산등록은 민법,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은닉재산취득이므로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전혀 의미가 다른 계정과목이 생성되는 것이다.

10 유동성 대체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20X2년 10월 31일 무체재산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의 정보관리항목 중 만기일의 입력을 20X51031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X61031로 오(誤)입력하여 20X4회계연도 결산 시 유동성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오류의 유형

유동성대체는 특정시점에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자산 및 부채와 관련 하여(ex.대여금, 차입금 등) 만기일, 상환일 등이 1년이 넘게 남아있었다가 1년 이하로 바뀌는 경우 정보의 유용성을 위하여 계정과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유동성대체는 연말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인식되며, 결산조정분개는 해당 계정과목 정보관리항목의 만기일 또는 상환일을 기준으로 dBrain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보관리항목을 오(誤)입력 하는 경우 유동성대체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2-34 | 유동성대체 I

일련번호	계정과목명	관리번호	관리명	당기유동성대체금액	통화코드	결산환율	연간리스금액
1	합 계			1,925,576,143			622,885.8
2	MP0000000001 금융리스부채			282,436,959			318,975.7
3	MP0000000002 금융리스부채			73,132,700			82,989.5
4	MP0000000003 금융리스부채			42,736,776			50,996.9
5	MP0000000013 금융리스부채			46,831,351			53,278.8
6	MP0000000014 금융리스부채			44,476,630			54,478.7
7	MP0000000015 금융리스부채			30,016,353			37,373.1
8	MP0000000016 금융리스부채			21,265,374			24,792.3
9	NP0000000001 장기임차보증금-국유			65,000,000			
10	NP0000000002 장기임차보증금-국유			85,000,000			
11	NP0000000003 장기임차보증금-국유			70,000,000			
12	NP0000000004 장기임차보증금-국유			80,000,000			
13	NP0000000005 장기임차보증금-국유			70,000,000			
14	NP0000000006 장기임차보증금-국유			100,000,000			

그림 2-35 | 유동성대체 II

분개내역					
행번호	계정과목	적요	결의내용	차변금액	대변금액
1	11090801 임차보증금-국유	유동성대체		45,000,000	0
2	16040302 장기임차보증금-국유	유동성대체		0	45,000,000
3	11090801 임차보증금-국유	유동성대체		38,000,000	0
4	16040302 장기임차보증금-국유	유동성대체		0	38,000,000
5	11090801 임차보증금-국유	유동성대체		42,000,000	0
6	16040302 장기임차보증금-국유	유동성대체		0	42,000,000

일련번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참조값
1	거래처코드	기타	
2	자산번호		
3	자산명		
4	만기일	20141205	

(2) 오류에 따른 영향

만기일을 20X5년이 아닌 20X6년으로 잘못 입력하였기 때문에 20X4회계연도에 장기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유동성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1년 내에 현금이 들어오는 유동자산이 과소 계상되었다.

- 만기일 '20X51031'입력(20X4회계연도 말 결산조정분개)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임차보증금_국유	10,000,000	장기임차보증금_국유	10,000,000

- 만기일 '20X61031'입력(20X4회계연도 말 결산조정분개) : 회계처리 없음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존재하여 유동성대체를 하는 계정과목과 관련된 국유 재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정보관리항목을 정확히 입력한다. 용자금, 리스, 보증금의 정보관리항목 변경이 필요하다면 디브레인의 아래경로에서 각각 변경할 수 있다.

표 2-10 | 업무유형별 정보관리항목 수정 경로

업무유형	경로
용자금	용자> 요청관리> 용자집행> 원금회수계획에서 수정
리스	조달> 계약> 리스계약관리> 리스계약등록및조회
보증금	국유재산> 대장관리> 부가정보등록

유동성대체 관련 결산조정분개는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담당자의 검토가 어렵다. 따라서 업무담당자가 정보관리항목 입력 시 주의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동성대체 관련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계정과목이 바로 임차보증금이다. 이는 무체재산계약 또는 기타증감 메뉴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을 인식하는 경우 정보관리항목인 만기일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로 특히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유동성 대체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미수채권(비유동자산) 계정분류 오류(2016회계연도)

OO부 특별회계에서 회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지 않는 장기미수채권을 미수채권으로 분류하여 미수채권(유동자산)과 미수채권대손총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20억원, 2,000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장기미수채권(기타비유동자산)과 장기미수채권대손총당금(기타비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유동성대체를 누락하여 유동성정부내장기예수금(유동부채)이 58억 3,100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정부내장기예수금(장기차입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 283p 중>

○ 임차보증금 유동성 대체 누락 오류(2017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임차계약에 따라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될 임차보증금을 장기임차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장기임차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이 1억2,756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임차보증금(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 244p 중>

11 자산 대응 프로그램 누락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자산 등재시 입력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해당 자산은 타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인계시 사업정보를 '사업없음'으로 관리하여 프로그램원가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가 비배분비용으로 회계처리되었다.

(1) 오류의 유형

감가상각이란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대상액(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감가상각은 연말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인식되며, 결산조정분개는 해당 자산의 정보관리항목의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등을 기준으로 dBrain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보관리항목을 오(誤)입력하는 경우 감가상각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2-36 | 프로그램 입력

관리전환취득요청서

프로그램: 2018

부서: [선택]

건명: 관리전환

요청일자: 2018-10-30 | 진행상태: 관리전환취득요청-기안전

취득재산관리자: [선택]

처분재산관리자: [선택]

관리전환방식: 무상관리전환 | 관리전환금액: 61,500,000

※ 관리전환금액은 관리전환을 통해서 인계되는 재산의 금액으로 무상관리전환의 경우 대장가액의 합이 됩니다.

첨부파일: [첨부] [삭제]

비고: [입력]

업무담당자: 선생님 | 전화번호: [입력] | 이메일 주소: [입력]

3 재산명세

Excelimport | Excel양식다운 | 추가 | 삭제 | 상세

번호	재산구분	재산종류	자산명	소재지(도로명)	소재지(지번)	요청면적
1	일반재산	토지/일반토지	일반토지_02			
2	일반재산	건물/상고	건물			
3	일반재산	무채재산/광업	무채재산 자산			

특히 자산 등재 시 프로그램을 '사업 없음'으로 입력하거나, 입력한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산 인계를 하면서 사업정보를 '사업 없음'으로 선택할 경우 감가상각과 관련된 비용(감가상각비)이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정보가 '사업 없음'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프로그램원가가 과소계상되고, 비배분비용이 과대계상 된다. 비배분비용이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을 말하므로,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비배분비용으로 인식되는 경우 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가 왜곡되어 나타나게 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현재 dBrain 시스템에서는 자산 취득 시 프로그램 입력이 필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해당 자산이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경우 자산의 프로그램정보를 수정하면서 비배분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기말 국유재산 결산 시 자산의 '사업 없음'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산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종료 여부는 아래와 같이 [국유재산>대장관리>대장항목점검] 메뉴에서 종료/폐지된 세부사업이 맵핑된 자산 항목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취득>기타증감>인계관리] 메뉴에서 '사업이동' 사유로 작성하여 사업이동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림 2-37 | 국유재산>대장관리>대장관리>대장항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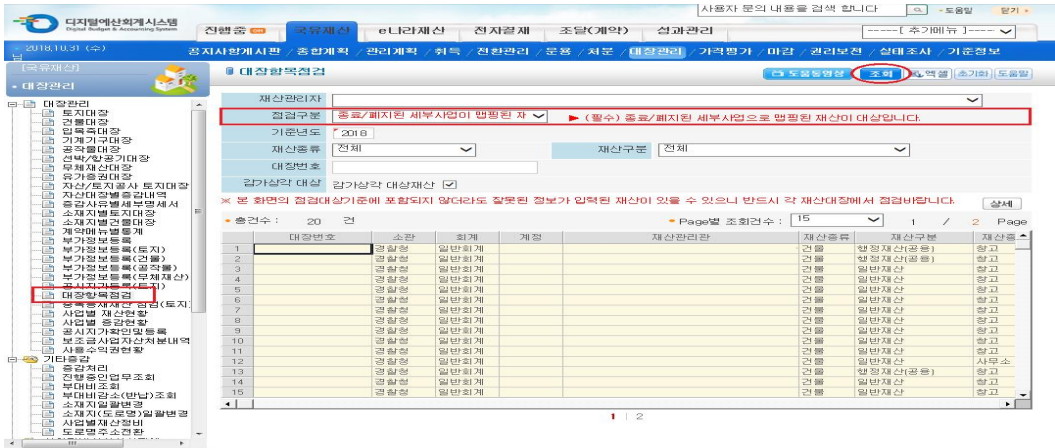


그림 2-38 | 국유재산>취득>기타증감>인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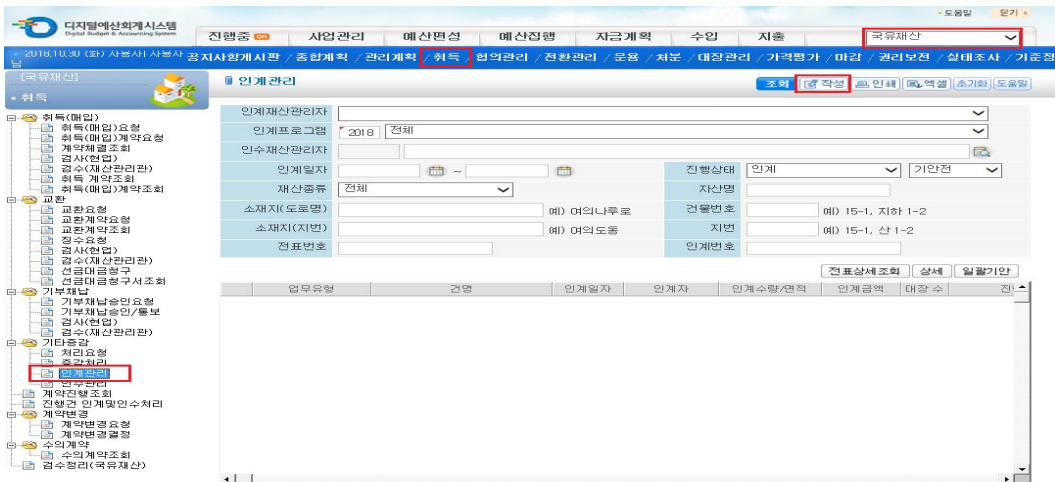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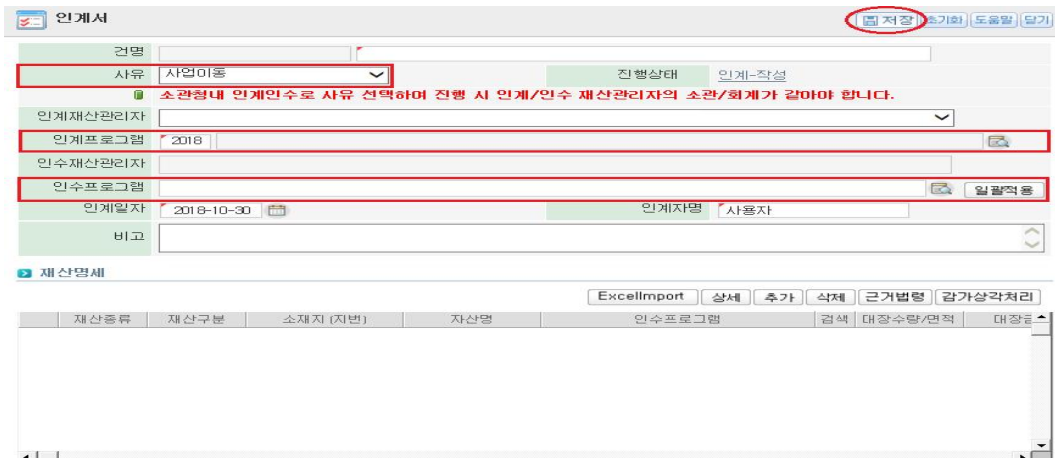


그림 2-39 | 인계서 작성



(4) 자산 대응 프로그램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계정분류 오류(2012회계연도)

OO청 일반회계에서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건물감가상각비를 비배분비용으로 계상한 결과 감가상각비(비배분비용)가 12억 7,667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감가상각비(관리운영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1021p 중>

○ 프로그램 원가를 비배분비용으로 계정분류 오류(2013회계연도)

OO청 특별회계에서 프로그램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기타비용 및 감가상각비를 비배분비용으로 계상하여 기타비용 등이 783억 5,097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비용 등(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346p 중>

○ 프로그램 원가의 비배분비용 분류 오류(2016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산폐기손실 및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등은 프로그램총원가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비배분비용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기타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프로그램원가)과 기타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관리운영비)이 각각 3,031억 7,104만원과 6,295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비배분비용)이 3,032억 3,399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52p 중>

(1) 감사원지적 발생원인**① 내용연수 입력 오류**

- 내용연수(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로 **입력**하거나,
- 재산종목 판단 오류 또는 동일 구조물에 대한 일관성 없는 내용연수 적용 등으로 내용연수 오류가 발생한다.

② 잔존가액 입력 오류

감가상각 관련 정보 입력 시, 잔존가액에 합리적인 추정치가 아니라 **취득가액(또는 취득가액의 96%)** 등을 입력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산출되지 않거나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 사유별 조치**① 내용연수 정정**

내용연수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의 **기타증감***을 활용하여 오류를 정정하도록 한다.

* [국유재산 > 대장관리 > 기타증감], [물품 > 대장관리 > 자산증감]

국유재산은 기타증감의 사유를 '증감없음, 기타증가|내용연수 증가'로 하여 잘못 처리된 자산의 대장번호를 선택하면,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다.

물품은 기타증감의 사유를 '증감없음, 변동/내용연수변경'로 하여 잘못 처리된 자산의 대장번호를 선택하면,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잔존가액 수정

잔존가액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의 **부가정보등록***을 활용하여 오류를 정정하도록 한다.

* [국유재산(또는 물품) > 대장관리 > 부가정보등록]

국유재산은 부가정보등록에서 해당 자산을 조회하면 '기타정보' 하단의 '감가상각 잔존가액(원)'에 수정된 잔존가액을 입력·저장할 수 있다.
 물품은 부가정보등록에서 해당 자산을 조회하면 하단의 '잔존가액'에 수정된 잔존가액을 입력·저장할 수 있다.

그림 2-40 | 국유재산(또는 물품) > 대장관리 > 부가정보등록

The screenshot displays the '국유재산' (Public Property) management system interface. The main menu includes '진행중', '사업관리', '예산편성', '예산집행', '자금계획', '수입', '지출', and '국유재산'. The '국유재산' menu is expanded, showing '대장관리' (Main Management) and '부가정보등록' (Additi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The '부가정보등록' page has a search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 재산관리자: [Dropdown]
- 프로그램: 2018 전체
- 재산종류: 건물
- 재산종목: 전체
- 소재지(도로명): [Text]
- 소재지(지번): [Text]
- 대장번호: [Text]
- 도로번호: [Text]

Below the search form, there is a table with 15 rows and 7 columns. The columns are: 재산종류, 재산구분, 재산종목, 소재지(도로명), 소재지(지번), 자산명, and 자산. The table contains the following data:

재산종류	재산구분	재산종목	소재지(도로명)	소재지(지번)	자산명	자산
1	건물	일반재산	창고		멜론제이캐익	고속
2	건물	일반재산	공장		아문드	고속
3	건물	일반재산	창고		실대조사 건물11	
4	건물	일반재산	창고		실대조사 건물33	
5	건물	일반재산	창고		캘리포니아	고속
6	건물	일반재산	창고		멜론제이캐익1	고속
7	건물	일반재산	창고		멜론제이캐익2	고속
8	건물	일반재산	창고		멜론제이캐익3	고속
9	건물	일반재산	창고		멜론제이캐익4	고속
10	건물	일반재산	창고		멜론제이캐익5	고속
11	건물	일반재산	창고		멜론제이캐익6	고속
12	건물	일반재산	창고		통합테스트	
13	건물	일반재산	창고		통합테스트	고속
14	건물	일반재산	창고		통합테스트	
15	건물	일반재산	창고		테스트용자산준	

- ◆ 국유재산 및 물품 취득 후의 업무에는 운용, 대부 및 사용허가, 교환, 관리전환 및 매각 등이 존재한다.
- ◆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서는 매각의 제한, 매각대금의 납부방식, 소유권 이전, 매각계약의 해제 등 업무담당자가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한요건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 ◆ 국가회계예규에 따르면 처분의 종류로는 매각, 교환, 양여, 유상관리 전환, 현물출자, 멸실 및 신탁 등이 존재하며 처분의 인식시기는 일반적으로 대장에서 자산을 제거할 때, 즉 인계시점에 인식하도록 명시하였다.
- ◆ 본 장에서는 국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업무 수행 시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의 오류사례와 대부 및 사용허가로 인해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따라 생기는 특이사항을 위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국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업무 오류	...	196
2.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업무 오류	...	203
3. 자산재평가 오류	...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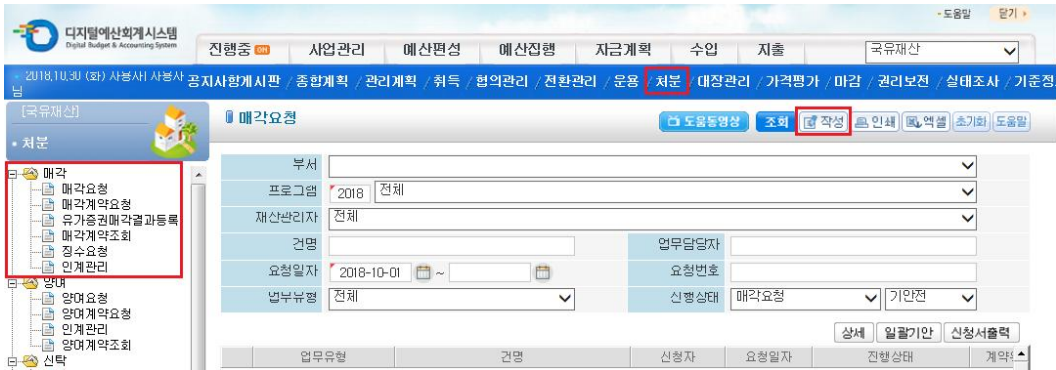
1 국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업무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토지(장부가액 800만원)를 민간에 천만원에 매각하고자 한다. 국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 탭에서 매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김국유 주무관은 수입 메뉴에서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국유재산을 민간 등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3-1>과 같이 [국유재산>처분>매각>매각요청]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3-1 | 매각요청



국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은 매각요청서 작성을 통하여 매각계약을 요청하면 OnBid 등을 통하여(수의계약인 경우에는 dBrain) 계약을 수행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징수요청을 통하여 수납정산 업무와 인계업무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일반 수입업무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나 매각 완료된 국유재산의 인계 처리를 누락하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3-2 | 매각진행절차



(2) 오류에 따른 영향

김국유 주무관이 800만원의 토지를 1,000만원에 민간에 매각하였을 때 <그림 3-2>와 같이 매각진행절차를 수행할 경우 나타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징수결의	미수금	10,000,000	선수금	10,000,000
수납정산	현금	10,000,000	미수금	10,000,000
인계	선수금	10,000,000	토지	8,000,000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0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징수결의 시점에 계약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선수금과 미수금이 계상된다. 미수금(자산)은 징수할 권리를 나타내며, 선수금(부채)은 자산을 인계할 의무를 나타낸다. 따라서 미수금은 수납정산시점에 현금과 상계되며 선수금은 인계시점에 매각하는 자산과 상계된다.

여기서 매각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가 처분이익으로 계상된다.(10,000,000 - 8,000,000 = 2,000,000)

하지만 일련의 국유재산 매각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나타난다.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수납정산	현금	10,000,000	제수익	10,000,000

이는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연계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수익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며 인계처리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자산이 대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또한 매각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착오로 인계처리를 누락하면, 해당 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되지 않고 선수금이 과대 계상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다.

(3)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방법

업무담당자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입' 메뉴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 및 물품 메뉴에서 매각요청서 작성으로 시작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기타증감의 기타(감)'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삭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기타증감' 업무를 통하여 자산을 삭제하는 것은 오류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추가로 생성되어 또 다른 오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기타증감_기타(감)	전기오류수정손실	8,000,000	토지	8,000,000

위의 회계처리와 같이 기타증감_기타(감)으로 자산을 대장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수납정산 시 인식되었던 수익의 과대계상 효과는 사라지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는 비용 계정과목이 생성된다. 따라서 업무담당자는 기타증감업무를 취소하고 매각요청서 작성을 통한 업무처리를 다시 하여야 한다.

매각 완료된 국유재산의 인계처리를 누락한 경우에는 자산이 대장에서 제거 되지 않고 선수금이 남아있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업무담당자는, 매각 완료 자산의 인계처리를 누락한 경우 '인계관리'에서 인계서 승인을 통해 오류 정정을 하여야 한다.

그림 3-3 | 국유재산>처분>매각>인계관리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인계관리' (Handover Management) interface within the '국유재산' (Public Property) system. The left sidebar shows a tree view with '인계관리' selected.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form for entering handover details, with a red box highlighting the form fields. Below the form is a table showing transaction details.

업무유형	건명	인계일자	인계자	인계수량/면적	인계금액	대장수	진행
매각				300.00	30,000,000	1	인계 - 기안전
매각				100.00	3,000,000	1	인계 - 기안전
매각				100.00	3,000,000	1	인계 - 기안전
매각				100.00	3,000,000	1	인계 - 기안전

(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I : 국유재산 유상관리전환 시 수입 메뉴 사용

• OO부처는 국유재산을 XX부처에 유상으로 이전하는 유상관리전환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전환관리>관리전환] 메뉴에서 수행하지 않고 [수입>고지관리>납부서작성 및 출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자산의 인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유재산을 다른 국가실체에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전환관리>관리전환]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일반수입업무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다.

○ 수입 메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잘못된 업무처리)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수납정산	현금	XXX	제수익	XXX

○ 국유재산 메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올바른 업무처리)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징수결의	미수금	XXX	선수금	XXX
수납정산	현금	XXX	미수금	XXX
인계	선수금	XXX	자산	XXX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XXX

업무담당자는 국유재산을 유상관리전환 하는 경우에는 ‘수입’ 메뉴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 메뉴에서 관리전환요청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관련 주요 오류 사례

- OO청과 XX부와 관리전환을 수행하면서 [국유재산>전환관리>관리전환] 메뉴를 사용하여 올바른 업무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취득관서에서는 대장정리 메뉴를 통하여 '기타증감_기타(증)'으로 처분관서에서는 '기타증감_기타(감)'으로 처리하여 각각 대장에 등재하고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내자산수증' 및 '정부내자산기부'가 계상되어야 하나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계정과목이 생성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 OO부는 물품을 교환(일부수령)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물품>취득>교환] 메뉴에서 교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수령하는 금액은 수입 메뉴에서 처리하고 인계처리 없이 대장정리를 통하여 자산을 삭제하였다.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매각 완료된 토지관련 선수금 미제거 오류(2016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2015회계연도에 인천국제공항 진입도로 토지에 대한 매각이 완료되었는데도 해당 토지 매각 시 계상한 선수금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선수금(유동부채)이 130억 7,172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 이익(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또한, OO부 XX특별회계에서 고양시 종합전시장 부지가 2015회계연도에 매각이 완료되었는데도 관련 선수금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선수금(유동부채)이 121억 686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 이익(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627p 중>

○ 토지 매각 회계처리 오류(2017회계연도)

OO부 XX특별회계에서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건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소유권 이전 후 토지와 선수금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토지(일반유형자산), 선수금(유동부채) 및 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이 각각 84억 9,242만원, 211억 8,639만 원, 24억 505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 이익(비배분수익)이 150억 9,902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967p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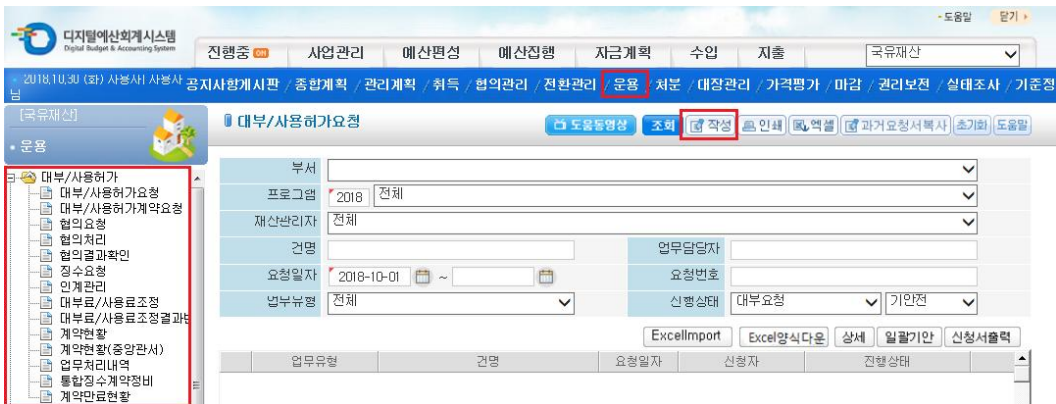
2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업무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관유물인 건물에 관하여 1년에 1,100만원(부가세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사용허가 업무를 수행하려고 한다. 사용허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운용>대부/사용허가] 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단순히 [수입>고지관리>납부서작성 및 출력] 메뉴에서 대부와 관련된 금액을 처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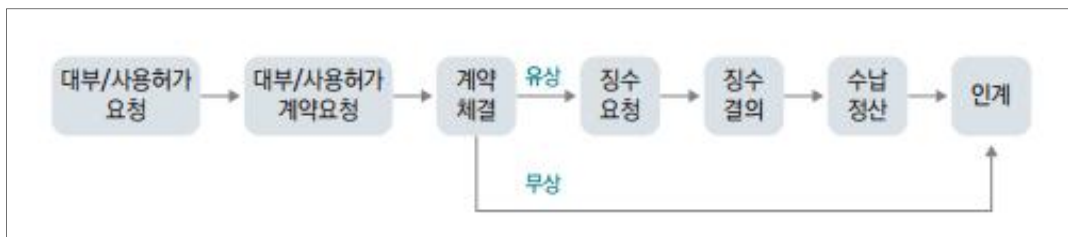
국유재산을 민간 등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업무는 사용허가 혹은 대부 업무를 통하여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3-4 ■ 대부/사용허가 요청



따라서 사용허가와 관련된 임대료는 수입 메뉴에서 납부서작성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 메뉴를 통하여 <그림 3-5>와 같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요청을 통하여 징수요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3-5 ■ 대부/사용허가 업무절차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일반 수입업무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김국유 주무관이 1년에 1,1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받는 사용허가 업무를 <그림 3-5>와 같이 올바른 절차로 수행할 경우 나타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징수결의	미수금	11,000,000	사용료수익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수납정산	현 금	11,000,000	미수금	11,000,000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징수결의 시점에 실제 수령할 1,100만원이 미수금(자산)으로 계상되고 실제 수익금액인 1,000만원과 대납하기 위한 부가세 관련 예수금 100만원이 계상된다. 이는 100만원의 경우 국세청에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납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예수금(부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수납정산 시점에 미수금이 상계 제거되며 부가세예수금은 향후 납부시점에 상계제거 될 것이다.

하지만 일련의 국유재산 사용허가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 납부서 작성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나타난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수납정산	현 금	11,000,000	제수익 또는 부가세예수금	11,000,000

이는 자산의 사용허가와 관련된 연계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100만원 전액이 수익으로 기록이 되거나, 세세부항목의 선택에 따라 전액이 부가세 예수금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해당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수익이 과대계상되거나 부가세예수금이 과대계상되어 재무제표에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1)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세이다. 단,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서 납세자는 소비자이지만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자는 해당 대가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국세청에 납입하게 된다. 국가는 대부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부동산 임대 등 특정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가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 가. 제35조제1호¹⁰⁾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 나. 제35조제5호¹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0)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따른 임대료수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임대료 금액에 부가세(10%)를 포함하여 징수결의 하여야 한다.

임대료 수입 1,100만원(부가세 100만원 포함) 올바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나타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징수결의	미수금	11,000,000	사용료수익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수납정산	현금	11,000,000	미수금	11,000,000

(2) 부가가치세의 납부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dBrain 시스템 상 과오납반환으로 처리가 되고 있었으나 건별 금액이 아닌 총계의 부가세 금액을 이체하거나, 부가가치세 계정과목이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그림 3-6 ■ 부가세일괄과오납반환

이에 dBrain 시스템에서는 과오납반환으로 처리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반환금액이 재무결산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관련 과오납 반환요청을 일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부가세일괄과오납반환' 메뉴를 마련하였다.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금액은 <그림 3-7>과 같이 [수입>요청관리>변경요청>부가세일괄과오납반환요청] 메뉴를 통하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림 3-7 ■ 부가세일괄과오납반환 요청서 작성

결의내용

고지번호	예산과목	계정과목	결의일자	수납일자	부가세수납금액	이체거래금액	납부지
1	11-51-511 토지대여료	부가세예수금	2011-03-22	2011-03-22	25,000	25,000	
2	11-51-511 토지대여료	부가세예수금	2011-03-22	2011-03-22	25,000	25,000	
3	11-51-511 토지대여료	부가세예수금	2011-03-22	2011-03-22	25,000	25,000	
4	11-51-511 토지대여료	부가세예수금	2011-03-22	2011-03-22	25,000	25,000	
5	11-51-511 토지대여료	부가세예수금	2011-03-22	2011-03-22	25,000	25,000	
6	11-51-511 토지대여료	부가세예수금	2011-03-22	2011-03-22	25,000	25,000	

요청내용

요청일자: 2011-03-30 (1) (2) (3)
 요청금액: 150,000 (일십오만원)
 이체거래부: 예 (4)
 반환사유: (부가세일괄) 과오납반환 테스트 (4)
 입금계좌구분: 일반계좌 (4)
 계좌정보: 계좌 조회 및 선택 (5)
 금융기관: 0390000 | 경남은행
 계좌번호: 실명번호1, 실명번호2
 SMS송신여부: 예 (4)
 입금자핸드폰번호: 010 8888 8888 (6)
 Buttons: (7) [저장] [초기화] [도움말] [닫기]

위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계좌이체	부가세예수금	1,000,000	현금	1,000,000

3 자산재평가 오류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공정가액이 장부금액을 30% 초과하고, 1억 이상의 차이금액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1) 오류의 유형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하는 자산의 경우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김국유 주무관은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장부가액 대비 30% 초과하고, 1억 이상의 차이금액이 발생한 토지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였다.

* 중요한 차이의 기준은 명확하게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15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시 30%를 초과하며 차이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자산 중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자산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수정분개 요청함

(2) 사용자 유의사항

토지, 건물, 입목죽, 선박및항공기, 기계기구 및 공작물은 재평가 대상 자산이므로 회계연도말 국유재산대장 마감 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담당자가 가격평가 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진행현황]에서 '가격평가정보 생성'을 클릭하여 가격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일선관서정보를 생성한 후,

그림 3-8 | 국유재산_가격평가

[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증감처리]메뉴에서 '작성'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하여 국유재산담당자가 재평가 대상자산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재평가대상자산임에도 이 단계에서 선택을 누락하는 경우 재평가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림 3-9 | 국유재산_가격평가_가격평가증감처리

재평가대상자산을 선택한 후 평가방법(공정가액, 공시지가, 개별토지가격산정 등) 중 '공정가액'을 선택하는 경우 '입력평가금액'에 담당자가 금액을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실제 공정가액이 아닌 기존 대장금액을 입력하는 경우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올바른 공정가액을 입력하도록 다시 한 번 주의해야 한다.

결산담당자가 개별 자산의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결산시 검토를 통해 오류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국유재산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감사원의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발생한 재평가 관련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이는 전체 감사원 지적사항 중 8%에 달하는 건수이다.

지적사항은 토지 공정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등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상 정해진 평가방법 순서와 다른 순서를 적용하거나, 면적이나 소재지 오입력 등으로 재평가금액을 잘못 계상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유재산담당자는 감사원 지적사항 감소를 위하여 재평가 누락, 평가방법, 면적, 주소지 등을 검토하여 재평가금액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국유재산대장 마감 전에 확인해야 한다.

(3) 자산재평가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토지 재평가 누락으로 인한 자산 과대 계상 오류(2015회계연도)

OO부 특별회계에서 보유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토지가 12억 7,692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이 12억 4,310만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이 3,382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209p 중>

- 토지 재평가 오류(2016회계연도)

OO부 XX기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토지(21,793㎡)를 재평가하면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 인근의 표준공시지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활용하여 재평가금액(181,927원/㎡)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토지가 속한 유성구의 동일 또는 유사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715,720원/㎡)으로 재평가하여 토지(일반유형자산)가 116억 3,295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592p 중>

- 토지 재평가 오류(2017회계연도)

OO청 일반회계에서 토지 및 건물 등 21건의 일반유형자산은 본 회계연도 재평가 대상이 아닌데도 자산재평가를 수행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일반유형자산), 자산재평가손실환입(비배분수익),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이 각각 138억 9,639만 원, 95억 5,761만 원, 793만 원, 42억 6,190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감가상각비(비배분비용)가 8,480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805p 중>

- ◆ 국가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 국가 활동의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자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을 직접 구매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얻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 자산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일정기간 사용료를 지급하여 사용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초기의 자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성능 하락 및 시장의 변화로 인한 진부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 ◆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을 합의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자산의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자산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계약을 리스(lease)라고 하며, 단순 임대차(렌탈)계약이 제조업자와 계약을 맺는다면, 리스는 제조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게 된다.
- ◆ 단순 임대차(렌탈)계약과 리스계약에 따라 dBrain 상 업무처리와 사용료의 지급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에 따른 오류, 리스계약서 등록, 리스대금 청구 시 유의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구매요청서 작성 시 리스구분 입력 오류	...	213
2. 리스계약서 미등록	...	218
3. 리스대금청구를 통하지 않은 리스료 지급 오류	...	225

1 구매요청서 작성 시 리스구분 입력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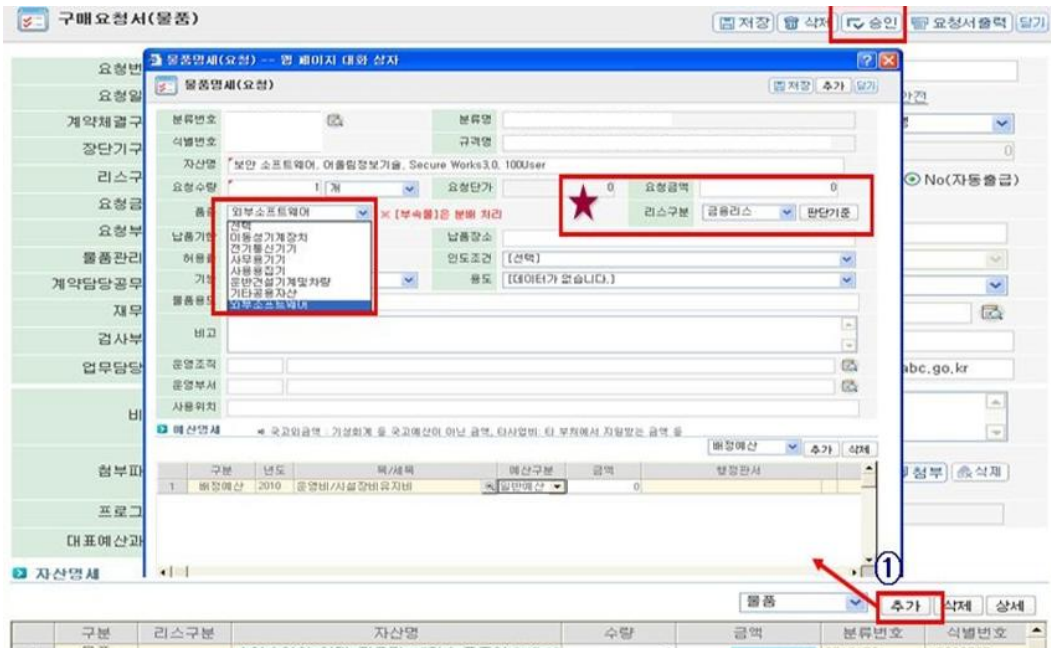
김국유 주무관은 컴퓨터가 노후됨에 따라 나라캐피탈과 컴퓨터 100대를 5년 동안 리스하는 계약을 맺었다. 본 계약은 5년이 지난 후 무상으로 컴퓨터가 이전되는 조건인 금융리스계약으로 김국유 주무관은 구매요청서 작성 시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 리스기간 : 20X1. 1. 1 ~ 20X5. 12. 31
- 금융리스자산 · 부채 금액 : 200,000,000원
- 연간리스료 : 50,000,000원(매년말 지급)
- 내용연수 : 5년
- 내재이자율 : 5%

(1) 오류의 유형

리스는 구매요청(물품) 메뉴를 선택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하면서 분류의 구분을 통하여 일반 물품 취득과 구분된다.

그림 4-1 | 징수요청



사업담당자는 구매요청서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물품명세(요청) 화면에서 품종을 선택하고, 리스계약을 확인하여 리스구분에서 올바른 리스계약을 선택하여야 한다. 물품명세의 리스구분은 '금융리스', '운용리스' 및 '리스아님'으로 구분된다.

김국유 주무관은 계약하는 리스가 금융리스이기 때문에 '금융리스'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운용리스'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계약 시작 시점에 해당 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계약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일어난다. 하지만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위험과 효익이 계약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금융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운용리스를 선택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리스계약시점부터 대금 지급시점까지 오류가 발생한다.

① 리스계약 시

- 잘못된 업무처리(운용리스 계약 선택) : 계약시점 회계처리 없음
- 올바른 업무처리(금융리스 계약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사무용기기 ¹²⁾	200,000,000	금융리스부채	200,000,000

금융리스계약이 이루어지면 리스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물품은 재무제표 상 자산으로 인식되고 리스료 지급 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운용리스로 처리할 경우에는 리스계약에 따른 물품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부채도 인식하지 않아 재무제표에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¹²⁾ 금융리스자산이 자산으로 인식될 때 '금융리스자산'의 계정과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리스물품의 분류에 따라 인식된다.

② 리스료 지급 시

- 잘못된 업무처리(운용리스 계약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운용리스료	50,000,000	현 금	50,000,000

- 올바른 업무처리(금융리스 계약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이자비용	10,000,000 ¹³⁾	현 금	50,000,000
금융리스부채	40,000,000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료 지급을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비용 부분과 부채의 상환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한다. 이는 금융리스계약은 거래의 실질이 계약자가 리스 회사에 대금을 빌려 그 대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회계처리이다.

③ 회계연도 말

- 잘못된 업무처리(운용리스 계약 선택) : 회계연도 말 회계처리 없음
- 올바른 업무처리(금융리스 계약 선택)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감가상각비	40,000,000	사무용기기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금융리스의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자산을 재정상태표에 계상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말에 해당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리스기간에 걸쳐 재무제표의 왜곡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 본 사례의 경우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금융리스, 운용리스 구분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¹³⁾ 200,000,000(금융리스부채잔액) × 5%(내재이자율) = 10,000,000

그림 4-2 ■ 재정상태표 비교(운용리스, 금융리스)

〈운용리스로 잘못 분류한 경우〉				〈금융리스를 올바르게 분류한 경우〉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			
자산	-	금융리스부채	-	사무용기기	2억	금융리스부채	2억

그림 4-3 ■ 재정운영표 비교(운용리스, 금융리스)

〈운용리스로 잘못 분류한 경우〉		〈금융리스로 올바르게 분류한 경우〉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	
운용리스료	50,000,000	이자비용	10,000,000
		감가상각비	40,000,000

(3) 사용자 유의사항

리스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부담 정도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반면, 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뿐만 아니라 실제 자산을 취득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아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리스의 분류가 법적인 소유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의 부담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구매하는 장기할부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간주할 수 있다.

위험과 효익의 부담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리스회계처리지침」에서 나열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단, 아래 요건의 충족여부에도 불구하고 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표 4-1 | 금융리스 인식 조건

- ① 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는 경우
- ②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 시 되는 경우
- ③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통상 75%)
- ④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통상 90%)
- ⑤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 * **염가매수선택권** :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말함
- * **내용연수** : 리스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리스기간개시일부터 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기간을 말함
- * **최소리스료** :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연간리스료, 보증잔존가치 및 행사가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함

$$\text{최소리스료} = \text{연간리스료} + \text{보증잔존가치} + \text{행사가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권의 행사가격}$$

- * **내재이자율** :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리스제공자의 할인율을 말함

① 또는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은 리스기간이 끝난 이후에 리스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므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③, ④의 조건은 내용연수의 대부분을 사용하거나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지급 하는 것은 리스이용자가 자산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⑤ 조건은 특수 자산은 리스기간이 끝나면 타인에게 매각하여 또 다른 효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인식한다.

따라서 리스로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리스 계약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선택하여야 올바른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

김국유 주무관이 계약한 컴퓨터 리스계약의 경우 무상이전조건이 존재하고,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의 75% 이상이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분류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리스회사에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정확히 리스를 구분하여야 한다.

2 리스계약서 미등록

계약관인 장리스 주무관은 김국유 주무관이 계약한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장리스 주무관은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리스계약서 등록을 누락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리스계약으로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품취득과 달리 리스 계약서를 dBrain 메뉴[조달(계약)>계약>리스계약관리>리스계약등록]에서 리스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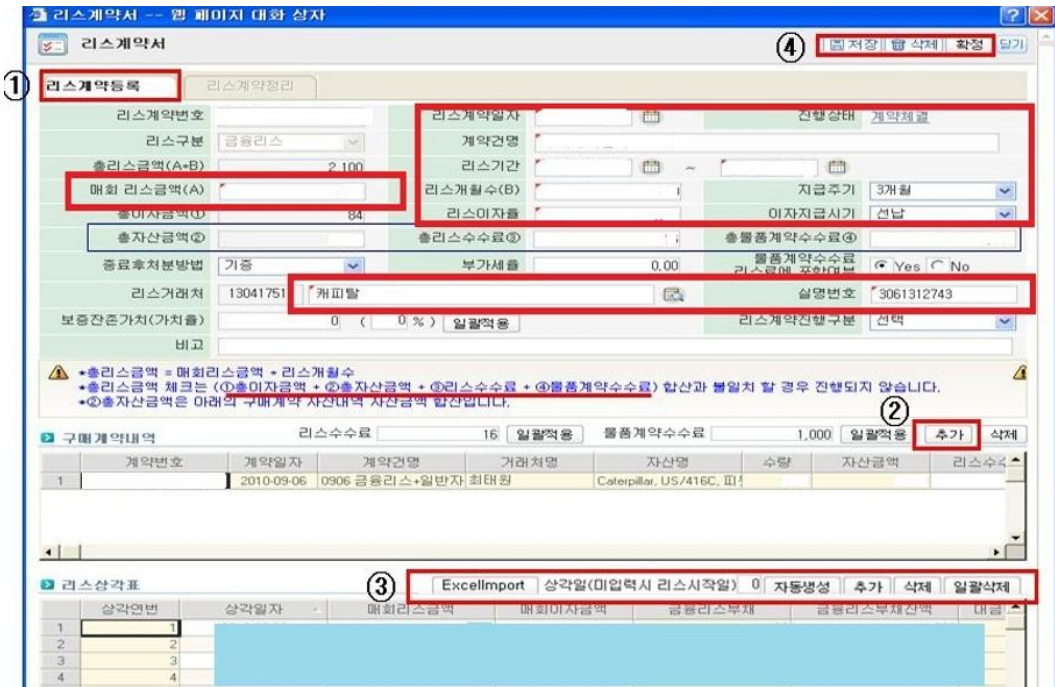
그림 4-4 | 리스계약등록

The screenshot shows the '리스계약등록' (Lease Contract Registration) screen in the dBrain system. The interface includes a navigation menu on the left, a top navigation bar with '조달(계약)' selected, and a main content area with a form and a table. The table lists various lease contracts with columns for contract number, date, type, name, and amounts.

리스계약번호	계약일자	리스구분	계약건명	총리스금액	미회수채권금액	리스계약잔액구분	2
1	2010-09-07	금융리스		210,000	0	과거리스계약	가
2	2010-09-06	금융리스		2,121	1,920	[신규]구매계약	가
3	2010-09-03	운용리스		1	0	[신규]구매계약	가
4	2010-09-03	금융리스		130,000	0	과거리스계약	가
5	2010-09-02	운용리스		52,000,000	48,000,000	[신규]구매계약	가
6	2010-09-02	금융리스		1,300,000	1,200,000	[신규]구매계약	가
7	2010-09-01	금융리스		10,400,000	0	과거리스계약	가
8	2010-09-01	금융리스		26,000,000	0	[신규]구매계약	가
9	2010-08-30	운용리스		11,700,000	10,800,000	과거리스계약	가
10	2010-08-30	금융리스		13,000,000	12,000,000	과거리스계약	가
11	2010-08-30	운용리스		7,800,000	7,200,000	[신규]구매계약	가
12	2010-08-30	금융리스		19,500,000	18,000,000	[신규]구매계약	가

리스대금의 지출은 등록된 계약서를 근거로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리스 계약서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리스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4-5 | 리스계약서



(2) 오류에 따른 영향

장리스 주무관이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계약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리스 계약의 경우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리스 대금청구의 기본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지출로 리스료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 재무결산이 왜곡된다.

리스계약서는 리스료의 지급 시 리스료와 금융리스부채 및 금융리스이자비용 등을 인식하는 기본정보가 된다. 따라서 계약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본 정보가 누락되어 재무제표에 왜곡이 발생한다. 계약관은 리스에 의하여 물품 등이 취득되는 경우에는 리스계약서 등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리스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 금융리스자산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오류(2015회계연도)

OO청 특별회계에서 2013년 및 2014년에 전산자원 도입사업을 통해 취득한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짧게 적용(5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프로그램총원가) 및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이 각각 6억 9,405만원, 10억 6,088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3억 6,683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I 343p 중>

- 납부기한 이전에 지급한 금융리스료 관련 회계처리 오류(2016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 금융리스료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금융리스부채 감소와 금융리스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 기타유동자산(유동자산)과 유동성금융리스부채(유동부채)가 각각 8억 2,262만원, 7억 6,591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이자비용이 5,671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406p 중>

- 납부기일이 도래한 금융리스료 관련 회계처리 오류(2017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신여권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하여 2016회계연도에 선지급한 금융리스료는 본 회계연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선지급한 금융리스료를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 선급금(기타유동자산)이 8억 2,262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7억 6,591만 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금융리스이자비용이 5,671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588p 중>

참고**리스계약서 등록****(1) 리스계약서 입력사항**

리스를 통하여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관은 리스계약서에 명시된 상각표, 이자율 및 리스기간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리스계약을 dBrain에 등록 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적정하게 등록하여야만 향후 리스료 지급 시 올바른 처리를 할 수가 있다.

표 4-2 ■ 리스계약서 입력사항

입력사항	내용(괄호 안은 사례의 내용)
리스계약일자 <input type="text"/>	리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를 입력한다.
계약건명 <input type="text"/>	리스 계약의 내용을 입력한다.
리스기간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기간이다.
매회 리스금액(A) <input type="text"/>	계약에 의하여 매 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리스개월수(B) <input type="text"/>	총 리스기간을 입력한다.
지급주기 <input type="text"/>	리스료를 지급하는 주기를 입력한다.
리스이자율 <input type="text"/>	현재가치 계산에 사용되는 이자율을 입력한다.
이자지급시기 <input type="text"/>	리스료 지급 방식으로 리스개설 시 지급하는 선납과, 리스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후납 두가지 방식이 있다.
리스거래처 <input type="text"/>	리스회사를 검색하여 선택한다.
실명번호 <input type="text"/>	리스거래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보증잔존가치(가치율)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보증잔존가치는 금액 또는 퍼센트로 입력한다.
총리스수수료③ <input type="text"/>	리스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입력한다.
총물품계약수수료④ <input type="text"/>	리스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를 입력한다.
<input type="button" value="추가"/>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추가]버튼은 리스자산을 등록하는 메뉴이며 [삭제]버튼은 리스자산을 삭제하는 메뉴이다.

(2) 리스상환스케줄

[사례]

- 리스기간 : 20X2. 1. 1 ~ 20X5. 12. 31(4년)
- 리스자산·부채금액 : 100,000,000원
- 연간리스료 : 31,547,080원(매년말 지급)
- 내재이자율 : 10%

그림 4-6 ■ 금융리스부채 상환 상각표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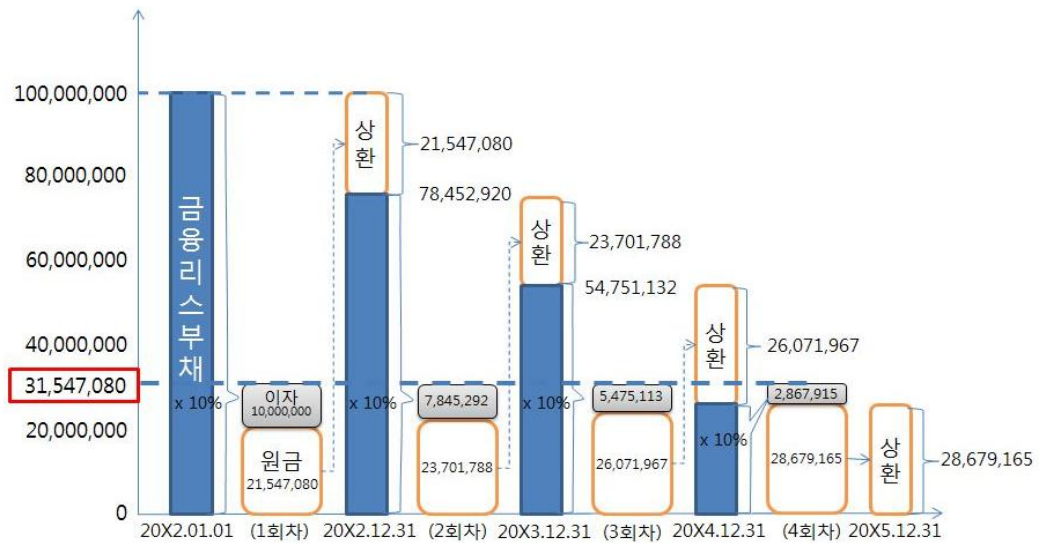


표 4-3 ■ 리스상환 스케줄

회차	납입일	대금청구 요청금액	매회리스금액 (A)	매회이자금액 (B)	원금/리스부채 (A-B)	원금/리스부채잔액
0						100,000,000
1	20X2. 12. 31	31,547,080	31,547,080	10,000,000	21,547,080	78,452,920
2	20X3. 12. 31	31,547,080	31,547,080	7,845,292	23,701,788	54,751,132
3	20X4. 12. 31	31,547,080	31,547,080	5,475,113	26,071,967	28,679,165
4	20X5. 12. 31	31,547,080	31,547,080	2,867,915	28,679,165	0

- ① 납입일 : 리스계약서 상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은 날짜이다.
- ② 대금청구요청금액 : 매회 지급해야 하는 매회리스금액과 같은 개념으로 현재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스케줄에 따른 매회 리스금액이 원단위로 발생하는 경우 동액만큼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원단위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요청금액은 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향후 대금청구서 작성 시 선택한 납입일과 회차에 대한 대금청구요청금액이 연계되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입력 : 31,547,080)
- ③ 매회리스금액 : 리스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회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사례에서 연간리스료가 매회리스금액이 된다. (입력 : 31,547,080)
- ④ 매회이자금액 :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일 경우, 금융리스자산·부채의 잔액에 내재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금융리스에서 금융리스부채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외되어 있지만, 매회리스금액은 원금과 이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매회리스금액에서 원금에 대한 금액은 금융리스부채를 차감시키고, 이자에 대한 금액은 이자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이유는 금융리스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구입하는 물적금융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비용을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다. (입력 : 전년 말(기초) 잔액 * 10% * 12/12)
- ⑤ 원금/리스부채 :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일 경우, 매회리스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를 제외한 금융리스부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환스케줄의 수식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매회리스금액(A)에서 매회이자금액(B)을 차감한 금액이다. (입력 : 매회리스금액 - 매회이자금액)
- ⑥ 원금/리스부채잔액 : 리스계약에 의해 향후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잔액으로 금융리스부채에서 매회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보증잔존가치가 있는 경우, 리스기간의 종료 시 보증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게 되며 보증잔존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리스기간의 종료 시 모두 소멸하게 된다. (입력 : 전년 말 잔액 - 당해 회차 원금/리스부채)

표 4-4 ■ 상환스케줄 계산구조

날짜	계산구조
20X2.01.01	리스계약일에 인식한 금융리스자산·부채의 가액은 100,000,000원이다.
20X2.12.31	매회리스금액 = 31,547,080 매회이자금액 = 100,000,000 x 10% = 10,000,000 원금/리스부채 = 31,547,080 - 10,000,000 = 21,547,080 금융리스부채잔액 = 100,000,000 - 21,547,080 = 78,452,920
20X3.12.31	매회리스금액 = 31,547,080 매회이자금액 = 78,452,920 x 10% = 7,845,292 원금/리스부채 = 31,547,080 - 7,845,292 = 23,701,788 금융리스부채잔액 = 78,452,920 - 23,701,788 = 54,751,132
20X4.12.31	매회리스금액 = 31,547,080 매회이자금액 = 54,751,132 x 10% = 5,475,113 원금/리스부채 = 31,547,080 - 5,475,113 = 26,071,967 금융리스부채잔액 = 54,751,132 - 26,071,967 = 28,679,165
20X5.12.31	매회리스금액 = 31,547,080 매회이자금액 = 28,679,165 x 10% = 2,867,915 원금/리스부채 = 31,547,080 - 2,867,915 = 28,679,165 금융리스부채잔액 = 28,679,165 - 28,679,165 = 0

3 리스대금청구를 통하지 않은 리스료지급 오류

집행단위담당자 나재정 주무관은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려고 한다.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료 지급은 리스대금청구를 통하여 지출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지출로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리스료의 대금 지출은 일반적인 지출과 다른 업무절차를 갖는다. [조달(계약)>대금청구>dBrain청구등록>리스대금청구]에서 대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지출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4-7 | 리스대금청구

리스계약번호	리스계약건명	리스구분	상각일자	실제납부리스금액	매회리스금액	매회이자금액
1	소스 풀린거 테스트	금융리스	2010-09-03	100,000	100,000	
2	테스트-리스계약정리(과거)	금융리스	2010-09-09	100,000	100,000	4.7
3	테스트-용역계약리스구매	금융리스	2010-09-09	300,000	300,000	14.2
4	테스트-리스계약정리(신규)	금융리스	2010-09-09	100,000	100,000	4.7
5	999	금융리스	2010-09-12	0	0	
6	웹메일서버 도입 리스계약	금융리스	2010-09-13	12,017,610	12,017,610	900.4
7	과거정리 금융리스매장-금	금융리스	2010-09-13	1,000,000	1,000,000	

리스계약과 관련한 리스료의 지급은 리스계약서의 '리스대금상환스케줄표'에 따라 리스대금을 지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사업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림 4-7> 화면과 같이 해당 리스계약을 선택하여 리스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는 금융리스의 일반지출과는 다른 처리(리스대금 지급부분을 이자부분과 원금상환부분으로 분리)를 위하여 기본 정보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치는 작업이다.

따라서 리스대금청구를 거치지 않고 일반지출로 리스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리스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나타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계약 시작 시점에 해당 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계약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일어난다.

따라서 리스료 지급 시에는 기간에 따른 이자비용과 금융리스부채 상환부분을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일어나야 하는데 리스대금청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발생한다.

- 잘못된 업무처리(일반지출 처리)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자산임차료	50,000,000	현 금	50,000,000

- 올바른 업무처리(리스대금청구를 통한 지출)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이자비용	10,000,000	현 금	50,000,000
금융리스부채	40,000,000		

또한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관련 계정과목이 일반지출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세부항목을 선택하든지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리스대금의 지급은 리스계약서를 근거로 리스대금청구를 선행한 후 지출요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집행단위담당자는 리스대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지출과 지출 처리방식이 상이함을 유의해야 한다.

집 필 진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과 장 김 선 길
회계결산과 사무관 장 시 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팀 장 현 지 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최 금 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임 종 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오 가 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곽 섭 이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업무담당자용)

2018년 11월 일 인 쇄
2018년 11월 일 발 행

발간등록번호 : 11-1051000-000605-14

발 행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전화 : (044)215-5436
팩스 : (044)215-8128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홈 페이지 : <http://www.moef.go.kr>

인 쇄 : (주)삼일기획 (044)866-3011

2018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